발 간 등 록 번 호
32-9741568-000761-01

각급 법원의 중 · 고등학생 법원체험 프로그램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각급 법원의 중 · 고등학생 법원체험 프로그램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

연구책임자 : 박 원 규(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장판사)
연구참여자 : 황 승 태(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변 지 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책은 사법정책연구원의 2014년도 연구계획에 따른 법교육 센터의 연구과제인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일러두기

중 · 고등학생에 대한 사법부의 법교육은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의 법적 지식과 사고능력을 함양함과 더불어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여러 법교육 방법 중에서도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하는 시나리오 방식의 모의재판은 법률과 재판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중 ·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가상의 재판을 수행하면서 법 원리와 재판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하면서도 재판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법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법교육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법부는 중 · 고등학생들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나리오 방식의 모의재판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책은 각급 법원의 법관이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방식의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은 크게 모의재판 시나리오(제1장)부분과 지도안(제2, 3장 및 부록)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중학생용 3편과 고등학생용 4편 등 총 7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급 법원이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방학 중 실시되는 법교육 심화 프로그램과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과 같은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지도안은 각급 법원의 법관이 이 책에 수록된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모의재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지도안은 총설(제2장)과 모의재판 시나리오별 지도안(제3장)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설에서는 각급 법원의 법관이 모의재판을 지도하는 데 알아두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였고, 모의재판 시나리오별 지도안에서는 개별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대한 해설자료와 지도방법을 소개하였으며, 부록에는 각급 법원의 법관이 이 책의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중 · 고등학생에 대한 사법부의 법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 2.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원 규**

CONTENTS

일러두기 3

제 1 장 모의재판 시나리오 7

제1절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요 9

Ⅰ. 개관 11

Ⅱ. 모의재판 시나리오의 구성 11

제2절 중학생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15

Ⅰ. 중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6

Ⅱ. 중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 31

Ⅲ. 중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2] 55

제3절 고등학생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85

Ⅰ. 고등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 86

Ⅱ. 고등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2] 103

Ⅲ. 고등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1] 119

Ⅳ. 고등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2] 152

제 2 장 모의재판 지도안 총설 191

제1절 모의재판의 의의 193

제2절 실시 절차 197

제3절 실시 방법 201

Ⅰ. 실시 전 단계 203

Ⅱ. 실시 중 단계 212

Ⅲ. 실시 후 단계 213

제 3 장 모의재판 시나리오별 지도안 215

제1절 중학생용 모의재판 지도안 217

Ⅰ. 중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219
Ⅱ. 중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 226
Ⅲ. 중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2] 235

제2절 고등학생용 모의재판 지도안 247

Ⅰ. 고등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 249
Ⅱ. 고등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2] 257
Ⅲ. 고등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1–1], [1–2] 266

부 록 모의재판 실시용 자료 279

1. 소장 모음 281
2. 공소장 모음 284
3. 민사재판용 증인 선서서 양식 288
4. 형사재판용 증인 선서서 양식 289
5. 모의재판 참여 학생 의견서 양식 모음 290
6. 국민참여재판용 배심원 등 선서서 양식 292
7. 국민참여재판용 평결서 양식 293
8. 국민참여재판용 양형의견서 양식 295
9. 범행현장 약도 296

표 목차

【표 1】 이 책에 수록된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요 12
【표 2】 변경 여부 검토 대상 일자 204

그림 목차

【그림 1】 모의재판 실시 절차 및 실시 방법 요약 199

제 1 장

모의재판 시나리오

제 1 절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요

Ⅰ. 개관

Ⅱ. 모의재판 시나리오의 구성

I. 개관

사법정책연구원은 각급 법원이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교육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도 연구과제로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및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책에서 수록된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의 결과물로서, 각급 법원이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모의재판 시나리오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중 · 고등학생의 법교육 수준에 따라 중학생용과 고등학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둘째, 모의재판에 대한 중 · 고등학생의 흥미도와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나 실제사건을 다루고 있다.

셋째, 기존에 사용되어 온 모의재판 시나리오의 형사사건 편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균형 있게 편성되어 있다(민사사건 3편, 형사사건 4편).

넷째, 이 책에 수록된 모의재판 시나리오가 주로 각급 법원이 실시하는 법교육 심화 프로그램과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에 활용되고, 법관이 직접 모의재판을 지도할 것을 고려하여, 모의재판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일반적인 중 · 고등학생의 법교육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II. 모의재판 시나리오의 구성

이 책에는 총 7편의 모의재판 시나리오가 수록되어 있다.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중 · 고등학생의 법교육 수준에 따라 중학생용 3편과 고등학생용 4편으로 구분되어 있고, 중학생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3편은 민사 1편과 형사 2편으로, 고등학생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4편은 민사 2편과 형사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이 책에 수록된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요

순번	실시대상	분류	제목	진행 방식	소요시간[1]
1	중학생	민사	수박(매매대금반환 사건)	결론 제시 방식	1시간 30분
2	중학생	형사 [1]	빼앗긴 스마트폰(공갈 사건)	결론 제시 방식	1시간 30분
3	중학생	형사 [2]	한밤의 침입자(살인 사건)	결론 제시 방식	2시간
4	고등학생	민사 [1]	내 사랑 보배(손해배상 사건)	참여 학생 결론 방식	1시간 30분
5	고등학생	민사 [2]	내 꿈은 가수(학원비반환 사건)	결론 제시 방식	1시간 30분
6	고등학생	형사 [1-1]	도둑맞은 점퍼(절도 사건)	참여 학생 결론 방식	2시간
7	고등학생	형사 [1-2]	도둑맞은 점퍼(절도 사건)	국민참여재판 방식	2시간 30분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중 · 고등학생이 정규 교과에서 학습한 기초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하되, 법리문제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공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민 · 형사 재판의 사실인정을 체험하도록 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법교육 수준과 법적 사고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중학생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결론을 제시하는 방식(결론 제시 방식)으로 진행하고, 고등학생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대부분 모의재판 참여 학생들이 재판의 결과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참여 학생 결론 방식 또는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고등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고등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각각 2편씩 개발하되, 복수로 개발된 위의 각 시나리오들 사이에서는 난이도나 진행방식을 달리하였다.

1) 소요시간은 이 책의 모의재판 시나리오와 지도안에 따라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시간으로, 실시 전 교육, 변론종결 후 토론, 실시 후 질의 답변 및 토론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한다.

중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2]는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보다 난이도가 높다.

고등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은 참여 학생들이 일부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고등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2]는 미리 정해진 결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1]과 [1-2]는 동일한 사안을 내용으로 하되,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1]은 참여 학생 결론 방식으로 구성하고,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2]는 고등학생들이 가상의 국민참여재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고등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들과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들은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난이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제 2 절

중학생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Ⅰ. 중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Ⅱ. 중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
Ⅲ. 중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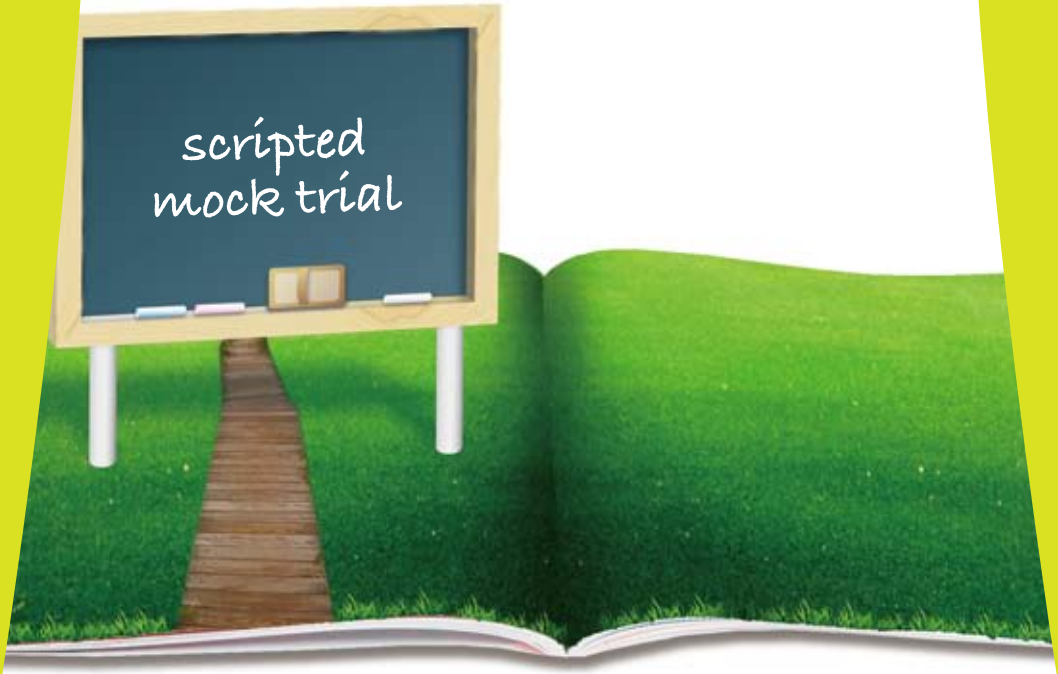

수 박

읽어두기

가정주부인 최알뜰(원고)은 2014년 7월 1일 과일가게를 경영하는 남상인(피고)으로부터 수박 1통을 2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맛이 많이 떨어지면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원고는 다음 날 아침 피고의 과일가게에 먹다 남은 수박을 들고 와서 피고에게 원고의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훨씬 맛이 없으니 약속대로 수박 대금 2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에 비하여 맛이 많이 떨어지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던 것은 물건을 살까 말까 망설이는 손님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일 뿐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었고, 원고의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과 맛에 별다른 차이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수박 대금 2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 사건 민사재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사,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증인 등 재판 참여자들이 민사재판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잘 살펴서,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

연번	역할	인원
1	재판장 판사 김정의, 판사 이자유, 판사 박평등	3
2	원고 최알뜰	1
3	피고 남상인	1
4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소, 이명석	2
5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유능, 최영민	2
6	증인 강철수(원고의 남편)	1
7	증인 나열심(피고의 전 종업원)	1
8	법원사무관	1
9	법원실무관	1
10	법원경위	1
총 인원		**14명**

증거목록

원고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인 강철수(원고의 남편)	이 사건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에 비하여 맛이 많이 없었음

피고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인 나열심(피고의 전 종업원)	이 사건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과 맛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

관련법규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하 생략)

시나리오

(판사들은 법정 밖 법관 출입문에서 기다리고,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원사무관, 법원실무관 및 법원경위는 법정 내의 정해진 좌석에 앉아 기다리며, 증인들은 방청석에 앉아 기다린다)

재판부의 입정 및 개정선언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이 입장하여 법대에 선 후 방청석을 향하여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재 판 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법원 제○민사부[2]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일의 시작과 관계인의 출석 확인

[재 판 장] 2014가합1000호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원고 최알뜰씨와 피고 남상인씨 나오셨나요?[3]

[원　　고] 원고 최알뜰 나왔습니다.

[피　　고] 피고 남상인도 나왔습니다.

[재 판 장] 원고 소송대리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

2) 보다 많은 학생들이 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물관할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지도관은 모의재판 실시 상황에 맞추어 법원명과 재판부명을 정할 수 있다.

3) 민사소송법 제169조(기일의 시작)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원고 소송대리인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재 판 장] 피고 소송대리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피고 소송대리인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당사자 등의 주장

[재 판 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떤 청구를 하고 있고, 왜 그런 청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수박 대금 2만 원을 돌려줄 것을 청구합니다. 원고는 2014년 7월 1일[4] 피고로부터 수박 1통을 2만 원에 사면서, 그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맛이 많이 떨어지면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수박은 맛보기용 수박에 비하여 훨씬 맛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박 값 2만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5]

[재 판 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피고가 2014년 7월 1일 원고에게 수박 1통을 2만 원에 팔면서, 그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에 비하여 맛이 많이 없으면 수박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피고가 장사를 하면서 물건을 살까 말까 망설이는 손님에게 평소 입버릇처럼 한 것이어서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6] 게다가 원고의 수박은 맛보기용 수박과 맛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이유 없습니다.

[재 판 장]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원　　고]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4) 일자는 모의재판 실시 일자에 맞추어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5) 이 사건은 약정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이다.
6) 중학생의 법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피고가 상대방(원고)이 표의자(피고)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제가 수박을 살까 말까 망설이자, 피고는 맛보기용 수박 중 일부를 잘라 맛을 보여주면서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에 비해 맛이 많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몇 번이나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의 약속을 믿고 수박을 샀던 것인데, 이제 와서 그 약속이 효력이 없다니 말도 안됩니다.

제가 산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에 비하여 맛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저는 수박을 산 날 저녁에 남편인 강철수와 함께 수박을 잘라 나누어 먹었는데, 제가 산 수박은 피고가 맛을 보여준 맛보기용 수박에 비하여 훨씬 맛이 없었고, 남편도 수박이 맛이 없어 못 먹겠다고 하였습니다.

[재 판 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시 반박하시겠습니까?

[피　　고] 제가 원고에게 판 수박이 맛이 없었다니요. 원고가 수박을 사 간 다음날 먹다 남은 수박을 가져왔기에 제가 그중 일부를 잘라서 맛을 보았는데, 수박은 맛이 있었고, 맛보기용 수박과 비교해도 맛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재 판 장] 양측은 더 주장하실 것이 있나요?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원고는 없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피고도 없습니다.

쟁점정리

[재 판 장]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한 수박 대금 반환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 사건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맛이 많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맞습니까?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예, 맞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예, 맞습니다.

[재 판 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정리한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재판을 하겠습니다.

증거신청

[재 판 장] 이제 주장에 대한 정리를 마치고 증거신청을 받겠습니다.
원고는 증거신청하십시오.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이 사건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맛이 많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원고의 남편인 강철수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은 좌우에 앉아 있는 배석판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묻고, 배석판사들은 작은 목소리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한다)

[재 판 장] 원고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합니다.
피고도 증거신청하십시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피고가 진심으로 약속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이 사건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과 맛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 당시 피고의 과일가게 종업원으로 일했던 나열심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은 좌우에 앉아 있는 배석판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묻고, 배석판사들은 작은 목소리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한다)

[재 판 장] 피고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합니다.
양측은 더 신청할 증거가 있으신가요?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원고는 없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피고도 없습니다.

[재 판 장]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증거신청 절차를 마칩니다.

증거조사 시작

[재 판 장] 지금부터 증거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나요.[7)]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강철수 증인은 출석하였습니다.

---

7)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이므로 증인이 재정한 것으로 하였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나열심 증인도 출석하였습니다.

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 판 장] 그럼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 나란히 선다)

[재 판 장]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8)]

(법원실무관은 증인들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재판장에게 전달한다)

(재판장은 신분증과 증인들의 얼굴을 대조하면서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후 법원실무관을 통해 증인들에게 신분증을 돌려준다)

위증의 벌 경고 등

[재 판 장] 증인들 가운데 원고나 피고와 친인척 되는 분 있습니까?

[증인 강철수] 저는 원고의 남편입니다.

[재 판 장] 강철수 증인은 원고의 남편이므로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선서를 하고 증언하시겠습니까?[9)]

[증인 강철수] 저는 선서를 하고 증언하겠습니다.

[재 판 장] 알겠습니다.

증인들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만일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증 인 들] 예.

---

8) 민사소송규칙 제88조

9) 증인 강철수는 원고의 남편으로서 원고와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24조), 자신의 증언이 원고에게 치욕이 될 사항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314조).
중학생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인 점을 고려하여, 증인 강철수에 대한 선서거부권 고지를 위와 같이 간략히 하고, 증언거부권에 대한 고지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였다.

증인선서

[재 판 장]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는 강철수 증인이 대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할 자세를 취한다. 증인 강철수는 왼손으로 선서서를 든다)

[증인 강철수] (당당한 목소리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10)]

[재 판 장] 원고가 신청한 강철수 증인을 먼저 신문하고, 그다음에 피고가 신청한 나열심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강철수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나열심 증인은 잠시 법정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11)]

(증인 강철수는 증인석에 앉고, 증인 나열심은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밖으로 나간다)

증인 강철수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원고는 신문하십시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예, 재판장님.
증인은 원고의 남편이지요?

[증 인] 예.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증인은 2014년 7월 1일 저녁식사 후 원고가 피고의 과일가게에서 사온 수박을 먹었지요?

[증 인] 예. 그날 저녁식사 후 아내인 원고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수박은 맛이 있었나요?

[증 인] 아니오. 수박이 달지 않아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게 수박이 맛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10)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인 점을 고려하여, 증인들이 선서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절차를 생략하였다.

11) 민사소송법 제328조(격리신문과 그 예외)
① 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 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그 말을 들은 원고가 뭐라고 하던가요.

[증　　인] 원고는 "맛보기용 수박은 맛이 있었는데, 이 수박은 맛보기용 수박보다 훨씬 맛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원고가 평소 증인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

[증　　인] 아니요. 원고는 제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그렇다면 원고가 증인에게 말한 대로, 증인이 그날 먹은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과 비교해서 훨씬 맛이 없었음이 분명하지요?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원고는 지금 유도신문[12]을 하고 있습니다.[13]

[재 판 장] 이의를 인정합니다.[14] 원고 소송대리인은 유도신문을 삼가 주십시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예. 마지막 질문은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 판 장] 피고는 반대 신문하십시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예, 재판장님. 수박이 그렇게 맛이 없었나요?

[증　　인] 수박을 잘라보니 빨갛게 잘 익어 보이기는 했지만, 막상 먹어보니 맛이 없었습니다. 그 날 먹은 수박은 하나도 달지 않았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증인이 원고에게 수박이 맛없다고 했을 때, 원고는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증　　인]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원고가 실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　　인] 원고는 넉넉하지 못한 생활비로 살림을 하면서도 수박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 수박을 사온 것인데, 제가 맛이 없다고 하니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증인은 맛보기용 수박을 먹어보지 못했지요.

[증　　인] 예. 먹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이상입니다.

[재 판 장] 원고는 더 질문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없습니다.

---

12) 지도관은 모의재판 실시 후 학생들에게 '유도신문'은 신문을 하는 사람이 답변자로부터 희망하는 답변을 이끌어 내려고 특정 내용의 답변을 암시하면서 하는 신문을 가리킨다고 간략히 설명한다.

13) 민사소송규칙 제91조 제2항

14) 민사소송규칙 제91조 제3항

[재 판 장] 이상으로 강철수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법원경위는 나열심 증인을 모셔오시지요.

(증인 강철수는 방청석에 가서 앉고, 증인 나열심은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안에 들어온 다음 증인석에 앉는다).

증인 나열심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피고는 신문하십시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예. 증인은 2014년 7월 1일 피고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일한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저는 그 당시 피고의 직원이었고, 피고가 시키는 대로 도매시장에서 과일을 사오고 손님들에게 과일을 배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증인은 지금도 피고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나요?

[증 인] 아닙니다. 저는 지난 9월 말 피고의 과일가게를 그만두었고, 지금은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원고가 2014년 7월 1일 오후 4시경 과일가게에서 피고로부터 수박 1통을 구입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증 인] 예. 제가 직접 봐서 알고 있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증 인] 원고는 남편과 먹을 수박을 사러 왔다고 하면서 이 수박 저 수박을 만져보면서 수박을 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맛보기용 수박 한 쪽을 잘라 원고에게 맛을 보게 하였고, 원고는 수박이 달고 맛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수박 1통을 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원고가 그 다음날에도 과일가게에 왔지요?

[증 인] 네. 원고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먹다 남은 수박을 들고 와서 피고에게 수박 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그러자 피고는 뭐라고 하던가요.

[증 인] 피고는 원고가 들고 온 수박 중 일부를 칼로 베어 맛을 본 다음 수박 맛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원고의 수박과 맛보기용 수박은 모두 같은 날 같은 도매시장에서 구입한 같은 종류의 수박이지요?

[증 인] 예. 제가 2014년 7월 1일 새벽에 도매시장에서 사 온 수박들입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원고가 들고 온 수박의 상태는 어떠했나요?

[증 인] 빨갛게 잘 익어 보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증인은 원고의 수박과 맛보기용 수박을 모두 먹어 보았나요?

[증 인] 예. 원고와 피고가 말다툼을 하는 사이에 맛보기용 수박과 원고의 수박을 한 조각씩 잘라 먹어 보았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증인이 맛을 본 맛보기용 수박이 원고가 전날 맛을 보았던 맛보기용 수박이 맞나요?

[증 인] 예, 같은 수박입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맛보기용 수박과 원고의 수박은 맛에 차이가 있었나요?

[증 인]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맛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이상입니다.

[재 판 장] 원고는 반대 신문하십시오.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예. 증인은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그리 잘 기억하나요?

[증 인] 피고와 원고가 아주 심하게 다투었고, 제가 피고의 과일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그런 일을 겪은 것은 그때뿐이어서 기억합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피고가 2014년 7월 1일 원고에게 수박을 팔면서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맛이 훨씬 없으면 수박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한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그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증 인] 원고는 맛보기용 수박을 먹어 본 후 참 달고 맛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다른 수박도 이렇게 맛있느냐고 물었고, 피고는 우리 가게에서 파는 수박은 모두 달고 맛이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도 원고는 수박을 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내가 파는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

보다 맛이 많이 떨어지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정말이냐"고 하면서,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맛이 많이 없으면 꼭 돈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몇 번이나 진지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나는 내가 한 말을 꼭 지키는 사람이니 걱정 마라"고 거듭 약속을 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다짐한 후 수박을 사서 들고 갔습니다.[15)]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이상입니다.

[재 판 장] 피고는 추가로 신문하시겠습니까?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예. 피고가 평소 손님에게 과일이 맛이 없으면 과일값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증 인] 손님이 과일을 살까 말까 망설이면, 피고는 손님에게 "우리 가게 과일은 다 맛있다"라고 하면서 "맛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큰소리치곤 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피고가 실제로 돈을 돌려줄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인가요?

[증 인] 피고가 손님들에게 평소 입버릇처럼 한 말이므로, 실제로 돈을 돌려줄 생각으로 말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피고가 원고에게 한 약속도 피고가 입버릇처럼 한 말이지요?

[증 인] 글쎄요……, 그때는 평소와 좀 달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이상입니다.

[재 판 장] 원고 소송대리인,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나요?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없습니다.

[재 판 장] 이것으로 나열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나열심은 방청석에 가서 앉는다)

증거조사 종결

[재 판 장]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증인신문 결과에

15) 피고의 약속이 통상적인 상인의 허언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증인 강철수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이 모두 증명되었다는 의견입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원고의 남편인 증인 강철수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증인 나열심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과 맛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이 증명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재 판 장] 양측은 더 신청하실 증거가 있나요?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원고는 없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피고도 없습니다.

[재 판 장] 이것으로 증거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변론

[재 판 장] 지금부터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원고는 최종변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자리에서 일어서서) 원고는 2014년 7월 1일 피고로부터 수박 1통을 2만 원에 사면서, 그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훨씬 맛이 없는 경우에는 수박 값을 돌려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증인 강철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훨씬 맛이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박 대금 2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다)

[재 판 장] 피고도 최종변론하십시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자리에서 일어서서) 피고가 원고에게 수박 1통을 팔면서, 그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맛이 많이 없으면 수박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피고가 과일장사를 하면서 물건을 살까 말까 망설이는 손님에게 입버릇처럼 한 것일 뿐 진심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약속이 효력이 있더라도, 원고의 수박과 맛보기용 수박은 맛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박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다)

[재 판 장] 원고와 피고는 더 주장하거나 증명하실 것이 있나요?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원고는 없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피고도 없습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지방법원 2014가합1000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합의를 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16]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정 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판사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퇴장한다)

(모의재판 지도관은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에게 판결을 예측해 보도록 한 후 학생들 사이의 토론을 유도한다)

재판부의 재입정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 입장하여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16) 휴정시간은 모의재판 지도관이 적절히 정할 수 있다.

판결선고

[재 판 장] 지금부터 ○○지방법원 2014가합1000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17]

(1) 원고가 2014년 7월 1일 피고로부터 수박 1통을 2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훨씬 맛이 없는 경우 수박 대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피고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합니다.

(2)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수박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려면 원고의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훨씬 맛이 없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남편인 증인 강철수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박 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3)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8]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원경위]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서고, 판사들은 법정 밖으로 나간다)

---

17) 민사소송법 제206조(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 선고 전에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하였다.

18)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이므로 소송비용 선고는 생략한다.

II. 중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

빼앗긴 스마트폰

읽어두기

중학생인 김소심(현재 만 13세)은 2014년 7월 1일 밤 10시 10분 무렵 서울 불광동에 있는 대박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슈퍼스타 A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학원건물 옆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20대 초반의 남자가 김소심을 불러 세운 다음 "너처럼 비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애들을 보면 때려주고 싶다. 오늘은 형이 기분이 좋으니 스마트폰만 주면 곱게 돌려보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스마트폰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로 김소심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김소심은 지니고 있던 슈퍼스타 A 스마트폰 1대를 범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김소심은 범인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범행을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아니하다가 2014년 8월 31일에 이르러서야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부모님은 그 다음날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최험악(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사건 형사재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 재판 참여자들이 형사재판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잘 살펴서,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

연번	역할	인원
1	재판장 판사 김정의, 판사 이자유, 판사 박평등	3
2	검사 문공익, 이예리	2
3	피고인 최험악	1
4	변호인 변호사 김승소, 박유능	2
5	증인 김소심(피해자)	1
6	증인 강포청(경찰관)	1
7	증인 차배포(피고인의 친구)	1
8	법원사무관	1
9	법원실무관	1
10	법원경위	1
총 인원		**14명**

증거목록

검사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인 김소심(피해자)	증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서 범인을 목격하였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임

피고인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인 강포청(경찰관)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상황
증인 차배포(피고인의 친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 무렵 술에 취해 있었음

관련법규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나리오

(판사들은 법정 밖 법관 출입문에서 기다리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원사무관, 법원실무관 및 법원경위는 법정 내의 정해진 좌석에 앉아 기다리며, 증인들은 방청석에 앉아 기다린다)

1. 모두절차

재판부의 입정 및 개정선언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이 입장하여 법대에 선 후 방청석을 향하여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재 판 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법원 제○형사부[19]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일의 시작과 관계인의 출석 확인

[재 판 장] 2014고합1000호 공갈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최험악 피고인 나오셨습니까?

19) 보다 많은 학생들이 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물관할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지도관은 모의재판 실시 상황에 맞추어 법원명과 재판부명을 정할 수 있다.

[피 고 인] (자리에서 일어서서)[20] 예.

[재 판 장]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검　　사] 문공익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이예리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변 호 인] 김승소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박유능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등[21]

[재 판 장]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22] 잘 아시겠습니까?

[피 고 인] 예.

[재 판 장] 피고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 고 인] 최험악입니다.

[재 판 장]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나요?

[피 고 인] 1992년 9월 9일입니다.

[재 판 장]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피 고 인]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23]입니다.

[재 판 장] 등록기준지는 어디인가요?

[피 고 인] 서울 은평구 불광로입니다.

[재 판 장] 직업은 무엇인가요?

---

20) 소송관계인의 착석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실무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본 모의재판 시나리오에서는 ①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② 검사의 모두진술, ③ 검사와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종의견 진술의 경우만 일어선 상태에서 하도록 하였다[법원행정처, 법정진행 매뉴얼(2011. 2.), 95. 참조].

21) 진술거부권의 고지, 인정신문 및 주소변동보고의무 고지

22) 법원행정처, 법정진행 핸드북(2014), 16.

23)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이므로 건물번호는 표시하지 아니하였다(이하 같다).

[피 고 인] 대학생입니다.

[재 판 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24]

(피고인은 자리에 앉는다)

검사의 모두진술

[재 판 장]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25]

[검사 문공익]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2014년 7월 1일 밤 10시 10분경 서울 불광동에 있는 대박학원 옆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중학생인 피해자 김소심을 불러 세운 다음 "너처럼 비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애들을 보면 때려주고 싶다. 오늘은 형이 기분이 좋으니 스마트폰만 주면 곱게 돌려보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스마트폰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슈퍼스타 A 스마트폰 1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리에 앉는다)

피고인의 모두진술

[재 판 장]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았습니까?

[피 고 인] 예.

[재 판 장] 검사가 방금 말한 공소사실을 잘 들으셨지요?

---

24) 실시 대상이 중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항의 주소변동보고의무 고지는 생략하였다.

25) 실시 대상이 중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라"는 표현 대신 중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위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 고 인] 예.

[재 판 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십니까?[26]

[피 고 인] (단호한 목소리로)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김소심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은 사실이 없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진술

[재 판 장] 변호인도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까?[27]

[변호인 김승소] 예.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지목되어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갈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쟁점정리 및 증거신청

[재 판 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28]

[검사 문공익] 예.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서 범인을 직접 목격한 김소심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 판 장] 피고인 측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29]

[변호인 김승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재판장은 좌우에 앉아 있는 배석판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

---

26) 형사소송법 제286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제1항

27) 형사소송법 제286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의2 제2항

28) 형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29)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를 묻고, 배석판사들은 작은 목소리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한다)

[재 판 장] 검사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인도 주장에 관한 입증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30]

[변호인 김승소] 예.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진범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찰관 강포청과 피고인의 친구인 차배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 판 장] 강포청 증인과 차배포 증인에게 어떤 사항을 물으려고 하시나요?

[변호인 김승소] 강포청 증인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상황에 대해 묻고, 차배포 증인에게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 무렵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31]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재 판 장] 검사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32]

[검사 문공익]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재판장은 좌우에 앉아 있는 배석판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묻고, 배석판사들은 작은 목소리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한다)

[재 판 장] 그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도 채택하겠습니다.

양측은 더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 문공익] 검사 측은 없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재 판 장] 알겠습니다.

2. 증거조사

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 판 장] 그럼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30) 형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31) 친구들과 술을 마신 직후였음을 묻기 위함임
3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나요?[33]

[검사 문공익] 김소심 증인은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강포청 증인과 차배포 증인도 출석하였습니다.

[재 판 장] 증인들은 모두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서 나란히 선다)

[재 판 장]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법원실무관은 증인들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재판장에게 전달한다)

(재판장은 신분증과 증인들의 얼굴을 대조하면서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후 법원실무관을 통해 증인들에게 신분증을 돌려준다)[34]

위증의 벌 경고 등

[재 판 장] 증인들 중에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증 인 들] (입을 모아서) 없습니다.

[재 판 장] 증인들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증인들 중 강포청, 차배포씨는 증언을 하기에 앞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35] 만일 선서를 한 후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36]

[증 인 들] 예.

증인선서

[재 판 장]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강포청, 차배포 증인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37]

---

33)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이므로 증인이 재정한 것으로 하였다.

34) 형사소송규칙 제71조

35) 형사소송법 제156조 ; 증인 김소심은 16세 미만인 자로서 선서 무능력자이다(형사소송법 제159조 제1호).

36) 형사소송법 제157, 158조 중학생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인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증언거부권 고지를 생략하였다.

37) 법정에 비치된 것을 사용한다.

는 강포청 증인이 대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증인 강포청, 차배포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할 자세를 취한다. 증인 강포청은 왼손으로 선서서를 든다)

[증인 강포청] (당당한 목소리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38]

[재 판 장] 검사가 신청한 김소심 증인을 먼저 신문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신청한 강포청 증인, 차배포 증인의 순서로 신문하겠습니다. 김소심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강포청, 차배포 증인은 법원경위의 안내에 따라 잠시 법정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39]

(증인 김소심은 증인석에 앉고, 나머지 증인들은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밖으로 나간다)

증인 김소심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검사 이예리] 예, 재판장님.

증인은 2014년 7월 1일 밤 10시 10분경 서울 불광동에 있는 대박학원 옆 골목길에서 스마트폰을 빼앗긴 일이 있지요?

[증　　인] 예.

[검사 이예리]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증　　인] 제가 불광동에 있는 대박학원에서 영어수업을 마치고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학원 건물 옆 골목길에 서 있던 아저씨가 "야, 너 이쪽으로 와"라고 하면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쪽으로 갔더니, 아저씨가 "너처럼 비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어린 애들

38)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인 점을 고려하여, 증인들이 형사소송법 제158조 제3항에 따라 선서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절차를 생략하였다.

39) 형사소송법 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을 보면 기분이 나빠 때려주고 싶다. 오늘은 형이 기분이 좋으니 스마트폰만 주면 곱게 돌려보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제 가슴을 툭툭 쳤어요. 저는 겁이 나서 아저씨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줬어요.

[검사 이예리] 증인이 스마트폰을 건네주자 범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증　　인] 아저씨가 저에게 말을 잘 들어서 곱게 보내주지만, 오늘 일을 부모님께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검사 이예리] 증인이 빼앗긴 스마트폰은 어떤 것인가요?

[증　　인] 아버지가 중학교 입학 선물로 주신 100만 원짜리 검은색 슈퍼스타 A 스마트폰이었어요.

[검사 이예리] 증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을 빼앗긴 사실을 알렸나요?

[증　　인] 처음에는 겁이 나서 알리지 못했어요. 부모님께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고, 비싼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부모님께 야단을 맞기도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려 8월 31일에 부모님께 스마트폰을 빼앗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검사 이예리] 2014년 7월 1일 밤 10시 10분경 서울 불광동에 있는 대박학원 옆 골목길에서 증인으로부터 슈퍼스타 A 스마트폰을 빼앗은 범인이 이 법정 안에 있습니까?

[증　　인] 예.

[검사 이예리] 그 범인이 누구지요?

[증　　인] (손가락으로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검사 이예리] 증인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스마트폰을 빼앗기고 난 후 너무 불안해서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러다가 7월 초에 어머니와 청소년정신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2주 동안 약을 먹었어요.

[검사 이예리]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변호사 박유능] 예. 증인은 2014년 9월 1일 은평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인의 모습을 설명한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범인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증　　인] 범인이 20대 초반의 남자로 인상이 매우 험악했고 스포츠형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했어요.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범인의 얼굴을 확실히 보았나요?

[증　　인] 범인이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느라 범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범인이 20대 초반의 남자로 인상이 매우 험악했고 스포츠형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봤어요.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범인이 썼던 안경의 종류와 형태를 기억하나요?

[증　　인] 범인이 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어떤 안경을 썼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범인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범인의 키가 어른 남자들 중에 큰 편이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

[증　　인] 예.

[변호사 박유능] (피고인에게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한 후) 증인이 보시다시피 피고인의 키는 162cm로서 어른 남자들 중에서 매우 작은 편입니다. 증인의 말대로라면 피고인이 범인일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피고인은 자리에 앉는다)

[증　　인] 제 기억으로는 범인의 키가 컸던 것 같아서 경찰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범인의 키를 착각하고 잘못 말한 것 같아요.

[변호사 박유능] 증인이 경찰서에서 범인의 모습을 설명할 때, 경찰관이 증인에게 사진 1장을 보여주었지요?

[증　　인] 예. 제가 경찰관에게 범인의 모습을 설명했더니, 경찰관이 잠시 기다리라고 한 다음 사진 1장을 제게 보여주면서 사진 속의 사람이 범인이 맞는지 잘 보라고 했어요.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사진을 보고 뭐라고 대답했나요?

[증　　인]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인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임을 바로 알아보았나요?

[증　　인] 범인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사진 속의 남자는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아서

처음에는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머리 모양과 얼굴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라고 하셔서, 제가 사진을 자세히 봤더니,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관에게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인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변호사 박유능] 그 사진 속의 남자가 피고인이었나요?

[증　　인] 예.

[변호사 박유능] 경찰관이 그 다음날에도 증인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 주었지요?

[증　　인] 예. 경찰관으로부터 범인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사진을 보고 뭐라고 대답했나요?

[증　　인]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이 맞다고 대답했어요.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나요?

[증　　인] 아니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직접 만난 사실이 있나요?

[증　　인] 피고인의 사진만 보았고, 피고인을 직접 만난 것은 지금이 처음이에요.

[변호사 박유능] 범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나요?

[증　　인] 글쎄요. 술 냄새는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변호사 박유능] 이상입니다.

[재 판 장] 검사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신가요?

[검사 이예리] 예. 증인은 조금 전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었지요?

[증　　인] 예.

[검사 이예리] 피고인의 목소리가 증인이 기억하는 범인의 목소리와 일치하나요.

[증　　인] 예. 피고인의 목소리가 범인의 목소리와 같은 것 같아요.

[검사 이예리]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신가요?

[변호인 박유능] 예. 증인은 조금 전 피고인의 목소리가 범인의 목소리와 같은 것 같다고 하셨지요?

[증　　인] 예.

[변호인 박유능] 어떤 점에서 같은가요?

[증　　인]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범인의 목소리가 가는 편인데 피고인의 목소리도 가는 편이어서 피고인의 목소리가 범인의 목소리와 같은 것처럼 들렸어요.

[변호인 박유능] 이상입니다.

[재 판 장] 검사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신가요?

[검사 이예리] 없습니다.

[재 판 장] 증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증　　인]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니 화가 나요. 판사님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해 주세요.

[재 판 장] 이상으로 김소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강포청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김소심은 방청석에 가서 앉고, 증인 강포청은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안에 들어온 다음 증인석에 앉는다).

증인 강포청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변호인은 신문하십시오.

[변호인 김승소] 예, 재판장님.
증인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증　　인]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은 2014년 9월 1일 은평경찰서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 김소심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준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변호인 김승소] 그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증　　인] 김소심이 설명하는 범인의 모습을 듣는데 갑자기 몇 년 전에 제가 체포했던 피고인이 떠올랐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불광동 대박학원 주변에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금품을 갈취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소심이 설명하는 범인의 인상이 피고인의 인상과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김소심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범인이 맞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이 보여준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증　　인] 피고인이 3년 전 체포되었을 때 찍은 상반신 사진입니다.

[변호인 김승소] 김소심이 사진을 보고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증　　인] 김소심이 피고인의 사진을 보더니 범인이 맞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김소심이 사진 속의 피고인이 범인임을 바로 알아보던가요?

[증　　인]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제가 사진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보라고 하자 알아봤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은 그 다음날에도 김소심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준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제가 다음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경찰서에 데려온 다음 피고인의 전신사진을 찍어서 김소심에게 보여줬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　　인] 제가 전날 김소심에게 보여준 사진이 3년 전에 찍은 것이어서 피고인의 현재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피고인이 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김소심이 사진을 보고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증　　인] 김소심은 피고인의 사진을 보더니 범인이 확실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이 김소심에게 두 번에 걸쳐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줄 때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사람의 사진도 함께 보여주었나요?

[증　　인] 아니요. 피고인의 사진만 보여줬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김소심과 피고인을 직접 대면시킨 사실이 있나요?

[증　　인]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소심은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인 슈퍼스타 A 스마트폰이 발견되었나요?

[증　　인]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몸과 집을 수색해 보았지만, 슈퍼스타 A 스마트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처분한 것 같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이상입니다.

[재 판 장] 검사는 반대 신문하십시오.

[검사 문공익] 예. 증인은 2014년 9월 2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체포했다고 하셨지요?

[증 인] 예.

[검사 문공익] 피고인이 체포될 때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증 인] 피고인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에 응하였습니다.

[검사 문공익] 피고인의 그런 태도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로 볼 수 있지요?

[변호인 김승소]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40)]

[재 판 장] 변호인의 이의를 인정합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의견을 묻는 질문을 삼가 주십시오.

[검사 문공익] 예. 마지막 질문은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변호인 김승소] 없습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강포청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차배포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강포청은 방청석에 가서 앉고, 증인 차배포는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안에 들어온 다음 증인석에 앉는다)

증인 차배포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변호인은 신문하십시오.

[변호인 김승소] 예, 재판장님.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사이인가요?

[증 인] 증인은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은 2014년 7월 1일 저녁에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40)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사소송규칙 제74조 제2항 제3호).

있지요?

[증　　인] 예. 그날은 제 생일이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함께 불광동에 있는 "배불러"삼겹살집에서 저녁식사를 했는데,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과 피고인은 그날 술을 많이 마셨나요?

[증　　인] 저는 그 당시 병원에서 받아 온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피고인과 헤어진 시각은 언제인가요?

[증　　인] 밤 9시 30분경으로 기억합니다.

[변호인 김승소] 피고인이 증인과 헤어져 어디로 갔는지 기억하나요?

[증　　인] 글쎄요.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피고인이 증인과 헤어질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나요?

[증　　인] 예.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말을 할 때 입에서 술 냄새도 많이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변호인 김승소] 이상입니다.

[재 판 장] 검사는 반대 신문하십시오.

[검사 문공익] 2014년 7월 1일 저녁식사 자리에 증인과 피고인 이외에 누가 더 있었나요?

[증　　인] 제 친구인 신의리와 엄주당이 함께 있었습니다.

[검사 문공익] 피고인이 그날 술을 많이 마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마셨나요?

[증　　인]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소주 2병 이상은 마셨던 것 같습니다.

[검사 문공익] 피고인이 그날 안경을 쓰고 있었나요?

[증　　인] 피고인은 시력이 좋아 안경을 잘 쓰지 않지만, 가끔 멋을 내기 위해서 도수 없는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그날 안경을 쓰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사 문공익] 증인은 식사장소인 삼겹살집과 대박학원의 위치를 알고 있나요?

[증　　인] 삼겹살집은 역촌역 앞에 있고, 대박학원은 그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불광역 부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문공익] 삼겹살집에서 대박학원까지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증　　인] 대략 2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문공익] 피고인이 오후 9시 30분경 삼겹살집을 나와서 대박학원까지 걸어서 이동했다면 오후 10시 10분경에는 이 사건 범행현장인 대박학원 옆 골목길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겠지요?

[증　　인] 시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검사 문공익]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변호인 김승소] 없습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차배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증인 차배포는 방청석에 가서 앉는다)

증거조사 종결

[재 판 장]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검사 이예리] 증인 김소심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은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변호인 박유능] 증인 김소심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재 판 장] 양측은 더 신청하실 증거가 있나요?

[검사 이예리] 검사 측은 없습니다.

[변호인 박유능]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재 판 장] 이것으로 증거조사를 마치겠습니다.

3. 피고인신문 및 최종변론

피고인신문

[검사 이예리] 재판장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묻기 위하여 피고인신문을 신청합니다.

[재 판 장]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는다)

[재 판 장]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검사 이예리]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2014년 7월 1일 오후 10시 10분경 서울 불광동에 있는 대박학원 옆 골목길에서 김소심으로부터 슈퍼스타 A 스마트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사실이 있나요?

[피 고 인]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저는 그날 그 시각에 대박학원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은 그날 그 시각에 어디 있었나요?

[피 고 인] 삼겹살집에서 나와 저희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삼겹살집에서 볼 때 대박학원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은 그날 그 시각에 피고인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피 고 인] 변호사님과 상의해 봤지만, 제가 그날 그 시각에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은 2010년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두 차례 현금을 갈취한 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피 고 인] 예.

[검사 이예리] 피고인은 2011년에도 중학생을 상대로 현금을 갈취한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지요?

[피 고 인] 예.

[검사 이예리]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모두 대박학원 주변이었지요?

[피 고 인] 예.

[검사 이예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나요?

[피 고 인] 아니요. 저는 피해자와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사 이예리]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 신문하십시오.

[변호사 박유능] 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안경을 쓰지 않았지요.

[피 고 인] 제가 가끔 멋을 내기 위해서 도수 없는 안경을 쓰기도 하지만 그 날은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피고인은 과거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현금을 갈취한 잘못을 저지른 일은 있지만, 그 후 잘못을 뉘우치고 열심히 공부하여 현재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지요.

[피 고 인] 예.

[변호사 박유능] 피고인은 지금 어떤 심정인가요?

[피 고 인] 너무나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심정입니다.

[변호사 박유능] 이상입니다.

[재 판 장] 이것으로 피고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검사의 최종의견 진술

[재 판 장] 검사는 최종의견 진술하십시오.[41]

[검사 문공익]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김소심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분명히 진술하였습니다. 김소심이 만 13세의 중학생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경험한 바를 기억에 따라 정연하게 진술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록 김소심이 이 사건 범행을 당한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야 부모님께 범행을 당한 사

41) 형사소송법 제302조

실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지만, 이는 김소심이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므로 그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김소심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김소심의 증언은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소심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김소심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다)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재 판 장] 변호인은 최종의견 진술하십시오.[42)]

[변호사 김승소] (자리에서 일어서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피해자 김소심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김소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느라 범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더욱이 김소심은 스스로 범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강포청으로부터 사진 1장을 받은 다음 범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김소심이 피고인의 사진을 확인한 시점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때로부터 무려 2개월이 경과한 때입니다. 김소심은 경찰에서 범인의 키가 어른 중에 큰 편이라고 진술했지만, 피고인의 키는 162cm로서 어른 중에 매우 작은 편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는데, 김소심은 범

42) 형사소송법 제303조

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김소심이 이 사건의 진범을 피고인으로 착각하고 잘못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소심의 증언은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도 없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다)

피고인의 최종의견 진술

[재 판 장]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하십시오.[43]

[피 고 인] (자리에서 일어서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김소심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돈을 빼앗은 일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저는 그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한 후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재판장님께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다)

[재 판 장] 이상으로 ○○지방법원 2014고합1000 피고인 최험악에 대한 공갈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합의를 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44]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정 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판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한다)

(모의재판 지도관은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에게 판결을 예측해 보도록 한 후 유죄판결을 예측하는 학생들과 무죄판결을 예측하는 학생들 사이의 토론을 유도한다)

---

43) 형사소송법 제303조

44) 휴정시간은 모의재판 지도관이 적절히 정할 수 있다.

4. 판결선고

재판부의 재입정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 입장하여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판결선고

[재 판 장] 지금부터 ○○지방법원 2014고합1000 피고인 최험악에 대한 공갈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결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만나게 하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보여주면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목격자에게 그

용의자나 그 사진 속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줄 수 있으므로, 그러한 방식의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진술은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경찰관 강포청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 1장만을 제시받고 처음에는 사진 속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못하다가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라"는 강포청의 말을 듣고서야 사진 속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다음 날 "범인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가서 강포청이 제시하는 피고인의 전신사진 1장만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강포청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보여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진 1장만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진 속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시점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느라 범인의 얼굴을 확실히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범인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사진 속의 피고인은 안경을 쓰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사진 속의 피고인이 범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종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범인의 모습에 대한 기억이 확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사진 속의 인물인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암시를 받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키가 어른 남자 중 큰 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키는 162cm로서 어른 남자 중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피해자는 범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말할 때 술 냄새를 많이 풍기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인이 피고인과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5) 그러므로 증인 김소심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6)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7) 결국,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45)]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원경위]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서고, 판사들은 법정 밖으로 나간다)

45)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의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III. 중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2]

한밤의 침입자

읽어두기

서백호(피고인)는 인천에서 타이거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황청용은 같은 지역에서 드래곤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던 사람이며, 왕의리는 황청용의 친구로서 드래곤 나이트클럽에 술을 납품하던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어느 날 드래곤 나이트클럽의 불법영업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관청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관할관청은 조사 후 드래곤 나이트클럽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황청용과 왕의리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황청용과 왕의리는 2014년 8월 8일 밤 10시 무렵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을 여는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주먹과 발과 시멘트 벽돌 등으로 심하게 폭행했고, 피고인은 황청용과 왕의리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거실 탁자 위에 놓아둔 식칼을 집어 들어 황청용의 배 부분을 찔러 황청용을 살해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한 후 피고인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하여 형사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황청용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처벌되지 아니하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사건 형사재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 재판 참여자들이 형사재판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잘 살펴서,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

연번	역할	인원
1	재판장 판사 김정의, 판사 이자유, 판사 박평등	3
2	검사 문공익, 이예리	2
3	피고인 서백호	1
4	변호인 변호사 김승소, 박유능	2
5	증인 왕의리(목격자)	1
6	증인 주면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1
7	증인 임걱정(피고인의 친구)	1
8	증인 조세심(의사)	1
9	법원사무관	1
10	법원실무관	1
11	법원경위	1
총 인원		**15명**

증거목록

검사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식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때 사용한 범행도구
증인 왕의리(목격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였음
증인 주면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피해자가 칼에 복부를 찔려 피를 많이 흘린 것이 사망의 원인임 피해자가 칼에 찔린 깊이는 20cm 정도였음

피고인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인 임걱정 (피고인의 친구)	증인이 이 사건 범행발생 전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사람을 시켜 피고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말하였음
증인 조세심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피고인은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고, 다리에도 심하게 멍이 들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머리 부분은 무언가에 심하게 맞아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고 있었음 증인이 피고인의 머리 부분에 대한 봉합수술을 시행하였음 증인이 피고인을 보았을 때 피고인은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음

관련법규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시나리오

(판사들은 법정 밖 법관 출입문에서 기다리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원사무관, 법원실무관 및 법원경위는 법정 내의 정해진 좌석에 앉아 기다리며, 증인들은 방청석에 앉아 기다린다)

1. 모두절차

재판부의 입정 및 개정선언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이 입장하여 법대에 선 후 방청석을 향하여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재 판 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법원 제 ○형사부[46]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일의 시작과 관계인의 출석 확인

[재 판 장] 2014고합1000호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서백호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피 고 인] (자리에서 일어서서)[47] 예.

---

46) 지도관은 모의재판 실시 상황에 맞추어 법원명과 재판부명을 정할 수 있다.

47) 소송관계인의 착석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실무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본 모의재판 시나리오에서는 ①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주소변동보고의무 고지, ② 검사의 모두진술, ③ 검사와

[재 판 장]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검　　사] 문공익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이예리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변 호 인] 김승소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박유능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등[48)]

[재 판 장]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49)] 잘 아시겠습니까?

[피 고 인] 예.

[재 판 장] 피고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 고 인] 서백호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나요?

[피 고 인] 1972년 3월 9일입니다.

[재 판 장]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피 고 인] 인천 서구 청마로[50)]입니다.

[재 판 장] 등록기준지는 어디인가요?

[피 고 인] 부산 금정구 중앙로입니다.

[재 판 장] 직업은 무엇인가요?

[피 고 인] 인천에서 타이거 나이트클럽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종의견 진술의 경우만 일어선 상태에서 하도록 하였다[법원행정처(주 20), 95. 참조].

48) 진술거부권의 고지, 인정신문 및 주소변동보고의무 고지 등

49) 법원행정처(주 22), 16.

50)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이므로 건물번호는 표시하지 아니하였다(이하 같다).

[재 판 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51]

(피고인은 자리에 앉는다)

검사의 모두진술

[재 판 장]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52]

[검사 문공익]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 재판장님.

피해자 황청용은 인천 서구에서 드래곤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던 사람이고, 왕의리는 피해자의 친구로서 드래곤 나이트클럽에 술을 납품하던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어느 날 드래곤 나이트클럽의 불법영업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관청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관할관청은 조사 후 드래곤 나이트클럽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피해자와 왕의리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왕의리는 2014년 8월 8일 밤 10시경 인천 서구 청마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을 여는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어두운 방 안으로 밀어붙인 후 피고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들고 있던 벽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실로 뛰어 나가 거실 탁자 위에 놓아둔 칼날 길이 22cm인 식칼을 집어 들어 뒤따라온 피해자의 복부를 한차례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밤 11시경 인천 서구 검단로에 있는 황금십자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51) 실시 대상이 중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항의 주소변동보고의무 고지는 생략하였다.

52) 실시 대상이 중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라"는 표현 대신 중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위 표현을 사용하였다.

(자리에 앉는다)

피고인의 모두진술

[재 판 장]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았습니까?

[피 고 인] 예.

[재 판 장] 검사가 방금 말한 공소사실을 잘 들으셨지요?

[피 고 인] 예.

[재 판 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십니까?[53]

[피 고 인] 제가 거실 탁자 위에 놓아둔 식칼로 피해자를 찔려 죽게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날 밤 왕의리와 함께 저를 죽이려 하였고, 저는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식칼을 들어 황청용을 찔렀을 뿐입니다.

변호인의 의견진술

[재 판 장] 변호인도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까?[54]

[변호인 김승소] 예, 재판장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황청용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은 인정합니다.[55]

하지만 피고인은 야간에 갑자기 집안으로 침입한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자신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벽돌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식칼로 피해자를 찔렀던 것입니다. 피고인의

53) 형사소송법 제286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제1항

54) 형사소송법 제286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의2 제2항

55)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전에 아무런 위협 행동 없이 칼날 길이 22cm인 식칼로 피고인의 명치를 깊게 찔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본 모의재판 시나리오에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1조 제3항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등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쟁점정리 및 증거신청

[재 판 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황청용을 식칼로 찔러 살해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변호인 김승소] 예. 맞습니다.

[검사 문공익] 재판장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왕의리가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지만, 피해자와 왕의리에게는 피고인을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왕의리가 피고인을 폭행한 정도도 피고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흉기인 식칼을 미리 준비해 두었고, 피해자를 쫓아내기 위한 위협 행동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식칼로 피해자를 찔렀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신체부위를 가볍게 찌르지 않고 치명적인 부위인 복부를 힘껏 깊게 찔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나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재 판 장] 알겠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맞습니까?

[검사 문공익] 예. 맞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예. 맞습니다.

[재 판 장] 검사는 입증계획을 말씀하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56]

---

56) 형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검사 문공익] 예.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황청용을 칼로 찔러 살해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입증하겠습니다.[57] 이를 위해서 검사는 이 사건 범행 흉기인 식칼을 증거물로 신청하고, 이 사건 범행현장을 목격한 왕의리와 피해자 황청용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주면밀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 판 장] 피고인 측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58]

[변호인 김승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재판장은 좌우에 앉아 있는 배석판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검사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묻고, 배석판사들은 작은 목소리로 검사의 증거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한다)

[재 판 장] 검사가 신청한 증거물과 증인들을 모두 채택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도 주장에 관한 입증계획을 말씀하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59]

[변호인 김승소] 예.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황청용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사람을 시켜 피고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임걱정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조세심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 판 장] 검사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60]

[검사 문공익]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재판장은 좌우에 앉아 있는 배석판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변호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묻고, 배석판사들은 작은 목소리로 변호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한다)

[재 판 장]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도 채택하겠습니다.

---

57) 통설은, 검사가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사법연수원 편,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사법연수원(2014), 7. 참조]

58)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59) 형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60)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양측은 더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 문공익] 검사 측은 없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재 판 장] 알겠습니다.

2. 증거조사

증거물에 대한 조사

[재 판 장] 지금부터 증거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검사는 증거물을 제시하십시오.[61]

[검사 문공익] (증거물인 식칼을 제시하고)[62] 피고가 황청용을 살해할 때 사용한 흉기인 식칼을 제시합니다. 보시다시피 식칼의 손잡이는 나무이고, 칼날은 금속이며, 칼날 길이는 22㎝입니다. 칼날에는 혈흔이 있습니다.

(검사는 증거물인 식칼을 손에 들고 재판장과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다가가 식칼을 보여주고, 판사들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식칼을 살펴본다)

[재 판 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거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피 고 인] 제가 황청용을 찌르는 데 사용한 식칼이 맞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저도 피고인과 같은 의견입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 판 장] 다음으로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나요.[63]

---

61)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

62) 모형 칼이나, 30㎝ 자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63)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이므로 증인이 재정한 것으로 하였다.

[검사 문공익] 왕의리, 주면밀 증인은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임걱정, 조세심 증인도 출석하였습니다.

[재 판 장]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서 나란히 선다)

[재 판 장]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법원실무관은 증인들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재판장에게 전달한다)

(재판장은 신분증과 증인들의 얼굴을 대조하면서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후 법원실무관을 통해 증인들에게 신분증을 돌려준다)[64]

위증의 벌 경고 등

[재 판 장] 증인들 중에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증 인 들] (입을 모아서) 없습니다.

[재 판 장] 증인들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증인들은 증언을 하기에 앞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선서를 한 후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65]

잘 아시겠습니까?

[증 인 들] 예.

증인선서

[재 판 장]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66]는 왕의리 증인이 대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할 자세를 취한다. 왕의리 증인은 왼손으로 선서서를 든다)

---

64) 형사소송규칙 제71조

65) 형사소송법 제157, 158조 중학생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인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증언거부권 고지를 생략하였다.

66) 법정에 비치된 것을 사용한다.

[증인 왕의리] (당당한 목소리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67]

[재 판 장] 검사가 신청한 왕의리 증인과 주면밀 증인을 차례로 신문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신청한 임걱정 증인, 조세심 증인의 순서로 신문하겠습니다. 왕의리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법원경위의 안내에 따라 잠시 법정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68]

(왕의리 증인은 증인석에 앉고, 나머지 증인들은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밖으로 나간다)

증인 왕의리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검사 이예리] 예, 재판장님.

증인은 피해자 황청용과 어떤 사이인가요?

[증 인] 저와 황청용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황청용이 경영하는 드래곤 나이트클럽의 위법사실을 신고하여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지는 바람에 황청용이 큰 손실을 입은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검사 이예리] 그 때문에 황청용이 피고인에게 화가 많이 났나요?

[증 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타이거 나이트클럽과 황청용이 운영하는 드래곤 나이트클럽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의 신고로 드래곤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게 되어 황청용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피고인은 이익을 얻었으니, 황청용이 피고인에게 화가 난 것도 당연합니다.

---

67)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인 점을 고려하여, 증인들이 형사소송법 제158조 제3항에 따라 선서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절차를 생략하였다.

68) 형사소송법 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검사 이예리] 증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 7시 무렵 황청용을 만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황청용이 큰 손실을 입고 상심해 있을 것 같아 제가 황청용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였습니다.

[검사 이예리] 황청용이 술자리에서 증인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증　　인] 황청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손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검사 이예리] 그래서 증인은 뭐라고 했나요?

[증　　인] 저도 피고인 때문에 손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욕하면서 피고인을 손볼 때 저도 끼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검사 이예리] 증인은 피고인 때문에 어떤 손해를 입었나요?

[증　　인] 저는 술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드래곤 나이트클럽에 맥주와 양주를 납품해 왔는데, 피고인의 신고로 드래곤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아 더 이상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사 이예리] 황청용이 증인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던가요?

[증　　인] 정말로 피고인을 손볼 생각이 있으면 지금 당장 손을 보자고 하였습니다.

[검사 이예리] 그래서 증인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증　　인]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검사 이예리] 증인과 황청용은 그 후 어떻게 했나요?

[증　　인] 저와 황청용은 밤 9시 30분경 술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의 집은 어떻게 찾아갔나요?

[증　　인] 황청용이 그 전에 사업 문제로 피고인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다고 하면서, 택시기사에게 길 안내를 하였습니다.

[검사 이예리] 증인과 황청용은 택시에서 내려 어떻게 했나요?

[증　　인] 황청용은 피고인을 손보려면 무언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길가에 버려진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었고, 저는 황청용의 뒤를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검사 이예리] 증인과 황청용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어떻게 했나요?

[증　　인] 피고인의 집은 코끼리 아파트 100동 3층에 있었습니다. 저와 황청용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피고인이 "누구세요"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와 황청용은 피고인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의 집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증　　인] 황청용이 불 꺼진 방에서 들고 있던 벽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거실로 뛰어 나가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뒤따라온 황청용의 배를 한차례 찔렀습니다. 황청용이 쓰러지자 피고인은 저도 찌르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재빨리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도망갔습니다.

[검사 이예리] (증거물인 식칼을 제시하고) 피고인이 황청용을 찌르는 데 사용했던 식칼이 이것인가요?

[증　　인] 예. 맞습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이 칼로 황청용을 찌르기 전에, 황청용에게 칼을 보이면서 위협하는 행동을 했나요?

[증　　인] 아닙니다. 피고인은 칼을 들자마자 곧바로 황청용을 힘껏 찔렀습니다.

[검사 이예리]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변호사 박유능] 예. 증인과 황청용은 피고인을 손보기로 하고 피고인을 찾아갔다고 증언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보기로 하였나요?

[증　　인] 제가 황청용과 피고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볼지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몇 대 때리면서 겁이나 주려고 생각하였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황청용은 피고인을 손보려면 무언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길가에 버려진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증인도 피고인을 혼내주기 위해 무언가를 집어 들었나요?

[증　　인] 아닙니다. 저는 피고인의 집에 빈손으로 갔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과 황청용은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증　　인] 예. 피고인이 현관문을 조금 열자 황청용이 현관문을 잡아당겨 활짝 열었고, 저와 황청용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과 황청용은 피고인을 어두운 방 안으로 밀어 붙였지요?

[증　　인] (잠시 생각하다가) 피고인이 잠시 어두운 방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피고인을 불 꺼진 방 안으로 밀어 붙였는지, 피고인이 제 발로 방 안으로 들어간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황청용이 방 안에서 들고 있던 벽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지요?

[증　　인] 예. 황청용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벽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황청용은 피고인에게 어떤 욕을 했나요?

[증　　인] "이런 나쁜 놈은 죽어야 한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황청용이 피고인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지요?

[증　　인] 잘 모르겠습니다. 방 안이 조금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방 안이 얼마나 어두웠나요?

[증　　인] 방 안에 불이 켜 있지 않았고 열린 방문으로 거실 빛이 새어 들어오는 상태여서 조금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방 안에 불이 켜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불을 켤 겨를도 없이 급박했던 것은 아닌가요?

[증　　인]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황청용이 벽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릴 때 증인은 피고인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았지요?

[증　　인] (잠시 생각하다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피고인이 벽돌로 머리를 맞은 후 거실로 도망가자 황청용이 거실로 따라 나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몸을 발로 걷어찼지요?

[증　　인] 예. 황청용이 거실에서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몇 번 걷어찼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도 황청용과 함께 피고인을 때리고 걷어찼지요?

[증　　인] 아닙니다. 저는 황청용 옆에서 피고인에게 욕을 했을 뿐입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피고인에게 어떤 욕을 했나요?

[증　　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피고인이 황청용을 찌른 후 증인도 찌르려고 하였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증　　인] 황청용이 쓰러지자, 피고인은 식칼을 손에 든 채 저를 노려보면서 "너도 죽어 볼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고인이 저도 찌르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이상입니다.

[재 판 장] 검사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신가요?

[검사 이예리] 예, 재판장님.

증인과 황청용은 피고인을 살해할 의도로 피고인을 찾아갔던 것인가요?

[증　　인] 아닙니다. 저와 황청용은 술을 먹다가 분한 마음이 치밀어 올라 피고인을 적당히 혼내 주려고 찾아갔던 것이지, 피고인을 죽일 의도로 찾아갔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검사 이예리] 증인은, 피고인이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황청용을 칼로 찔렀다고 보시나요?

[변호인 박유능]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69]

[재 판 장] 변호인의 이의를 인정합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의견을 묻는 질문을 삼가 주십시오.

[검사 이예리] 마지막 질문은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신가요?

[변호인 박유능] 예, 재판장님.

증인과 황청용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지요?

[증　　인] 예.

[변호인 박유능] 얼마나 취해 있었나요?

[증　　인] 저와 황청용은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황청용이 조금 더 많이 마셨습니다. 저희 둘 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리 많이 취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인 박유능] 증인과 황청용의 키와 몸무게는 얼마나 되나요?

[증　　인] 저는 키 180cm에 몸무게가 80kg입니다. 황청용도 저와 키와 몸무게가 비슷할 것입니다.

---

69)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사소송규칙 제74조 제2항 제3호).

[변호인 박유능]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나요?

[증　　인] 예. 황청용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몇 차례 조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변호인 박유능] 이상입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왕의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주면밀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왕의리는 방청석에 가서 앉고, 증인 주면밀은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안에 들어온 다음 증인석에 앉는다).

증인 주면밀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검사 문공익] 증인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증　　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법의관으로 일하면서 사체 부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사 문공익] 증인은 황청용의 사체를 부검한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검사 문공익] 황청용이 사망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증　　인] 칼에 복부를 찔려 피를 많이 흘린 것이 사망의 원인입니다.

[검사 문공익] (증거물인 식칼을 제시하고) 황청용의 복부를 찌른 것이 이 칼인가요?

[증　　인] 예. 맞습니다. 칼날의 형태와 칼에 찔린 상처의 형태가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검사 문공익] 황청용이 칼에 찔린 부위와 깊이는 어떠했나요?

[증　　인] 황청용은 복부를 한차례 찔렸는데, 찔린 깊이는 20㎝ 정도였습니다. 범인이 별다른 망설임 없이 황청용을 강하게 찔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문공익]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변호사 김승소] 예, 재판장님.

증인은 범인이 별다른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강하게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는데, 증인이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증　　인] 범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지 여부에 대해서 망설이는 경우에는 팔과 다리와 같이 덜 치명적인 부위를 찌르거나, 신체 부위를 칼로 긋거나 가볍게 찌른 후 치명적인 부위를 찌르는 경우가 많은데, 황청용은 치명적인 부위인 복부를 찔린 이외에 다른 곳을 찔리거나 베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칼날 부분의 길이가 22㎝인 식칼을 20㎝ 정도의 깊이로 찌르기 위해서는 매우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김승소] 황청용의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던가요?

[증　　인] 황청용의 키는 181cm이고 몸무게는 82kg이었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이상입니다.

[재 판 장] 검사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신가요?

[검사 문공익] 없습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주면밀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임걱정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주면밀은 방청석에 가서 앉고, 증인 임걱정은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안에 들어온 다음 증인석에 앉는다).

증인 임걱정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변호인은 신문하십시오.

[변호인 김승소] 예. 재판장님.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사이인가요?

[증　　인] 증인은 피고인과 어린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 살면서 초등학교와 중 ·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사이입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증　　인] 피고인이 경영하는 타이거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은 2014년 8월 7일 저녁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변호인 김승소] 증인은 피고인에게 왜 전화를 했나요.

[증　　인]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사장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황청용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사람을 시켜 피고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은 피고인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증　　인] 황청용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사람을 시켜 피고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당분간 몸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피고인은 증인의 전화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증　　인] 피고인은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서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피고인이 평소 겁이 많은 편인가요?

[증　　인] 예. 피고인은 본래 겁이 많은 편입니다.

[변호인 김승소] 이상입니다.

[재 판 장] 검사는 반대 신문하십시오.

[검사 문공익] 증인은 피고인에게 전한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았나요?

[증　　인] 아니요. 확인해 보지 못하였습니다.

[검사 문공익] 증인이 확인해 보지도 않은 소문을 피고인에게 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　　인] 황청용이 과거에 조직폭력배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고, 피고인도 드래곤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은 이후 장사가 잘 돼서 좋기는 하지만 황청용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소문을 전했을 뿐입니다.

[검사 문공익] 황청용이 과거에 조직폭력배였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증　　인] 아니요, 확인해 보지 못하였습니다.
황청용이 덩치가 크고 말을 거칠게 하고 다녀서 과거에 조직폭력배였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검사 문공익]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변호인 김승소] 없습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임걱정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조세심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임걱정은 방청석에 가서 앉고, 증인 조세심은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안에 들어온 다음 증인석에 앉는다).

증인 조세심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변호인은 신문하십시오.

[변호인 김승소] 예. 재판장님.

증인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증 인] 인천 서구 검단로에 있는 황금십자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은 2014년 8월 8일 밤 10시 30분경 증인의 병원에서 피고인을 치료한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변호인 김승소] 증인이 피고인을 치료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증 인]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119 구급차와 경찰차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습니다. 119 구급차에서 내린 환자는 복부를 칼에 찔렸는데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다가 11시경 과다 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린 피고인은 제가 치료를 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피고인은 어디를 얼마나 다쳤나요?

[증 인] 제가 살펴보니 피고인은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고, 다리에도 심하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머리 부분은 무언가에 심하게 맞아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피고인이 왜 그런 부상을 입었는지 말하던가요?

[증 인] 누군가에게 맞았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피고인이 입은 부상의 정도는 어떠했나요?

[증 인] 머리 부분의 부상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두개골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피

부가 깊이 파이고 5cm 정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두개골이 함몰되지 아니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머리 부분에 대해서 즉시 봉합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이상입니다.

[재 판 장] 검사는 반대 신문하십시오.

[검사 문공익] 피고인이 그 당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말하였나요?

[증 인]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 간단히 대답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습니다.

[검사 문공익]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변호인 김승소] 없습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조세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증인 조세심은 방청석에 가서 앉는다).

증거조사 종결

[재 판 장]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증인신문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검사 이예리] 증인 왕의리, 주면밀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증명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은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변호인 박유능] 증인 임걱정, 조세심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입니다.

[재 판 장] 양측은 더 신청하실 증거가 있나요?

[검사 이예리] 검사 측은 없습니다.

[변호인 박유능]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재 판 장] 이것으로 증거조사를 마치겠습니다.

3. 피고인신문 및 최종변론

피고인신문

[검사 이예리] 재판장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묻기 위하여 피고인신문을 신청합니다.

[재 판 장]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는다)

[재 판 장]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검사 이예리]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2014년 8월 8일 밤 10시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황청용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있지요.

[피 고 인] 예.

[검사 이예리] 피고인은 거실 탁자에 놓아둔 칼을 들자마자 곧바로 황청용의 복부를 한차례 힘껏 찔렀지요?

[피 고 인] 예.

[검사 이예리] 피고인이 황청용을 칼로 찌르기 전에, 황청용에게 칼을 보이면서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황청용을 쫓아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 고 인] 당시에는 너무 놀라고 겁이 나서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경황이 없었습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이 황청용을 칼로 찌르더라도 팔이나 다리 등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분을 찌를 수 있지 않았나요?

[피 고 인]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경황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 황청용과 왕의리에게 심하게 맞아 죽을 것 같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 외에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황청용과 왕의리에게 거실

에서 심하게 구타를 당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식칼이 눈에 들어와 순간적으로 식칼을 집어 황청용을 찔렀을 뿐입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었던 부상은 얼굴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고 머리가 찢어진 정도인데, 조금도 망설임 없이 사람을 식칼로 찔러 죽일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단 말인가요?

[피 고 인] (단호한 목소리로) 저는 정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이 임걱정의 전화를 받고 거실 탁자 위에 식칼을 올려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 고 인] 임걱정의 전화를 받고 걱정이 됐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제 집에 침입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탁자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은 식칼을 놓아둘 때 피해자나 피해자가 보낸 사람이 집안에 침입하면 그 식칼로 침입자를 찔러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었나요?

[피 고 인] (단호한 목소리로) 절대로 아닙니다. 식칼을 놓아둘 때만 해도 제가 식칼로 사람을 찌르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은 황청용의 유족과 합의하였나요?

[피 고 인] 아니요.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검사 이예리]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 신문하십시오.

[변호사 박유능] 예.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누구와 살고 있나요?

[피 고 인]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 현관문을 조금 열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했지요?

[피 고 인] 예.

[변호사 박유능] 그런데 황청용과 왕의리가 갑자기 현관문을 활짝 열고 피고인의 가슴을 세게 밀치며 신발을 신은 채 집안으로 들어왔지요?

[피 고 인] 예.

[변호사 박유능] 그 이후의 상황을 자세히 말해 보십시오.

[피 고 인] 황청용과 왕의리가 저를 어두운 방으로 밀어 넣은 다음 왕의리는 뒤에서 저

를 껴안아 꼼짝 못하게 했고, 황청용은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벽돌로 제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제가 머리를 옆으로 돌리는 바람에 벽돌에 제대로 맞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벽돌에 제대로 맞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변호사 박유능] 그 이후의 상황을 말해 보십시오.

[피 고 인] 제가 왕의리의 팔을 뿌리치고 거실로 도망치자 황청용과 왕의리가 뒤따라와 저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저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탁자에 놓아둔 식칼이 눈에 들어왔고, 순간적으로 식칼을 집어 황청용의 배를 찔렀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피고인은 왕의리도 칼로 찌르려고 했나요?

[피 고 인] 아닙니다. 왕의리를 위협하여 쫓아버릴 생각으로 "너도 죽어 볼래?"라고 소리쳤을 뿐입니다.

[변호사 박유능] 피고인은 그 후 어떻게 했나요?

[피 고 인] 112에 전화를 걸어 제가 사람을 칼로 찔렀다고 신고한 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황청용과 저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피고인의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나요?

[피 고 인] 저의 키는 175cm이고 몸무게는 75kg입니다.

[변호사 박유능]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요.

[피 고 인] 예.

[변호사 박유능] 피고인은 사정이야 어찌 되었든 돌아가신 황청용과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요.

[피 고 인] 예. 저로 인하여 돌아가신 황청용과 유족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변호사 박유능] 이상입니다.

[재 판 장] 검사는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신가요?

[검사 이예리] 예.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황청용이 벽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릴 때 왕의리가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아 꼼짝 못하게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피 고 인]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왕의리는 거실에서 황청용과 함께 저의 다리를 발로

심하게 걷어차기도 하였습니다.

[검사 이예리]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더 물어볼 것이 있나요?

[변호사 박유능] 없습니다.

[재 판 장] 이것으로 피고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검사의 최종의견 진술

[재 판 장] 검사는 최종의견 진술하십시오.[70]

[검사 문공익]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이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나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와 왕의리가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지만, 피해자와 왕의리에게는 피고인을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와 왕의리가 피고인에게 한 폭행의 정도도 피고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흉기인 식칼을 미리 준비해 두었고, 황청용을 찌르기 전에 칼을 휘둘러 황청용을 쫓아내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신체 부위를 가볍게 찌르지 않고 식칼을 집어 들고 곧바로 황청용의 복부를 깊게 찔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나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다)

70) 형사소송법 제302조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재 판 장] 변호인은 최종의견 진술하십시오.[71]

[변호사 김승소] (자리에서 일어서서) 피고인은 한밤에 갑자기 집안으로 침입한 두 명의 건장한 남자들로부터 벽돌로 머리를 맞아 심하게 다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식칼로 피해자를 찔렀던 것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만일,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이 한밤에 두 명의 건장한 남자들로부터 불의의 공격을 받아 공포를 느끼고 경악하며 흥분하거나 당황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다)

피고인의 최종의견 진술

[재 판 장]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하십시오.[72]

[피 고 인] (자리에서 일어서서) 재판장님!

저 때문에 돌아가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 갑자기 집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와 왕의리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머리에 벽돌을 맞아 죽을 것만 같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 외에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식칼을 들어 황청용을 찔렀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재판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

71) 형사소송법 제303조
72) 형사소송법 제303조

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다)

[재 판 장] 이상으로 ○○지방법원 2014고합1000 피고인 서백호에 대한 살인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합의를 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73]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정 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판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한다)

(모의재판 지도관은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에게 판결을 예측해 보도록 한 후 유죄판결을 예측하는 학생들과 무죄판결을 예측하는 학생들 사이의 토론을 유도한다)[74]

4. 판결선고

재판부의 재입정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 입장하여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판결선고

[재 판 장] 지금부터 ○○지방법원 2014고합1000 피고인 서백호에 대한 살인 사건의

73) 휴정시간은 모의재판 지도관이 적절히 정할 수 있다.

74) 이때 지도관은 학생들에게 정당방위와 형법 제21조 제3항 과잉방위의 법리,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함이 바람직하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결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와 왕의리가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항하여 칼을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 목적, 수단, 피고인의 의사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방위행위임은 인정됩니다.

(2) 그러나 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피고인의 머리를 벽돌로 때리고, 피고인의 얼굴과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구타한 정도였던 데 비하여,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깊게 찔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기 전에 식칼을 보이면서 위협을 하여 피해자와 왕의리를 쫓아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해자를 찔렀던 점, ③ 피고인이 팔과 다리와 같이 덜 치명적인 부위를 찌르거나 신체 부위를 칼로 긋거나 가볍게 찌르지 아니하고, 곧바로 매우 치명적인 부위인 복부를 찔렀던 점, ④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서 생긴 상처의 깊이가 20cm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통념상 정당방위라고 인정되는 수준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다만, ① 피고인이 한밤에 자신의 집에 혼자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보다 덩치가 큰 성인 남자인 피해자와 왕의리가 갑자기 피고인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을 어두운 방 안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벽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거실로 도망친 피고인을 쫓아가 다시 심하게 폭행하였던 점, ③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두개골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머리의 피부가 깊이 파이고 5cm 길이로 찢어지는 두피 열상과 얼굴과 다리에 심한 멍이 드는 타박상을 입었던 점, ④ 피고인은 평소 겁이 많은 성격이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임걱정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들었던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와 왕의리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식칼을 발견하고 칼로 피해자를 찌른 이후 왕의리에게는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아니한 점, ⑥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 사건 현장에 머물러 있었던 점, ⑦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치료한 조세심이 피고인이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 같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밤에 피해자와 왕의리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한 상태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임이 인정됩니다.

(4)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5) 결국,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75]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원경위]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서고, 판사들은 법정 밖으로 나간다)

75)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의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제 3 절

고등학생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Ⅰ. 고등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
Ⅱ. 고등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2]
Ⅲ. 고등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1]
Ⅳ. 고등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2]

I. 고등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

내 사랑 보배

읽어두기

정애견(원고)은 2014년 8월 16일 오후 5시 30분 무렵 자신의 집 근처 공터에서 자신이 기르는 애완견 보배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경솔(피고)은 그때 위 공터에 주차시켜 둔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발하다가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보배의 오른쪽 앞다리를 들이받아 부러지게 하였습니다.

원고는 집 근처 동물병원에서 보배의 다리를 치료받고 그 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보배가 다치는 바람에 위와 같이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치료비 300만 원과 위자료 700만 원을 합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보배가 다친 것은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 때문이고, 만일 피고에게 보배를 다치게 한 잘못이 있더라도 보배의 시중 가격인 10만 원을 넘는 치료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 사건 민사재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사,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증인 등 재판 참여자들이 민사재판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판결이 선고됩니다. 학생들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잘 살펴서,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

연번	역할	인원
1	재판장 판사 김정의, 판사 이자유, 판사 박평등	3
2	원고 정애견	1
3	피고 서경솔	1
4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소, 이명석	2
5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유능, 최영민	2
6	증인 최양심(동물병원 의사)	1
7	증인 강직한(사고 목격자)	1
8	법원사무관	1
9	법원실무관	1
10	법원경위	1
총 인원		**14명**

증거목록

원고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인 최양심 (동물병원 의사)	보배가 피고의 잘못 때문에 다쳤고, 원고가 보배의 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음

피고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인 강직한 (이 사건 사고 목격자)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임

관련법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시나리오

(판사들은 법정 밖 법관 출입문에서 기다리고,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원사무관, 법원실무관 및 법원경위는 법정 내의 정해진 좌석에 앉아 기다리며, 증인들은 방청석에 앉아 기다린다)

재판부의 입정 및 개정선언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이 입장하여 법대에 선 후 방청석을 향하여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재 판 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법원 제○민사부[76]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일의 시작과 관계인의 출석 확인

[재 판 장] 2014가합1000호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 정애견씨와 피고 서경솔씨 나오셨습니까?[77]

[원　　고] 원고 정애견 출석하였습니다.

[피　　고] 피고 서경솔 출석하였습니다.

[재 판 장] 원고 소송대리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76) 보다 많은 학생들이 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물관할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지도관은 모의재판 실시 상황에 맞추어 법원명과 재판부명을 정할 수 있다.

77) 민사소송법 제169조(기일의 시작)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원고 소송대리인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재 판 장] 피고 소송대리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피고 소송대리인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당사자 등의 주장

[재 판 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떤 청구를 하고 있고, 왜 그런 청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2014년 8월 16일[78] 오후 5시 30분경 집 근처 공터에 주차시켜 둔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발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원고의 애완견 보배의 오른쪽 앞다리를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보배는 오른쪽 앞다리가 부러졌고, 원고는 동물병원에서 보배를 치료하느라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가족과 다름없는 보배가 다쳐서 고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배의 치료비 300만 원과 위자료 700만 원을 합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 판 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피고가 2014년 8월 16일 오후 5시 30분경 원고의 집 근처 공터에 주차시켜 둔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발하다가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보배의 오른쪽 앞다리를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원고가 보배의 목에 줄을 묶어 데리고 다녔거나 보배가 피고의 승용차 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했다면 보배는 다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배가 다친 것은 원고 때문입니다. 피고는 보배가 다친 데 책임이 없고, 책임이 있더라도 10% 정도의 책임만 있습니다.

---

78) 일자는 모의재판 실시 일자에 맞추어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법적으로 볼 때 물건입니다. 사고로 망가진 물건의 수리비가 물건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 물건을 망가뜨린 사람은 물건의 값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피고가 확인해 보니 보배의 값은 10만 원 정도입니다. 만일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치료비는 1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지만,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재 판 장]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원　　고]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고 전에 보배의 바로 옆에서 보배를 따라 걸으며 보배를 잘 살피고 있었는데, 피고가 갑자기 보배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보배가 다친 것은 전적으로 피고의 책임입니다.

(약간 화난 목소리로) 재판장님! 피고는 보배가 물건이라고 하면서 개 값 10만 원만 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보배는 생명을 가진 동물이고, 저에게는 가족과 다름없습니다. 가족이 다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치료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리고 저는 보배가 다친 후 걱정과 슬픔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제가 당한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700만 원도 적은 돈입니다.

[재 판 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시 반박하시겠습니까?

[피　　고] 재판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원고는 사고 전에 보배의 바로 옆에서 보배를 따라 걸으며 보배를 잘 돌봤다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원고는 보배와 멀리 떨어져서 혼자 걷고 있었고 보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보배가 다친 것은 오로지 원고 때문입니다.

[재 판 장] 양측은 더 주장하실 것이 있나요?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원고는 없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피고도 없습니다.

쟁점정리

[재 판 장]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잘못을 고려하여 피고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제한한다면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가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보배의 값을 넘는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네 번째 쟁점은,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을 이렇게 정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원고는 동의합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피고도 동의합니다.

[재 판 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정리한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신청

[재 판 장] 이제 주장에 대한 정리를 마치고 증거신청을 받겠습니다.

원고는 증거신청하십시오.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보배가 피고의 잘못 때문에 다쳤고, 원고가 보배의 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배를 치료한 동물병원 수의사 최양심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은 좌우에 앉아 있는 배석판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묻고, 배석판사들은 작은 목소리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한다)

[재 판 장] 원고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합니다.
피고도 증거신청하십시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보배가 다친 것이 오로지 원고 때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강직한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은 좌우에 앉아 있는 배석판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묻고, 배석판사들은 작은 목소리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한다)

[재 판 장] 피고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합니다.
양측은 더 신청할 증거가 있으신가요?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원고는 없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피고도 없습니다.

[재 판 장]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증거신청 절차를 마칩니다.

증거조사 시작

[재 판 장] 지금부터 증거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나요.[79]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최양심 증인은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강직한 증인도 출석하였습니다.

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 판 장] 그럼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 나란히 선다)

[재 판 장]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80]

(법원실무관은 증인들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재판장에게 전달한다)

79)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이므로 증인이 재정한 것으로 하였다.
80) 민사소송규칙 제88조

(재판장은 신분증과 증인들의 얼굴을 대조하면서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후 법원실무관을 통해 증인들에게 신분증을 돌려준다)

위증의 벌 경고 등

[재 판 장] 증인들 가운데 원고나 피고와 친인척 되는 분 있습니까?

[증 인 들] (입을 모아서) 없습니다.

[재 판 장] 증인들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만일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증 인 들] 예.

증인선서

[재 판 장]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는 최양심 증인이 대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할 자세를 취한다. 증인 최양심은 왼손으로 선서서를 든다)

[증인 최양심] (당당한 목소리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81]

[재 판 장] 원고가 신청한 최양심 증인을 먼저 신문하고, 그다음에 강직한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최양심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강직한 증인은 잠시 법정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82]

(증인 최양심은 증인석에 앉고, 증인 강직한은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밖으로 나간다)

---

81)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인 점을 고려하여, 증인들이 선서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절차를 생략하였다.

82) 민사소송법 제328조(격리신문과 그 예외)
① 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 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증인 최양심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원고는 신문하십시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예, 재판장님.
증인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증 인] 저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입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증인은 2014년 8월 16일 보배를 치료한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원고가 그날 오후 6시쯤 다리를 다친 보배를 데려와 치료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보배가 많이 다쳤나요?

[증 인] 오른쪽 앞다리가 여러 군데 부러졌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보배가 왜 다쳤다고 하던가요?

[증 인] 피고가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를 출발시키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는 바람에 승용차 옆에 있던 보배를 승용차 바퀴로 들이받았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었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증인은 보배에게 어떤 치료를 했나요?

[증 인]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 다친 부위를 확인했는데, 골절이 심해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한 후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한 후 퇴원시켰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증인은 보배의 치료비를 누구에게서 얼마나 받았나요?

[증 인]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이상입니다.

[재 판 장] 피고는 반대 신문하십시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보배는 어떤 개인가요?

[증 인] 나이가 3살 정도인 수컷 시추입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보배와 유사한 개의 시중 가격은 얼마 정도인가요?

[증 인] 보배와 유사한 개의 시중 가격은 1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그렇다면, 증인은 보배의 치료비로 너무 많은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요?

[증 인] (단호하게) 절대로 아닙니다. 보배가 워낙 많이 다쳐 수술비와 입원비가 많

이 나왔을 뿐입니다. 저는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보배는 완전히 치료됐나요?

[증 인] (자신감 있는 태도로) 예. 보배가 많이 다치기는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저 스스로 이런 말을 하려니 쑥스럽지만, 제가 애완견 골절 치료 분야에서는 '명의'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이상입니다.

[재 판 장] 원고는 더 물어볼 것이 있나요?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고가 보배를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증 인] 원고는 보배를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원고는 다친 보배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보배 걱정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이상입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최양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법원경위는 강직한 증인을 모셔 오시지요.

(증인 최양심은 방청석에 가서 앉고, 증인 강직한은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안에 들어온 다음 증인석에 앉는다).

증인 강직한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피고 신문하십시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증인은 2014년 8월 16일 공터에서 피고의 승용차가 애완견을 들이받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제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똑똑히 봤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증 인] 그곳은 동네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공터입니다. 제가 공터에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차에서 내리면서 보니, 원고가 저만치 걸어가고 있었고, 애완견은 원고의 뒤쪽에 있던 피고의 승용차 근처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습

니다. 그때 피고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발하면서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애완견을 들이받았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애완견이 목줄을 하고 있던가요?

[증 인] 아니요. 애완견은 목줄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원고가 애완견을 잘 살펴보고 있던가요?

[증 인] 아니요. 원고는 애완견 앞쪽에서 다른 곳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었고, 애완견은 원고의 뒤쪽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애완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지요?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증인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83]

[재 판 장] 이의를 인정합니다.[84] 피고 소송대리인은 의견을 구하는 질문을 삼가 주십시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예. 마지막 질문은 철회합니다. 이상입니다.

[재 판 장] 원고는 반대 신문하십시오.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가 애완견의 앞쪽에서 걷고 있다고 했는데, 원고와 애완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나요?

[증 인] 최소한 10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애완견을 돌아보면서 "보배야 이리와"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요?

[증 인] 글쎄요... 제가 차에서 내린 후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애완견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원고가 애완견을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피고가 애완견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증 인] 아니요. 애완견이 피고의 승용차 주변을 쉴 새 없이 뛰어다녔으므로, 승용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다면 애완견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이상입니다.

---

83) 민사소송규칙 제95조 제2항

84) 민사소송규칙 제95조 제2항

[재 판 장] 피고는 더 신문할 것이 있으신가요?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없습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강직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강직한은 방청석에 가서 앉는다)

증거조사 종결

[재 판 장]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증인 최양심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이 증명되었다는 의견입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증인 강직한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의 주장이 증명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재 판 장] 이것으로 증거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변론

[재 판 장] 지금부터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원고는 최종변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자리에서 일어서서) 피고는 2014년 8월 16일 오후 5시 30분경 집 근처 공터에 주차시켜 둔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발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보배의 오른쪽 앞다리를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원고는 보배의 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가족과 다름없는 보배가 다쳐서 고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피고는 보배가 물건이므로 보배의 값인 10만 원을 넘는 치료비를 줄 수 없고 위자료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배는 원고에게 가족과 다름없는

생명을 가진 동물이므로 보통의 물건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치료비를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배의 치료비 300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만 원을 합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리에 앉는다)

[재 판 장] 피고도 최종변론하십시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자리에서 일어서서) 보배가 다친 것은 차들이 많이 다니는 주차장에 보배를 데리고 나오면서 보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원고의 잘못 때문입니다.

피고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발하면서 주위를 잘 살폈지만, 보배가 워낙 작은 애완견이어서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피고는 보배가 다친 데 책임이 없고, 책임이 있더라도 10% 정도의 책임만 있습니다.

보배가 원고에게 가족과 다름없는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물건입니다. 사고로 망가진 물건의 수리비가 물건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 물건을 망가뜨린 사람은 물건의 값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지만,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만일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1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는다)

[재 판 장] 원고와 피고는 더 주장하거나 증명하실 것이 있나요?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원고는 없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피고도 없습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지방법원 2014가합1000 손해배상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합의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85)]

85) 휴정시간은 모의재판 지도관이 적절히 정할 수 있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정 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판사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퇴장한다)

(모의재판 지도관은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 위자료의 액수 등에 대한 토론을 유도한 다음 별도로 마련된 양식에 따라 '모의재판 참여 학생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후 참여 학생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판결이 선고되도록 지도한다)

재판부의 재입정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 입장하여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판결선고

[재 판 장] 지금부터 ○○지방법원 2014가합1000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판결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86)]

(1) 피고는 2014년 8월 16일 오후 5시 30분경 집 근처 공터에 주차시켜 둔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발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보배의 오른쪽 앞다리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였습

86) 민사소송법 제206조(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 선고 전에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하였다.

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다만, 원고는 보배를 데리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주차장을 거닐 때 보배의 목에 줄을 묶거나 보배의 동태를 잘 살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배에게 목줄을 채우지 아니하고 보배의 앞에서 걸어가면서 보배의 행동을 전혀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잘못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을 (50)%[87]로 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50)%로 제한합니다.

(3)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고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보배의 치료비 300만 원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배의 시중 가격인 10만 원을 넘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로 망가진 물건의 수리비가 물건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 물건을 망가뜨린 사람은 물건의 값만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배는 보통의 물건과는 다릅니다. 원고는 보배와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보배는 생명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보배의 값을 넘은 치료비를 지출하고도 보배를 치료하는 것은 우리 사회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배의 치료비 300만 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인 (50)%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끝으로 위자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물건의 훼손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

87) (　　) 부분은 지도관이 참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절히 결정하도록 한다(이하, 같다).
(　　) 안의 숫자는 이 사건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의 바탕이 된 실제 사건의 판결에서 판시한 책임비율이다.

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됩니다. 하지만 보배는 보통의 물건과는 다릅니다. 원고는 보배와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고 있고, 보배는 생명을 가진 동물입니다. 보배가 교통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경우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리라는 것은 피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의 금액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경위, 보배가 입은 부상의 정도, 보배가 완전히 치료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0)만 원[88]으로 정합니다.

(5)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150)만 원과 위자료 (20)만 원을 더한 (17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89]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원경위]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서고, 판사들은 법정 밖으로 나간다)

88) (　　) 안의 숫자는 이 사건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의 바탕이 된 실제 사건의 판결에서 판시한 위자료의 액수이다.

89)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이므로 소송비용과 가집행선고를 생략하였다.

II. 고등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2]

내 꿈은 가수

읽어두기

장고운(만 18세, 원고)은 가수가 되기를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원고는 2014년 2월 1일 김조련(피고)이 운영하는 꾀꼬리 노래학원에서 매달 10만 원을 학원비로 지급하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노래수업을 받아 왔습니다.

원고의 부모님은 2014년 4월 30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에게 노래학원을 그만두고 이미 지급한 학원비를 환불받아 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년 5월 1일 피고에게 그동안 부모님의 동의 없이 노래학원에 다녔던 것이므로 2014년 2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의 학원비로 지급한 30만 원(=10만 원×3개월)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학원에 등록할 당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해서 이를 믿고 노래를 가르쳤던 것이므로 학원비를 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학원비 3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 사건 민사재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사,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증인 등 재판 참여자들이 민사재판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잘 살펴서,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

연번	역할	인원
1	재판장 판사 김정의, 판사 이자유, 판사 박평등	3
2	원고 장고운 원고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박자애	2
3	피고 김조련	1
4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소, 이명석	2
5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유능, 최영민	2
6	증인 진우정(원고의 고등학교 선배, 현 대학생)	1
7	증인 나성실(피고의 직원)	1
8	법원사무관	1
9	법원실무관	1
10	법원경위	1
총 인원		**15명**

증거목록

원고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인 진우정 (원고의 고등학교 선배, 현 대학생)	원고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인 나성실 (피고의 직원)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에게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였음

관련법규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시나리오

(판사들은 법정 밖 법관 출입문에서 기다리고, 원고, 원고의 어머니, 피고, 소송대리인, 법원사무관, 법원실무관 및 법원경위는 법정 내의 정해진 좌석에 앉아 기다리며, 증인들은 방청석에 앉아 기다린다)

재판부의 입정 및 개정선언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이 입장하여 법대에 선 후 방청석을 향하여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재 판 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법원 제○민사부[90]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일의 시작과 관계인의 출석 확인

[재 판 장] 2014가합1000호 학원비반환 사건의 원고 장고운씨, 원고의 부모님,[91] 피고 김조련씨 출석하셨습니까?[92]

[원　　고] 원고 장고운 출석하였습니다.

[원고 법정대리인] 원고의 어머니 박자애도 출석하였습니다.

---

90) 보다 많은 학생들이 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물관할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지도관은 모의재판 실시 상황에 맞추어 법원명과 재판부명을 정할 수 있다.

91) 법정대리인이 정확한 표현이나, 교육용 시나리오인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

92) 민사소송법 제169조(기일의 시작)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피　　고] 피고 김조련도 출석하였습니다.

[재 판 장] 원고 소송대리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원고 소송대리인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재 판 장] 피고 소송대리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피고 소송대리인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당사자 등의 주장

[재 판 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떤 청구를 하고 있고, 왜 그런 청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학원비 3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원고는 2014년 2월 1일[93] 꾀꼬리 노래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매달 10만 원을 학원비로 지급하고 일주일에 2회 노래수업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4년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노래수업을 받고 학원비로 총 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14년 2월 1일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94] 학원 수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학원 수강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지급한 학원비 30만 원의 반환을 구합니다.

[재 판 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피고가 2014년 2월 1일 원고와 학원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원고에게 노래를 가르친 후 매달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원고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부모의 동의를 받고 학원 수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3) 일자는 모의재판 실시 일자에 맞추어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9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은 피고가 주장해야 하지만,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도 이를 주장하는 것으로 하였다.

만일 원고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학원 수강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를 속여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학원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 판 장]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원고 법정대리인] 재판장님, 제가 원고의 어머니로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재 판 장] 그렇게 하십시오.

[원고 법정대리인]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저와 제 남편이 이 사건 계약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저와 제 남편은 이 사건 계약에 동의한 사실이 절대로 없습니다.

피고는 학원비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 고] 재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게 노래를 가르쳐 준 피고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의 노래학원에 다녔던 것은 사실입니다.

[재 판 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시 반박하시겠습니까?

[피 고] 예. 재판장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저에게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했고, 저는 원고의 말을 믿고 노래를 가르쳤을 뿐입니다. 원고가 이제 와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학원비를 돌려달라고 하니 억울합니다.

[재 판 장] 양측은 더 주장하실 것이 있나요?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원고는 없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피고도 없습니다.

쟁점정리

[재 판 장] 현재까지 나온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원고가 부모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원고가 속임수로써 피고로 하여금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을 이렇게 정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원고는 동의합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피고도 동의합니다.

[재 판 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정리한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신청

[재 판 장] 이제 주장에 대한 정리를 마치고 증거신청을 받겠습니다.

원고는 증거신청하십시오.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원고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의 고등학교 선배인 진우정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은 좌우에 앉아 있는 배석판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묻고, 배석판사들은 작은 목소리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한다)

[재 판 장] 원고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합니다.

피고도 증거신청하십시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에게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의 직원인 나성실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은 좌우에 앉아 있는 배석판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묻고, 배석판사들은 작은 목소리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한다)

[재 판 장] 피고가 신청한 증인도 채택합니다.

양측은 더 신청할 증거가 있으신가요?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원고는 없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피고도 없습니다.

[재 판 장]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증거신청 절차를 마칩니다.

증거조사 시작

[재 판 장] 지금부터 증거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나요.[95)]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진우정 증인은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나성실 증인도 출석하였습니다.

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 판 장] 그럼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온다)

[재 판 장]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96)]

(법원실무관은 증인들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재판장에게 전달한다)

(재판장은 신분증과 증인들의 얼굴을 대조하면서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후 법원실무관을 통해 증인들에게 신분증을 돌려준다)

위증의 벌 경고 등

[재 판 장] 증인들 가운데 원고나 피고와 친인척 되는 분 있습니까?

[증 인 들] (입을 모아서) 없습니다.

[재 판 장] 증인들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만일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증 인 들] 예.

---

95)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이므로 증인이 재정한 것으로 하였다.
96) 민사소송규칙 제88조

증인선서

[재 판 장]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는 진우정 증인이 대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할 자세를 취한다. 증인 진우정은 왼손으로 선서서를 든다)

[증인 진우정] (당당한 목소리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97]

[재 판 장] 원고가 신청한 진우정 증인을 먼저 신문하고, 그다음에 나성실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진우정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나성실 증인은 잠시 법정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98]

(증인 진우정은 증인석에 앉고, 증인 나성실은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밖으로 나간다)

증인 진우정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원고는 신문하십시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예, 재판장님.
증인의 직업은 무엇이고, 원고와 어떤 사이인가요?

[증 인] 저는 진실 대학교 3학년 학생이고, 원고의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증인은 원고가 꾀꼬리 노래학원에서 노래를 배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증 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증인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증 인] 고등학교 후배인 원고가 2014년 1월 말쯤 저에게 겨울방학 동안 노래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노래학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

97)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인 점을 고려하여, 증인들이 선서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절차를 생략하였다.

98) 민사소송법 제328조(격리신문과 그 예외)
① 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 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원고에게 꾀꼬리 노래학원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뒤 올해 4월쯤 원고를 만난 일이 있는데, 그때 원고가 저에게 노래학원에 잘 다니고 있고, 좋은 노래학원을 추천해 줘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원고가 부모의 동의를 받고 노래학원을 다녔나요?

[증 인] 아니요. 원고는 부모님 몰래 노래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이상입니다.

[재 판 장] 피고 반대 신문하십시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예. 원고가 노래를 잘하는 편인가요?

[증 인] 원고는 노래를 참 잘하고, 중학교 3학년 때 노래대회에서 상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사실 원고는 가수가 되려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원고는 무슨 돈으로 학원비를 냈나요?

[증 인] 용돈과 알바비[99]를 모은 돈으로 학원비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증 인] 원고가 2014년 1월 말쯤 저에게 노래학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서, 부모님 몰래 자신이 모아 둔 돈으로 노래학원을 다녀야 하니 학원비가 너무 비싸지 않은 곳을 추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게 모아 둔 돈이 얼마 정도 되냐고 물었더니, 원고는 용돈과 알바비로 50만 원 정도 모아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증인은 원고의 용돈이 얼마인지 아는가요?

[증 인] 한 달에 10만 원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원고는 아르바이트를 자주 했나요?

[증 인] 원고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집 근처 빵집에서 알바를 했고, 그 이후 방학 때마다 그 빵집에서 알바를 하였습니다. 학기 중에도 빵집 주인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며칠씩 알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원고는 용돈과 알바비를 모은 돈을 사용할 때 부모의 허락을 받았나요?

[증 인] 아니요. 원고는 평소 용돈과 알바비를 자유롭게 사용했고, 부모님도 자신이 용돈과 알바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말

99)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음

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이상입니다.

[재 판 장] 원고는 더 물어볼 것이 있나요?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없습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진우정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법원경위는 나성실 증인을 모셔 오시지요.

(증인 진우정은 방청석에 가서 앉고, 증인 나성실은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안에 들어온 다음 증인석에 앉는다).

증인 나성실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피고 신문하십시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증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증 인] 저는 피고가 운영하는 꾀꼬리 노래학원에서 수강생 등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원고가 2014년 2월 1일 꾀꼬리 노래학원에 수강생으로 등록하러 온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원고가 노래를 배우러 왔다고 하여 제가 피고에게 안내하여 상담을 받게 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원고가 노래학원에 등록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던가요?

[증 인] 예. 원고는 피고와 저에게 부모의 동의를 받고 노래학원에 등록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원고가 그 말을 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증 인] 예. 제가 원고를 피고에게 안내했더니, 피고는 연습실에 원고를 데려가 노래를 몇 곡 부르게 하였습니다. 피고는 잠시 후 저에게 원고를 데려와 등록 절차를 밟도록 하면서, 제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노래학원에 다녀도 좋다는 허락은 받았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고

는 "그럼요. 부모님께서도 허락하셨어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증인은 원고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나요?

[증 인] 예. 원고는 피고의 물음에 망설임 없이 또렷하게 대답했고, 첫 달 학원비도 즉시 납부하였습니다. 게다가 원고는 모범생처럼 생겨서, 저는 원고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피고도 원고의 말을 믿었나요?

[증 인] 그럼요 피고도 원고의 말을 믿었습니다.

원고가 2014년 5월 1일 노래학원에서 피고에게 학원비를 돌려달라고 했을 때 피고가 황당해 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피고는 지금도 원고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이상입니다.

[재 판 장] 원고는 반대 신문하십시오.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예, 재판장님.

원고가 노래학원에 등록을 할 때 집 전화번호를 적었지요?

[증 인] 예.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증인이나 피고는 원고의 집에 전화를 걸어 원고 부모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나요?

[증 인] 아니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증인과 피고가 원고의 집에 전화를 걸어 원고 부모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 인] 저와 피고 모두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는 원고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피고가 원고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요?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증인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100)]

[재 판 장] 이의를 인정합니다.[101)] 원고 소송대리인은 의견을 구하는 질문을 삼가 주십

---

100) 민사소송규칙 제95조 제2항

101) 민사소송규칙 제95조 제2항

시오.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마지막 질문은 철회합니다. 이상입니다.

[재 판 장] 피고는 더 신문할 것이 있으신가요?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없습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나성실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나성실은 방청석에 가서 앉는다)

증거조사 종결

[재 판 장]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원고 소송대리인 김승소] 진우정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이 증명되었다는 의견입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박유능] 나성실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의 주장이 증명되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이 사건 학원계약은 원고의 부모가 범위를 정하여 원고의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을 추가합니다. 증인 진우정의 증언에 의하면, 그 주장도 증명되었습니다.[102)]

[재 판 장] 이것으로 증거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변론

[재 판 장] 지금부터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원고는 최종변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 재판장님.

미성년자인 원고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

102) 증거공통의 원칙(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358 판결)

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학원비 3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다)

[재 판 장] 피고도 최종변론하십시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 재판장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에게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피고는 지금도 원고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모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일 원고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원고는 속임수로써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부모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결국, 원고는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학원비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자리에 앉는다)

[재 판 장] 원고와 피고는 더 주장하거나 증명하실 것이 있나요?

[원고 소송대리인 이명석] 원고는 없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최영민] 피고도 없습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지방법원 2014가합1000 학원비반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합의를 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103)]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정 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판사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퇴장한다)

(모의재판 지도관은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에게 판결을 예측해 보도록 한 후 학생들 사이의 토론을 유도한다)

---

103) 휴정시간은 모의재판 지도관이 적절히 정할 수 있다.

재판부의 재입정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 입장하여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판결선고

[재 판 장] 지금부터 ○○지방법원 2014가합1000 학원비반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판결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104)]

(1) 미성년자인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학원비로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증인 진우정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인정됩니다.[105)]

(2)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부모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만 18세로서 성년에 거의 근접한 나이였고,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평소 용돈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을 자유롭게 사용했고, 부모님도 이

---

104) 민사소송법 제206조(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 선고 전에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하였다.

105) 민법 제17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지만, 여기서 '속임수'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한 것은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묵시적 처분허락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피고의 미성년자의 속임수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살피지 아니하였다.

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건 학원비는 월 10만 원으로 원고가 매월 받는 용돈의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원고의 용돈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에 대해서는 원고 부모의 묵시적인 처분허락이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은 위와 같이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에게 학원비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06]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원경위]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서고, 판사들은 법정 밖으로 나간다)

106)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이므로 소송비용 선고를 생략하였다.

III. 고등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1]

도둑맞은 점퍼

읽어두기

이하얀은 2014년 2월 27일 오후 4시 3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깨끗한 세탁소' 전면 유리창 옆에 앉아 다림질을 하고 있다가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세탁소 처마 앞쪽에 설치한 철봉으로 만든 옷걸이에 걸려 있던 점퍼 1벌을 손으로 낚아채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고 "야, 옷 가져간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하얀과 함께 세탁소 안에서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던 강질풍은 어머니인 이하얀의 외침을 듣자마자 곧바로 세탁소 밖으로 뛰쳐나가 200m가량을 범인을 쫓아가다가 '대박마트' 근처에서 범인을 놓쳤습니다.

강질풍은 범인을 놓친 때로부터 약 10~15분이 지났을 무렵 흰색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는 한건강(피고인)의 얼굴과 티셔츠를 보고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판단하고 "도둑놈, 거기 서라"라고 소리 지르며 승용차를 뒤쫓았으나 잡지 못하고 그 차량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정덕화에게 차량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고인을 절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사건 형사재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 형사재판 참여자들이 형사재판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정해집니다. 학생들은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를 잘 살펴서,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

연번	역할	인원
1	재판장 판사 김정의, 판사 이자유, 판사 박평등	3
2	검사 문공익, 이예리	2
3	피고인 한건강[107]	1
4	변호인 변호사 김승소, 박유능	2
5	증인 이하얀(피해자)	1
6	증인 강질풍(목격자)	1
7	증인 정덕화(경찰관)	1
8	증인 나의리(피고인의 친구)	1
9	법원사무관	1
10	법원실무관	1
11	법원경위	1
총 인원		**15명**

증거목록

검사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범행현장 약도	이 사건 범행현장 주변의 도로와 주요 건물들의 위치
증인 이하얀(피해자)	피고인이 이 사건 점퍼를 절취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
증인 강질풍(목격자)	증인은 이 사건 직후 도망가는 범인을 추적하였고, 그 범인이 피고인임

피고인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인 정덕화(경찰관)	이하얀과 강질풍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증인 나의리(피고인의 친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 무렵에 증인과 함께 있었음

107) 피고인의 역할은 목이 길고 마른 체형의 학생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법규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나리오

(판사들은 법정 밖 법관 출입문에서 기다리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원사무관, 법원실무관 및 법원경위는 법정 내의 정해진 좌석에 앉아 기다리며, 증인들은 방청석에 앉아 기다린다)

1. 모두절차

재판부의 입정 및 개정선언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이 입장하여 법대에 선 후 방청석을 향하여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재 판 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법원 제○형사부[108]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일의 시작과 관계인의 출석 확인

[재 판 장] 2014고합1000호 절도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한건강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108) 보다 많은 학생들이 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물관할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지도관은 모의재판 실시 상황에 맞추어 법원명과 재판부명을 정할 수 있다.

[피 고 인] (자리에서 일어서서)[109] 예.

[재 판 장]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검　　사] 문공익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이예리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변 호 인] 김승소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박유능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등[110]

[재 판 장]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111] 잘 아시겠습니까?

[피 고 인] 예.

[재 판 장] 피고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 고 인] 한건강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나요?

[피 고 인] 1988년 2월 1일입니다.

[재 판 장]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피 고 인] 서울 동작구 사당로[112]입니다.

[재 판 장] 등록기준지는 어디인가요?

[피 고 인] 대전 서구 삼천로입니다.

[재 판 장] 직업은 무엇인가요?

---

109) 소송관계인의 착석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실무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본 모의재판 시나리오에서는 ①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주소변동보고의무 고지, ② 검사의 모두진술, ③ 검사와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종의견 진술의 경우만 일어선 상태에서 하도록 하였다[법원행정처(주 20), 95. 참조].

110) 진술거부권의 고지, 인정신문 및 주소변동보고의무 고지

111) 법원행정처(주 22), 16.

112)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이므로 건물번호는 표시하지 아니하였다(이하 같다).

[피 고 인] 대학원생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은 재판기일에는 항상 출석하여야 하고 재판 도중에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13]

[피 고 인] 예.

[재 판 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피고인은 자리에 앉는다)

검사의 모두진술

[재 판 장] 검사는 공소의 요지[114]를 진술하십시오.

[검사 문공익]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2014년 2월 27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화이트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115] 이하얀이 운영하는 '깨끗한 세탁소' 앞에서 세탁소 처마 앞쪽에 설치한 철봉으로 만든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을 손으로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리에 앉는다)

피고인의 모두진술

[재 판 장]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았습니까?

---

11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항 ; 법원행정처(주 22), 16.

114) 형사소송법 제285조 단서

115)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재물의 점유자가 절도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나 절도죄는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그 재물의 소유자를 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물의 소유자도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피 고 인] 예.

[재 판 장] 검사가 방금 말한 공소사실을 잘 들으셨지요?

[피 고 인] 예.

[재 판 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십니까?[116]

[피 고 인] (단호한 목소리로)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점퍼를 훔친 사실이 없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진술

[재 판 장] 변호인도 공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117]

[변호인 김승소] 예. 피고인은 피해자 이하얀과 목격자 강질풍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지목되어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점퍼를 훔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에 나의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쟁점정리 및 증거신청

[재 판 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118]

[검사 문공익] 예.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검사는 사법경찰관 정덕화가 작성한 범행현장 약도[119]를 증거서류로 신청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이하얀과 이 사건 범행 직후 범인을 추적하였던 강질풍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116) 형사소송법 제286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제1항
117) 형사소송법 제286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의2 제2항
118) 형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119) 이 책 부록 9. 범행현장 약도를 활용한다.

[재 판 장] 피고인 측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120]

[변호인 김승소] 범행현장 약도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121] 증인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재판장은 좌우에 앉아 있는 배석판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검사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묻고, 배석판사들은 작은 목소리로 검사의 증거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한다)

[재 판 장]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을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도 주장에 관한 입증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122]

[변호인 김승소] 예. 이하얀과 강질풍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기 위하여 경찰관 정덕화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에 나의리와 함께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의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 판 장] 검사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123]

[검사 문공익]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재판장은 좌우에 앉아 있는 배석판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변호인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묻고, 배석판사들은 작은 목소리로 변호인의 증거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한다)

[재 판 장] 그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하겠습니다.
양측은 더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 문공익] 검사 측은 없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재 판 장] 알겠습니다.

---

120)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121) 실무에서는 변호인이 미리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122) 형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12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2. 증거조사

범행현장 약도에 대한 조사

[재 판 장] 지금부터 증거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범행현장 약도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검사는 범행현장 약도를 제시하십시오.[124]

[검사 문공익] (증거서류인 범행현장 약도를 실물화상기에 투영하여 제시하고)[125]

지금 보시는 것은 사법경찰관인 정덕화가 작성한 범행현장 약도입니다. 이 사건 범행현장 주변 도로와 깨끗한 세탁소, 열심학원, 참맛치킨, 대박마트, 형제분식, 다나병원 등 주요 건물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 판 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피 고 인] 이 사건 범행현장 주변의 도로와 주요 건물들의 위치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범행현장 약도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 판 장] 그럼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나요?[126]

[검사 문공익] 이하얀과 강질풍 증인은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정덕화와 나의리 증인도 출석하였습니다.

---

124) 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2조 제5항).

125) 실물화상기가 없는 경우, 지도관은 모의재판 실시 전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에게 동 증거서류를 배부하고, 모의재판 실시 중에는 검사 역할을 맡은 학생으로 하여금 재판부와 피고인 및 변호인 등에게 증거서류를 제시하도록 지도한다(이하 같다).

126)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이므로 증인이 재정한 것으로 하였다.

[재 판 장]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서 나란히 선다)

[재 판 장]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법원실무관은 증인들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재판장에게 전달한다)

(재판장은 신분증과 증인들의 얼굴을 대조하면서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후 법원실무관을 통해 증인들에게 신분증을 돌려준다)[127]

위증의 벌 경고 등

[재 판 장] 증인들 중에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증 인 들] (입을 모아서) 없습니다.

[재 판 장]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128]

증인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만약 선서를 한 다음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129]

잘 아시겠습니까?

[증 인 들] 예.

증인선서

[재 판 장]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130]는 이하얀

127) 형사소송규칙 제71조

128)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 ;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문구는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법정진행 핸드북에 수록된 것이다[법원행정처(주 22), 19.].

129) 형사소송법 제156 내지 158조

130) 법정에 비치된 것을 사용한다.

증인이 대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할 자세를 취한다. 증인 이하얀은 왼손으로 선서서를 든다)

[증인 이하얀] (당당한 목소리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131]

[재 판 장] 먼저 검사가 신청한 이하얀 증인과 강질풍 증인을 차례로 신문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신청한 정덕화 증인과 나의리 증인을 차례로 신문하겠습니다. 이하얀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강질풍, 정덕화, 나의리 증인은 법원경위의 안내에 따라 잠시 법정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132]

(증인 이하얀은 증인석에 앉고, 나머지 증인들은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밖으로 나간다)

증인 이하얀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검사 이예리] 예, 재판장님.

증인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증 인] 저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화이트 빌딩 1층에서 '깨끗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 이예리] 증인은 2014년 2월 27일 오후 4시 30분경 세탁소 앞에 걸어 둔 점퍼를 도둑맞은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검사 이예리]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증 인] 제가 그날 오후 4시 30분경 세탁소 안 전면 유리창 옆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는데, 유리창 밖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서 곧바로 밖을 쳐다보니, 검은

131)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인 점을 고려하여, 증인들이 형사소송법 제158조 제3항에 따라 선서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절차를 생략하였다.

132) 형사소송법 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가게 앞에 차량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워 둔 간판을 넘어뜨리고 세탁소 처마 앞쪽에 설치한 철봉으로 만든 옷걸이에 걸려 있던 점퍼 1벌을 손으로 낚아채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옷 가져간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마침 세탁소 안에 있던 강질풍이 범인을 잡으러 뛰어 나갔습니다.

[검사 이예리] 증인이 도둑맞은 점퍼는 어떤 것인가요?

[증　　인] 손님이 세탁을 맡긴 남성용 회색 패딩 점퍼입니다. 가격은 6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이예리] 증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목격한 범인이 이 법정 안에 있습니까?

[증　　인] 예.

[검사 이예리] 그 범인이 누구지요?

[증　　인] (손가락으로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검사 이예리]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변호사 박유능] 예, 재판장님.

증인은 범인의 모습을 확실히 보았나요?

[증　　인] 예. '쿵'하는 소리가 나서 곧바로 유리창 밖을 쳐다보니, 간판이 넘어져 있었고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점퍼 1벌을 손으로 낚아채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범인의 얼굴을 정면에서 봤나요?

[증　　인] 범인의 옆얼굴을 봤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순간적으로 범인의 옆얼굴만 보고 피고인이 범인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증　　인] 피고인이 제가 몇 시간 전에 봤던 사람이어서 바로 알아봤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피고인을 본 사실이 있다는 것인가요?

[증　　인] 예. 제가 그날 오후 2시경 세탁소 앞에 세워둔 세탁물 수거 차량에서 세탁물을 꺼내오느라 세탁소와 차량 사이를 수차례 왕복하면서 화이트빌딩 현관 앞에 낯선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봤는데, 추운 날씨에 검은

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그 남자를 쳐다보니 내 눈을 피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했는데, 그 남자가 잠시 후 열심학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피고인이었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이 피고인을 처음 봤을 당시 증인과 피고인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되었나요?

[증　　인] 아주 가까이서 봤습니다. 2m도 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참 이상하네요. 피고인은 그날 증인의 세탁소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증　　인]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날 오후 2시에 본 사람은 피고인이 맞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의 모습을 설명했지요?

[증　　인] 예. 제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10분이 채 못돼서 경찰관이 세탁소로 와서 범인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범인은 목이 길고 마른 체형이었으며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는 젊은 남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그날 피고인의 사진을 본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저와 강질풍이 경찰관의 전화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6시 30분경 관악경찰서 봉천지구대에 갔더니 경찰관이 저희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1장을 보여주면서 사진 속의 사람이 범인이 맞는지 잘 보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사진을 보고 뭐라고 대답했나요?

[증　　인]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인 것 같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경찰관이 증인과 강질풍에게 피고인의 사진 이외에 다른 사진도 보여주었나요?

[증　　인] 아니요. 피고인의 사진만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그날 관악경찰서 봉천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났지요?

[증　　인] 예. 그날 오후 7시 30분경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려와 범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있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그때 뭐라고 대답했나요?

[증　　인] 피고인이 범인임이 틀림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그러자 피고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증　　인] 피고인은 제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하면서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피고인이 이 사건 점퍼를 훔쳐간 범인임이 틀림없나요?

[증　　인] 제 기억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인입니다.

[변호사 박유능] 이상입니다.

[재 판 장] 검사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신가요?

[검사 이예리] 없습니다.

[재 판 장] 증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증　　인] 예. 피고인이 대학원생이라고 들었습니다.
도둑맞은 점퍼는 찾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관대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이하얀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강질풍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이하얀은 방청석에 가서 앉고, 증인 강질풍은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안에 들어온 다음 증인석에 앉는다).

증인 강질풍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검사 이예리] 예, 재판장님.
증인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증　　인]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머니 이하얀이 운영하는 세탁소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검사 이예리] 이하얀이 2014년 2월 27일 오후 4시 30분경 세탁소 앞에 걸어 둔 점퍼를 도둑맞은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검사 이예리]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증 인] 제가 그날 오후 4시 30분경 세탁소 안에서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쿵'하는 소리가 났고 어머니가 "야, 옷 가져간다"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범인을 잡으러 세탁소 밖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검사 이예리] 증인이 범인을 추적했던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증 인] 제가 세탁소 밖으로 뛰어 나갔을 때 전방 6~7m가량 앞에서 청바지와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가 왼쪽 팔뚝에 점퍼를 감싸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야, 그 자리에 서"라고 소리를 지르며 200m쯤 범인을 쫓아가다가 대박마트 부근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쳤습니다.

[검사 이예리] (범행현장 약도를 실물화상기에 투영한 후)[133]

이 약도에 범행현장 주변의 도로와 주요 건물들의 위치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증 인] 예.

[검사 이예리] 이 약도를 보면서 범인이 도주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증 인] (약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범인은 열심학원 쪽으로 7~80m쯤 뛰어가다가 좌회전을 했고, 다시 100m쯤 뛰어가다가 참맛치킨 앞에서 좌회전을 해서 대박마트 쪽으로 뛰어가다가 오른쪽 골목길로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검사 이예리] 범인이 사라진 위치가 약도 중 원형의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인가요?

[증 인] 예. 대략 그 정도 위치에서 사라졌습니다.

[검사 이예리] 증인은 그 후 어떻게 했나요?

[증 인] 예. 제가 범인을 놓친 후 대박마트 주변 골목길을 뒤지면서 범인을 찾아보았으나 범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검사 이예리] 증인은 그 후 범인을 다시 발견했나요?

[증 인] 예. 제가 범인을 놓친 후 10분에서 15분이 지났을 무렵 대박마트 앞에 서 있는데 형제분식 쪽에서 제가 서 있던 곳을 향하여 흰색 승용차가 한 대 왔습니다. 승용차가 제 앞을 지나는 순간 운전자와 얼굴이 마주쳤는데, 운전

133) 증인의 진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면, 사진, 모형, 장치 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 제1항). 실물화상기가 없는 경우, 신문자는 증인에게 범행현장 약도를 보여준 다음 신문을 진행한다(이하 같다).

자의 얼굴과 입고 있던 옷을 보고 바로 범인임을 알았습니다.

[검사 이예리] 증인은 그 후 어떻게 했나요?

[증　　인] 제가 "도둑놈, 거기 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승용차를 뒤쫓아 가자 범인은 갑자기 속도를 올려 직진하더니 다나병원 앞 왕복 2차선 도로의 중앙선을 가로질러 불법 좌회전을 한 후 사라졌습니다. 저는 승용차를 30m 정도 뒤쫓다가 포기하고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스마트폰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검사 이예리] 증인이 뒤쫓던 범인이 이 법정 안에 있습니까?

[증　　인] 예.

[검사 이예리] 그 범인이 누구지요?

[증　　인] (손가락으로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검사 이예리]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변호사 박유능] 예, 재판장님.

증인은 이 사건 범행 순간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지요?

[증　　인] 예.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직후 범인을 쫓으면서 도둑맞은 점퍼를 왼손에 감고 뛰어가는 범인을 봤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범인을 쫓아갈 때 범인의 얼굴을 확실히 보았나요?

[증　　인] 예. 처음에는 범인의 뒷모습만 보았고, 범인이 골목길을 좌회전하여 도망갈 때 왼쪽 옆얼굴을 보았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그렇다면 증인은 범인을 뒤쫓으면서 순간적으로 범인의 옆얼굴만 보았을 뿐인데,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범인임을 바로 알아보았다는 것인가요?

[증　　인] 제가 본 범인의 옆얼굴과 승용차 운전자의 옆얼굴이 같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범인은 목이 길고 마른 체형이었고, 추운 날씨에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승용차 운전자도 목이 길고 마른 체형이었고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뭐라고 했나요?

[증　　인] 예. 제가 세탁소로 돌아가 보니 경찰관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범인이 목이 길고 마른 체형의 젊은 남자였으며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말하고, 메모해 둔 승용차의 차량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그날 피고인의 사진을 본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제가 어머니와 함께 그날 오후 6시 30분경 관악경찰서 봉천지구대에 갔더니 경찰관이 저희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1장을 보여주면서 사진 속의 사람이 범인이 맞는지 잘 보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사진을 보고 뭐라고 대답했나요?

[증　　인]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경찰관이 보여준 사진은 피고인의 얼굴을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었지요?

[증　　인] 예.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순간적으로 범인의 옆얼굴만 보았을 뿐인데, 정면 얼굴 사진만 보고도 사진 속의 인물이 범인임을 바로 알아보았다는 것인가요?

[증　　인] 예. 제가 보기에는 범인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경찰관이 증인과 강질풍에게 피고인의 사진 이외에 다른 사진도 보여주었나요?

[증　　인] 아니요. 피고인의 사진만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그날 관악경찰서 봉천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났지요?

[증　　인] 예. 그날 오후 7시 30분경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려와 범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증　　인]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그러자 피고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증　　인] 피고인은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에게 "생사람 잡지 말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피고인이 범인임이 틀림없나요?

[증　　인] 제 기억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인입니다.

[변호사 박유능] 이상입니다.

[재 판 장] 검사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신가요?

[검사 이예리]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증인이 대박마트 앞에서 승용차를 뒤쫓아 가자 범인이 갑자기 속도를 올려 진행하였다고 했는데, 그때 승용차의 최고 속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증　　인] 제가 전력질주를 해도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속도였으므로 시속 30에서 40km 정도는 됐을 것입니다.

[검사 이예리] 대박마트 앞에서 다나병원 앞 왕복 2차선 도로에 이르는 길은 평소 차량이 매우 서행하는 길이지요?

[증　　인] 예. 폭이 약 6m 정도밖에 안 되는 차선 표시 없는 도로이고 사람도 많이 걸어 다니는 곳이어서 평소 차량들이 매우 천천히 다니는 곳입니다.

[검사 이예리] 그렇다면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은 증인이 "도둑놈, 거기 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뒤따라오자 증인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서 도주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요?

[변호인 박유능]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134)]

[재 판 장] 변호인의 이의를 인정합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의견을 묻는 질문을 삼가 주십시오.

[검사 이예리] 예. 마지막 질문은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변호인 박유능] 없습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강질풍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정덕화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강질풍은 방청석에 가서 앉고, 증인 정덕화는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안에 들어온 다음 증인석에 앉는다).

증인 정덕화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변호인은 신문하십시오.

[변호인 김승소] 예, 재판장님.

---

134)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사소송규칙 제74조 제2항 제3호).

증인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증　　인] 서울 관악경찰서 봉천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은 2014년 2월 27일 오후 4시 30분경 신고를 받고 봉천동에 있는 '깨끗한 세탁소'에 출동한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같은 날 오후 4시 35분에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은 출동 후 어떤 조치를 취하였나요?

[증　　인] 피해자 이하얀과 그 아들인 강질풍을 상대로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이하얀과 강질풍이 범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증　　인] 두 사람 모두 범인이 목이 길고 마른 체형의 젊은 남자였으며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고, 아들인 강질풍은 자신이 목격했다는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은 그 날 이하얀과 강질풍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준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차량번호로 차량소유자를 조회한 후 차량소유자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두었다가 그날 오후 6시 30분경 관악경찰서 봉천지구대에서 이하얀과 강질풍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이하얀과 강질풍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증　　인] 두 사람 모두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이 보여준 사진은 피고인의 정면 얼굴사진이었지요?

[증　　인] 예.

[변호인 김승소] 두 사람이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임을 바로 알아보던가요?

[증　　인] 두 사람이 조금 시간을 들여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은 그날 오후 7시 30분경 두 사람과 피고인을 대면시킨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제가 피고인에게 봉천지구대로 출석하라고 요청했더니, 피고인이 그날 오후 7시 30분경 봉천지구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하얀과 강질풍에

게 피고인을 대면시켰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이하얀과 강질풍이 피고인을 만나더니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증　　인] 이하얀과 강질풍은 곧바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피고인은 뭐라고 하던가요?

[증　　인] 피고인은 이하얀과 강질풍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착각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피고인이 지구대에 왔을 당시 어떤 옷을 입고 있던가요?

[증　　인] 회색 면바지에 자주색 후드 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인 점퍼는 발견되었나요?

[증　　인] 피고인의 집과 범행현장 주변을 수색해 보았지만, 피해품인 점퍼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이상입니다.

[재 판 장] 검사는 반대 신문하십시오.

[검사 문공익] 증인은 통상 목격자에게 범인의 사진을 제시하거나 범인을 대면시킬 때 어떻게 하나요?

[증　　인] 통상의 경우에는, 먼저 목격자를 상대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한 후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제시하거나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 문공익] 증인이 이하얀과 강질풍에게 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하고, 피고인을 단독으로 대면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　　인]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때로부터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아서 목격자인 이하얀과 강질풍이 범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이하얀과 강질풍을 피고인과 신속하게 대면하게 하는 것이 범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사 문공익]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변호인 김승소] 없습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정덕화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

습니다. 다음으로 나의리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정덕화는 방청석에 가서 앉고, 증인 나의리는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안에 들어온 다음 증인석에 앉는다).

증인 나의리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변호인은 신문하십시오.

[변호인 김승소] 예, 재판장님.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사이인가요?

[증 인] 저는 피고인과 중 · 고등학교 동창이고, 현재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도 대학원생인가요?

[증 인] 아니요. 저는 작년에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은 2014년 2월 27일 오후 3시에서 4시 40분까지 증인의 집에서 영화를 본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피고인이 저희 집에 놀러 왔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친구로부터 빌려 온 DVD를 함께 봤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피고인과 증인이 함께 본 DVD는 어떤 것인가요?

[증 인] '타이거 병장 구하기'라는 제목의 전쟁영화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피고인은 언제 증인의 집을 나갔나요?

[증 인] 피고인이 영화를 보다가 별로 재미가 없다고 하면서 오후 4시 40분경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이상입니다.

[재 판 장] 검사는 반대 신문하십시오.

[검사 문공익] (범행현장 약도를 실물화상기에 투영한 후)
약도를 보시고 증인의 집이 있는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증 인] (약도를 가리키며) 형제분식 건물 2층이 저희 집입니다.

[검사 문공익] 증인의 집과 대박마트는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증　　인]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리상으로는 한 3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검사 문공익] 피고인이 증인의 집에 자주 놀러 왔나요?

[증　　인] 예. 그때는 방학 중이라 피고인이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검사 문공익] 증인과 피고인이 증인의 집에서 DVD를 볼 때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증　　인] 아니요.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여 저희 둘만 있었습니다.

[검사 문공익] 피고인이 증인의 집에 승용차를 타고 왔나요?

[증　　인] 피고인이 대학원에 입학한 후 흰색 중고 승용차를 사서 타고 다니기는 했는데, 그날 승용차를 타고 왔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사 문공익] 피고인이 그날 어떤 옷을 입고 왔나요?

[증　　인] 글쎄요. 오래된 일이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사 문공익] 증인은 피고인과 그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증　　인] 글쎄요. 저와 피고인이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그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사 문공익] 증인은 2014년 2월 27일 증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났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피고인이 그날 증인의 집을 떠난 시각이 오후 4시 40분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나요?

[증　　인] (잠시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 피고인이 3월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자신이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리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더듬어 보니 2월 27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DVD를 봤던 사실이 기억이 났고, 피고인이 원하면 피고인이 그날 오후에 저희 집에 있었다고 말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무렵 매일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오후 3시경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이 제가 돌아온 직후 도착하였으니, 피고인이 저희 집에 온 시각은 오후 3시 무렵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저희 집에서 떠난 시각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날 영화를 보는 데 빠져 있어서 피고인이 언제 제 집에서 나갔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이 그날 제 집에서 오후 4시 40분경 나갔다고 하기에, 저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오후 4시 40분경 제 집을 나갔다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검사 문공익]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따라 답변해 주십시오. 피고인이 그날 증인의 집을 나간 시각이 언제인가요?

[증　　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135)]

[검사 문공익]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변호인 김승소] 피고인이 그날 증인의 집을 나간 시각이 오후 4시 40분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증　　인] 물론입니다. 피고인이 3월에 저를 찾아왔을 때 자신이 그 날 제 집에서 오후 4시 40분경 나갔다고 분명히 말했고, 저는 지금도 피고인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이상입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나의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증인 나의리는 방청석에 가서 앉는다)

증거조사 종결

[재 판 장]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검사 이예리] 증인 이하얀, 강질풍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은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변호인 박유능] 증인 이하얀, 강질풍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재 판 장] 양측은 더 신청하실 증거가 있나요?

[검사 이예리] 검사 측은 없습니다.

---

135)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취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로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도1231 판결).

[변호인 박유능]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재 판 장] 이것으로 증거조사를 마치겠습니다.

3. 피고인신문 및 최종변론

피고인신문

[검사 이예리] 재판장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묻기 위하여 피고인신문을 신청합니다.

[재 판 장]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는다)

[재 판 장]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검사 이예리]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2014년 2월 27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화이트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이하얀 운영의 '깨끗한 세탁소' 처마 앞쪽에 설치한 철봉으로 만든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을 절취한 사실이 있나요?

[피 고 인]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저는 그날 그 시각에 세탁소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은 그날 그 시각에 어디 있었나요?

[피 고 인] 저는 나의리의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은 나의리의 집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나요?

[피 고 인] 저는 그날 오후 3시경 나의리의 집에 가서 영화를 보다가 오후 4시 40분경 나의리의 집을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당역 쪽에 있는 저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사 이예리] 차량번호 00노0000 승용차가 피고인이 그날 운전했던 승용차가 맞나요

[피 고 인] 예.

[검사 이예리] (범행현장 약도를 실물화상기에 투영한 후)

피고인은 그날 나의리의 집에서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고 형제분식 방면에

서 대박마트를 지나 다나병원 앞 2차선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해서 진행했나요?

[피 고 인] 예.

[검사 이예리] 대박마트 앞에서 "도둑놈, 서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승용차를 뒤쫓아 오던 강질풍을 보고 속도를 올려 진행한 사실이 있나요?

[피 고 인] 아니요. 저는 승용차 창문을 닫고 음악을 듣고 있어서 강질풍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지 못했고, 강질풍이 승용차를 뒤쫓아 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속도를 올려 진행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은 그날 어떤 옷을 입었나요?

[피 고 인] 하의는 청바지를 입었고, 상의는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점퍼를 입었습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은 겨울에도 반소매 티셔츠를 입나요?

[피 고 인] 제가 워낙 건강하고 몸에 열이 많이 나는 편이어서 승용차 안이나 실내에서는 반소매 티셔츠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은 그날 오후 2시경 '깨끗한 세탁소' 건물 현관 앞에 앉아 있었나요?

[피 고 인] 아니요. 저는 그날 '깨끗한 세탁소' 근처에 간 사실조차 없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2시경 집에 있었습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이 그날 오후 2시경 집에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

[피 고 인] 저희 가족들이 그날 오전에 모두 외출하였기 때문에 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해 봤지만, 제가 그날 오후 2시경 집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나요?

[피 고 인] 저는 피해자와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사 이예리]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 신문하십시오.

[변호사 박유능]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지요?

[피 고 인] 예.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피고인은 지금 너무나 억울한 심정이지요?

[피 고 인] 예. 너무나 억울해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변호사 박유능] 이상입니다.

[재 판 장] 이것으로 피고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검사의 최종의견 진술

[재 판 장] 검사는 최종의견 진술하십시오.[136)]

[검사 문공익]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이하얀과 이 사건 범행 직후 범인을 추적한 강질풍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분명히 진술하였습니다.

이하얀과 강질풍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인은 목이 길고 마른 체형이었고, 추운 날씨에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보시다시피 피고인은 목이 길고 마른 체형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얀과 강질풍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하얀과 강질풍의 증언은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하얀과 강질풍의 증언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유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다)

---

136) 형사소송법 제302조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재 판 장] 변호인은 최종의견 진술하십시오.[137]

[변호사 김승소] (자리에서 일어서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이하얀과 강질풍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습니다.

이하얀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범인의 옆얼굴만 보았을 뿐이고, 강질풍 또한 이 사건 범행 후 범인을 쫓아가면서 범인의 뒷모습과 옆얼굴을 보았을 뿐입니다. 특히, 이하얀이 이 사건 당일 오후 2시경 세탁소 건물 현관 앞에서 보았다는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남자는 피고인이 아닙니다. 강질풍 또한 범인이 사라진 장소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던 피고인이 우연히 범인처럼 목이 길고 마른 체형에 검은색 반소매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단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목이 길고 마른 체형인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겨울에도 난방이 되는 차 안에서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찰관 정덕화는 사진 제시와 용의자 대면에 의한 범인 식별에 요구되는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이하얀과 강질풍에게 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하고 피고인을 단독으로 대면시켰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하얀과 강질풍은 이 사건의 진범과 피고인을 착각하여 잘못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증언은 믿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도 없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다)

137) 형사소송법 제303조

피고인의 최종의견 진술

[재 판 장]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하십시오.[138]

[피 고 인] (자리에서 일어서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하늘에 맹세코 이 사건 점퍼를 훔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수를 목표로 대학원에서 성실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일은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도둑으로 몰려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심정입니다. 재판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다)

[재 판 장] 이상으로 ○○지방법원 2014고합1000 피고인 한건강에 대한 절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합의를 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139]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정 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판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한다)

(모의재판 지도관은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 중 유죄판결을 예측하는 학생들과 무죄판결을 예측하는 학생들 사이의 토론을 유도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별도로 마련된 양식에 따라 '모의재판 참여 학생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유 · 무죄에 관한 참여 학생 다수의 의견에 따라 판결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판결선고

재판부의 재입정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8) 형사소송법 제303조

139) 휴정시간은 모의재판 지도관이 적절히 정할 수 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 입장하여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판결선고

[재 판 장] 지금부터 ○○지방법원 2014고합1000 피고인 한건강에 대한 절도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 판 장] 먼저 판결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2) 그러나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하얀은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하였고, 강질풍은 곧바

로 범인을 뒤쫓다가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다시 그 골목길 부근에서 범인과 동일인으로 인식되는 운전자를 발견하였으나 다시 놓친 다음 그 운전자가 운행하던 승용차의 차량번호 등을 신고하였습니다. 경찰관 정덕화는 강질풍으로부터 들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확보한 후 이 사건 범행발생 시각으로부터 2시간 내에 이하얀과 강질풍에게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로부터 불과 1시간 내에 이하얀, 강질풍을 피고인과 대면시켰습니다.

이러한 정덕화의 행위는 직접적인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도 정확한 범인식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사행위라 할 것이어서 정상적인 수사과정의 하나로 보일 뿐, 그것이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부적절한 용의자 사진 제시라거나 용의자와의 일대일 대면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4) 더욱이, 강질풍은 범인을 추적하다가 놓친 때로부터 10분에서 15분이 지났을 무렵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의 얼굴과 옷을 보고 피고인이 범인임을 알아본 후 그 차량번호를 기억해 두었다는 것이므로, 강질풍은 경찰관 정덕화가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기 이전인 바로 이 단계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식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5) 또한 이하얀과 강질풍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인이 목이 긴 마른 체형의 젊은 남자로서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목이 긴 마른 체형의 젊은 남자이고, 이 사건 당일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6) 이 사건 범행 당일은 겨울날이어서 위와 같이 반소매 티셔츠를 입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강질풍이 범인을 놓친 때로부터 약 10~15분 후 범인을 놓친 장소 인근에서 피고인이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흰색 승용차를 운전하고 왔습니다.

(7)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하얀과 강질풍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각에 친구인 나의리의 집에 있었다

고 주장하지만, 증인 나의리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인 나의리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9)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10)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대학원생이고, 피해물품의 가액도 6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합니다.

(11)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140]

피고인은 오늘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원경위]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서고, 판사들은 법정 밖으로 나간다)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 판 장] 먼저 판결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

140)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이므로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은 생략하였다.

습니다.

(2)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과 이에 영향을 받은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경찰관 정덕화는 목격자 강질풍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타고 간 흰색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였고, 스마트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하얀과 강질풍으로 하여금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하였으며, 이에 이하얀과 강질풍은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인식별 절차는 목격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하얀과 강질풍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이하얀과 강질풍이 목격한 범인의 옷과 일치하는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은 겨울날이어서 위와 같이 반소매 티셔츠를 입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없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피해품인 점퍼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들도 엿보입니다.

(6) 그러므로 증인 이하얀, 강질풍의 증언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7)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8) 결국,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141]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원경위]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서고, 판사들은 법정 밖으로 나간다)

141)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의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도둑맞은 점퍼

읽어두기

이하얀은 2014년 2월 27일 오후 4시 3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깨끗한 세탁소' 전면 유리창 옆에 앉아 다림질을 하고 있다가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세탁소 처마 앞쪽에 설치한 철봉으로 만든 옷걸이에 걸려 있던 점퍼 1벌을 손으로 낚아채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고 "야, 옷 가져간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하얀과 함께 세탁소 안에서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던 강질풍은 어머니인 이하얀의 외침을 듣자마자 곧바로 세탁소 밖으로 뛰쳐나가 200m가량을 범인을 쫓아가다가 '대박마트' 근처에서 범인을 놓쳤습니다.

강질풍은 범인을 놓친 때로부터 약 10~15분이 지났을 무렵 흰색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는 한건강(피고인)의 얼굴과 티셔츠를 보고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판단하고 "도둑놈, 거기 서라"라고 소리 지르며 승용차를 뒤쫓았으나 잡지 못하고 그 차량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정덕화에게 차량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고인을 절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 증인, 배심원 등 재판 참여자들이 국민참여재판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잘 살펴서,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

연번	역할	인원
1	재판장 판사 김정의, 판사 이자유, 판사 박평등	3
2	검사 문공익, 이예리	2
3	피고인 한건강	1
4	변호인 변호사 김승소, 박유능	2
5	증인 이하얀(피해자)	1
6	증인 강질풍(목격자)	1
7	증인 정덕화(경찰관)	1
8	증인 나의리(피고인의 친구)	1
9	법원사무관	1
10	법원실무관	1
11	법원경위	1
12	배심원	9
	총 인원	**24명**

증거목록

검사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범행현장 약도	이 사건 범행현장 주변의 도로와 주요 건물들의 위치
증인 이하얀(피해자)	피고인이 이 사건 점퍼를 절취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
증인 강질풍(목격자)	증인은 이 사건 직후 도망가는 범인을 추적하였고, 그 범인이 피고인임

피고인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인 정덕화(경찰관)	이하얀과 강질풍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증인 나의리(피고인의 친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에 증인과 함께 있었음

관련법규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나리오

(판사들은 법정 밖 법관 출입문에서 기다리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배심원, 법원사무관, 법원실무관 및 법원경위는 법정 내의 정해진 좌석에 앉아 기다리며, 증인들은 방청석에 앉아 기다린다)

1. 모두절차

재판부의 입정 및 개정선언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이 입장하여 법대에 선 후 방청석을 향하여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재 판 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법원 제○형사부[142]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일의 시작과 관계인의 출석 확인

[재 판 장] 2014고합1000호 절도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한건강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142) 본 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지도관은 모의재판 실시 상황에 맞추어 법원명과 재판부명을 정할 수 있다.

[피 고 인] 예.

[재 판 장]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검　　사] 문공익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이예리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변 호 인] 김승소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박유능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배심원 선서

[재 판 장] (배심원들을 바라보며)[14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배심원들은 오늘 재판에 있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144]

배심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선서서는 1번 배심원이 대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배심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는 자세를 취하고, 1번 배심원은 왼손으로 배심원용 선서서를 든다)

[1번 배심원] (당당한 목소리로) 본 배심원들은 이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이 법정이 설명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평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재 판 장] 모두 앉으십시오.

(배심원들은 모두 자리에 앉는다)

재판장 최초 설명

143) 배심원 선정 절차는 생략하였다.

14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재 판 장] (배심원들을 바라보며) 배심원 여러분,[145] 지금부터 앞으로 진행될 재판절차와 배심원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설명하겠으니 주의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오늘 진행될 재판절차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본 공판절차는 검사의 모두진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답변, 변호인의 의견진술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합니다.

증거조사는 증거서류에 대해 조사를 한 후 검사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을 이 법정에 불러 그 진술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와 변호인이 원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종료되면 검사와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종 의견진술을 듣고 심리를 종결할 것입니다.

(2) 다음으로 배심원 여러분께서 재판에서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로 추정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이 무죄일지도 모르겠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 정도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검사에 의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오늘 재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원 여러분은 평결을 할 때 오늘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 즉 이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서류의 내용, 증인의 증언, 피고인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유무죄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재판 도중에 여러분이 듣게 될 검사의 공소장 낭독이나 변호인의 모두진술,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 최후변론 같은 것들은 모두 검사나 변호인의 의견에 불과하고 유무죄의 판단에 쓸 수 있는 증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재판과정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증거를 만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느 증거를 믿고 어느 증거를 믿지 않을 것인

145)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지만(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본 모의재판 시나리오에서는 예비배심원을 두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다.

지는 오로지 배심원 여러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판단에는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을 이용하시되, 모든 증인에 대하여 같은 기준을 사용하여야 하고, 성별이나 나이, 직업, 종교와 같은 것들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배심원 여러분께서 재판 도중에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심원께서 직접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 변호인과 재판장의 신문이 모두 끝난 후에 메모지에 질문을 적어 제출하시면 재판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질문을 대신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배심원 여러분은 오늘 심리가 종결되고 평결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재판장의 허가 없이 이곳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평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사건이나 증거에 대하여 다른 배심원을 포함한 어느 누구와도 의논할 수 없고, 사건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도 없습니다.

배심원 여러분은 오로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법정 외에서 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셔도 안 됩니다. 또한, 평의, 평결,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배심원 각자의 의견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배심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설명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배심원들] (함께) 예.

진술거부권 고지 등[146)]

[재 판 장] 그럼 지금부터 심리에 들어가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147)]

---

146) 진술거부권의 고지, 인정신문 및 주소변동보고의무 고지

147) 소송관계인의 착석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실무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본 모의재판 시나리오에서는 ①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주소변동보고의무 고지, ② 검사의 모두진술, ③ 검사와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선다)

[재 판 장]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피 고 인] 예.

[재 판 장] 피고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 고 인] 한건강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나요?

[피 고 인] 1988년 2월 1일입니다.

[재 판 장]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피 고 인] 서울 동작구 사당로[148]입니다.

[재 판 장] 등록기준지는 어디인가요?

[피 고 인] 대전 서구 삼천로입니다.

[재 판 장] 직업은 무엇인가요?

[피 고 인] 대학원생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은 재판기일에는 항상 출석하여야 하고 재판 도중에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149]

[피 고 인] 예.

[재 판 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피고인은 자리에 앉는다)

[재 판 장] (배심원들을 바라보며) 배심원 여러분, 방금 들으셨듯이 피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종의견 진술의 경우 및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일어선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법원행정처(주 20), 95. 참조].

148)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이므로 건물번호는 표시하지 아니하였다(이하 같다).

14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항 ; 법원행정처(주 22), 16.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자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모두진술

[재 판 장] 검사는 공소의 요지[150]를 진술하십시오.

[검사 문공익] 예, 재판장님.

(자리에서 일어서서 배심원들을 바라보며) 피고인은 2014년 2월 27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화이트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151] 이하얀이 운영하는 '깨끗한 세탁소' 앞에서 세탁소 처마 앞쪽에 설치한 철봉으로 만든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을 손으로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리에 앉는다)

피고인의 모두진술

[재 판 장]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았습니까?

[피 고 인] 예.

[재 판 장] 검사가 방금 말한 공소사실을 잘 들으셨지요?

[피 고 인] 예.

[재 판 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십니까?[152]

[피 고 인] (단호한 목소리로)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점퍼를 훔친 사실이

150) 형사소송법 제285조 단서

151)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재물의 점유자가 절도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나 절도죄는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그 재물의 소유자를 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물의 소유자도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152) 형사소송법 제286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제1항

없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진술

[재 판 장] 변호인도 공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153]

[변호인 김승소] 예. (자리에서 일어서서 배심원들을 바라보며) 피고인은 피해자 이하얀과 목격자 강질풍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지목되어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점퍼를 훔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에 범행현장이 아닌 나의리의 집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자리에 앉는다)

쟁점정리 및 증거신청

[재 판 장] (배심원들을 바라보며) 배심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을 배심원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아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피고인인지 여부입니다. 배심원 여러분은 앞으로 조사할 증거들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을 바라보며) 양측은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나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까.

[검사 문공익] 검사 측은 없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재 판 장] (배심원들을 바라보며)

이 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 이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입증계획에 따른 증거신청을 받아 그 채택 여

153) 형사소송법 제286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의2 제2항

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현장과 그 일대의 현황을 밝히기 위하여 사법경찰관 정덕화가 작성한 범행현장 약도를 증거서류로 신청하였고,[154]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목격한 이하얀과 강질풍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하얀과 강질풍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기 위하여 경찰관 정덕화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각에 나의리에 집에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의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이 신청한 위 증거들을 모두 채택하였습니다.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을 바라보며) 양측은 공판준비기일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검사 문공익] 검사 측은 이의 없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피고인 측도 이의 없습니다.

2. 증거조사

범행현장 약도에 대한 조사

[재 판 장] 지금부터 증거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범행현장 약도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검사는 범행현장 약도를 제시하십시오.[155]

[검사 문공익] (증거서류인 범행현장 약도를 실물화상기에 투영하여 제시하고)[156]

지금 보시는 것은 사법경찰관인 정덕화가 작성한 범행현장 약도입니다. 이 사건 범행현장 주변 도로와 깨끗한 세탁소, 열심학원, 참맛치킨, 대박마트,

154) 범행현장 약도는 이 책 부록 9. 범행현장 약도를 사용하도록 한다.

155) 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2조 제5항).

156) 실물화상기가 없는 경우, 지도관은 모의재판 실시 전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에게 동 증거서류를 배부하고, 모의재판 실시 중에는 검사 역할을 맡은 학생으로 하여금 재판부와 피고인 및 변호인 등에게 증거서류를 제시하도록 지도한다(이하 같다).

형제분식, 다나병원 등 주요 건물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 판 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피 고 인] 이 사건 범행현장 주변의 도로와 주요 건물들의 위치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범행현장 약도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 판 장] 그럼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나요?[157]

[검사 문공익] 이하얀과 강질풍 증인은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정덕화와 나의리 증인도 출석하였습니다.

[재 판 장]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서 나란히 선다)

[재 판 장]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법원실무관은 증인들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재판장에게 전달한다)

(재판장은 신분증과 증인들의 얼굴을 대조하면서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후 법원실무관을 통해 증인들에게 신분증을 돌려준다)[158]

위증의 벌 경고 등

[재 판 장] 증인들 중에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증 인 들] (입을 모아서) 없습니다.

[재 판 장]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157)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이므로 증인이 재정한 것으로 하였다.
158) 형사소송규칙 제71조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159]

증인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만약 선서를 한 다음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160]

잘 아시겠습니까?

[증 인 들] 예.

증인선서

[재 판 장]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161]는 이하얀 증인이 대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할 자세를 취한다. 증인 이하얀은 왼손으로 선서서를 든다)

[증인 이하얀] (당당한 목소리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162]

[재 판 장] 먼저 검사가 신청한 이하얀 증인과 강질풍 증인을 차례로 신문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신청한 정덕화 증인과 나의리 증인을 차례로 신문하겠습니다. 이하얀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강질풍, 정덕화, 나의리 증인은 법원경위의 안내에 따라 잠시 법정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163]

(증인 이하얀은 증인석에 앉고, 나머지 증인들은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밖으로 나간다)

---

159)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위 문구는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법정진행 핸드북에 수록된 것이다[법원행정처(주 22), 19.].

160) 형사소송법 제156 내지 158조

161) 법정에 비치된 것을 사용한다.

162)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인 점을 고려하여, 증인들이 형사소송법 제158조 제3항에 따라 선서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절차를 생략하였다.

163) 형사소송법 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증인 이하얀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검사 이예리] 예, 재판장님.

증인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증 인] 저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화이트 빌딩 1층에서 '깨끗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 이예리] 증인은 2014년 2월 27일 오후 4시 30분경 세탁소 앞에 걸어 둔 점퍼를 도둑맞은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검사 이예리]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증 인] 제가 그날 오후 4시 30분경 세탁소 안 전면 유리창 옆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는데, 유리창 밖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서 곧바로 밖을 쳐다보니,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가게 앞에 차량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워 둔 간판을 넘어뜨리고 세탁소 처마 앞쪽에 설치한 철봉으로 만든 옷걸이에 걸려 있던 점퍼 1벌을 손으로 낚아채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옷 가져간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마침 세탁소 안에 있던 강질풍이 범인을 잡으러 뛰어 나갔습니다.

[검사 이예리] 증인이 도둑맞은 점퍼는 어떤 것인가요?

[증 인] 손님이 세탁을 맡긴 남성용 회색 패딩 점퍼입니다. 가격은 6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이예리] 증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목격한 범인이 이 법정 안에 있습니까?

[증 인] 예.

[검사 이예리] 그 범인이 누구지요?

[증 인] (손가락으로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검사 이예리]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변호사 박유능] 예, 재판장님.

증인은 범인의 모습을 확실히 보았나요?

[증　　인] 예. '쿵'하는 소리가 나서 곧바로 유리창 밖을 쳐다보니, 간판이 넘어져 있었고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점퍼 1벌을 손으로 낚아채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범인의 얼굴을 정면에서 봤나요?

[증　　인] 범인의 옆얼굴을 봤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순간적으로 범인의 옆얼굴만 보고 피고인이 범인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증　　인] 피고인이 제가 몇 시간 전에 봤던 사람이어서 바로 알아봤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피고인을 본 사실이 있다는 것인가요?

[증　　인] 예. 제가 그날 오후 2시경 세탁소 앞에 세워둔 세탁물 수거 차량에서 세탁물을 꺼내오느라 세탁소와 차량 사이를 수차례 왕복하면서 화이트빌딩 현관 앞에 낯선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봤는데, 추운 날씨에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그 남자를 쳐다보니 내 눈을 피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했는데, 그 남자가 잠시 후 열심학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피고인이었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이 피고인을 처음 봤을 당시 증인과 피고인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되었나요?

[증　　인] 아주 가까이서 봤습니다. 2m도 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참 이상하네요. 피고인은 그날 증인의 세탁소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증　　인]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날 오후 2시에 본 사람은 피고인이 맞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의 모습을 설명했지요?

[증　　인] 예. 제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10분이 채 못돼서 경찰관이 세탁소로 와서 범인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범인은 목이 길고 마른 체형이었으며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는 젊은 남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그날 피고인의 사진을 본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저와 강질풍이 경찰관의 전화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6시 30분경 관악경찰서 봉천지구대에 갔더니 경찰관이 저희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1장을 보여주면서 사진 속의 사람이 범인이 맞는지 잘 보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사진을 보고 뭐라고 대답했나요?

[증　　인]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인 것 같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경찰관이 증인과 강질풍에게 피고인의 사진 이외에 다른 사진도 보여주었나요?

[증　　인] 아니요. 피고인의 사진만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그날 관악경찰서 봉천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났지요?

[증　　인] 예. 그날 오후 7시 30분경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려와 범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있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그때 뭐라고 대답했나요?

[증　　인] 피고인이 범인임이 틀림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그러자 피고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증　　인] 피고인은 제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하면서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피고인이 이 사건 점퍼를 훔쳐간 범인임이 틀림없나요?

[증　　인] 제 기억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인입니다.

[변호사 박유능] 이상입니다.

[재 판 장] 검사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신가요?

[검사 이예리] 없습니다.

[재 판 장] 증인이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증　　인] 예. 피고인이 대학원생이라고 들었습니다.
도둑맞은 점퍼는 찾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관대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이하얀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강질풍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164)]

164) 모의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재판장이 배심원들에게 증인 등에 대한 질문 사항 유무를 묻는 절차는 생략하였다(이하 같다).

(증인 이하얀은 방청석에 가서 앉고, 증인 강질풍은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안에 들어온 다음 증인석에 앉는다).

증인 강질풍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검사 이예리] 예, 재판장님.

증인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증 인]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머니 이하얀이 운영하는 세탁소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검사 이예리] 이하얀이 2014년 2월 27일 오후 4시 30분경 세탁소 앞에 걸어 둔 점퍼를 도둑맞은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검사 이예리]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증 인] 제가 그날 오후 4시 30분경 세탁소 안에서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쿵'하는 소리가 났고 어머니가 "야, 옷 가져간다"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범인을 잡으러 세탁소 밖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검사 이예리] 증인이 범인을 추적했던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증 인] 제가 세탁소 밖으로 뛰어 나갔을 때 전방 6~7m가량 앞에서 청바지와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가 왼쪽 팔뚝에 점퍼를 감싸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야, 그 자리에 서"라고 소리를 지르며 200m쯤 범인을 쫓아가다가 대박마트 부근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쳤습니다.

[검사 이예리] (범행현장 약도를 실물화상기에 투영한 후)[165]

이 약도에 범행현장 주변의 도로와 주요 건물들의 위치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165) 증인의 진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면, 사진, 모형, 장치 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 제1항). 실물화상기가 없는 경우, 신문자는 증인에게 다가가 범행현장 약도를 보여준 다음 신문을 진행한다(이하 같다).

[증　　인] 예.

[검사 이예리] 이 약도를 보면서 범인이 도주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증　　인] (약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범인은 열심학원 쪽으로 7~80m쯤 뛰어가다가 좌회전을 했고, 다시 100m쯤 뛰어가다가 참맛치킨 앞에서 좌회전을 해서 대박마트 쪽으로 뛰어가다가 오른쪽 골목길로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검사 이예리] 범인이 사라진 위치가 약도 중 원형의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인가요?

[증　　인] 예. 대략 그 정도 위치에서 사라졌습니다.

[검사 이예리] 증인은 그 후 어떻게 했나요?

[증　　인] 예. 제가 범인을 놓친 후 대박마트 주변 골목길을 뒤지면서 범인을 찾아보았으나 범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검사 이예리] 증인은 그 후 범인을 다시 발견했나요?

[증　　인] 예. 제가 범인을 놓친 후 10분에서 15분이 지났을 무렵 대박마트 앞에 서 있는데 형제분식 쪽에서 제가 서 있던 곳을 향하여 흰색 승용차가 한 대 왔습니다. 승용차가 제 앞을 지나는 순간 운전자와 얼굴이 마주쳤는데, 운전자의 얼굴과 입고 있던 옷을 보고 바로 범인임을 알았습니다.

[검사 이예리] 증인은 그 후 어떻게 했나요?

[증　　인] 제가 "도둑놈, 거기 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승용차를 뒤쫓아 가자 범인은 갑자기 속도를 올려 직진하더니 다나병원 앞 왕복 2차선 도로의 중앙선을 가로질러 불법 좌회전을 한 후 사라졌습니다. 저는 승용차를 30m 정도 뒤쫓다가 포기하고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스마트폰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검사 이예리] 증인이 뒤쫓던 범인이 이 법정 안에 있습니까?

[증　　인] 예.

[검사 이예리] 그 범인이 누구지요?

[증　　인] (손가락으로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검사 이예리]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변호사 박유능] 예, 재판장님.

증인은 이 사건 범행 순간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지요?

[증　　인] 예.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직후 범인을 쫓으면서 도둑맞은 점퍼를 왼손에 감

고 뛰어가는 범인을 봤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범인을 쫓아갈 때 범인의 얼굴을 확실히 보았나요?

[증　　인] 예. 처음에는 범인의 뒷모습만 보았고, 범인이 골목길을 좌회전하여 도망갈 때 왼쪽 옆얼굴을 보았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그렇다면 증인은 범인을 뒤쫓으면서 순간적으로 범인의 옆얼굴만 보았을 뿐인데,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범인임을 바로 알아보았다는 것인가요?

[증　　인] 제가 본 범인의 옆얼굴과 승용차 운전자의 옆얼굴이 같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범인은 목이 길고 마른 체형이었고, 추운 날씨에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승용차 운전자도 목이 길고 마른 체형이었고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뭐라고 했나요?

[증　　인] 예. 제가 세탁소로 돌아가 보니 경찰관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범인이 목이 길고 마른 체형의 젊은 남자였으며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말하고, 메모해 둔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그날 피고인의 사진을 본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제가 어머니와 함께 그날 오후 6시 30분경 관악경찰서 봉천지구대에 갔더니 경찰관이 저희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1장을 보여주면서 사진 속의 사람이 범인이 맞는지 잘 보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사진을 보고 뭐라고 대답했나요?

[증　　인]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경찰관이 보여준 사진은 피고인의 얼굴을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었지요?

[증　　인] 예.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순간적으로 범인의 옆얼굴만 보았을 뿐인데, 정면 얼굴 사진만 보고도 사진 속의 인물이 범인임을 바로 알아보았다는 것인가요?

[증　　인] 예. 제가 보기에는 범인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경찰관이 증인과 강질풍에게 피고인의 사진 이외에 다른 사진도 보여주었나요?

[증　　인] 아니요. 피고인의 사진만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그날 관악경찰서 봉천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났지요?

[증　　인] 예. 그날 오후 7시 30분경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려와 범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증인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증　　인]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그러자 피고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증　　인] 피고인은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에게 "생사람 잡지 말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피고인이 범인임이 틀림없나요?

[증　　인] 제 기억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인입니다.

[변호사 박유능] 이상입니다.

[재 판 장] 검사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신가요?

[검사 이예리]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증인이 대박마트 앞에서 승용차를 뒤쫓아 가자 범인이 갑자기 속도를 올려 진행하였다고 했는데, 그때 승용차의 최고 속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증　　인] 제가 전력질주를 해도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속도였으므로 시속 30에서 40km 정도는 됐을 것입니다.

[검사 이예리] 대박마트 앞에서 다나병원 앞 왕복 2차선 도로에 이르는 길은 평소 차량이 매우 서행하는 길이지요?

[증　　인] 예. 폭이 약 6m 정도밖에 안 되는 차선 표시 없는 도로이고 사람도 많이 걸어 다니는 곳이어서 평소 차량들이 매우 천천히 다니는 곳입니다.

[검사 이예리] 그렇다면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은 증인이 "도둑놈, 거기 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뒤따라오자 증인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서 도주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요?

[변호인 박유능]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166]

[재 판 장] 변호인의 이의를 인정합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의견을 묻는 질문을 삼가 주십시오.

---

166)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사소송규칙 제74조 제2항 제3호).

[검사 이예리] 예. 마지막 질문은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변호인 박유능] 없습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강질풍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정덕화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강질풍은 방청석에 가서 앉고, 증인 정덕화는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안에 들어온 다음 증인석에 앉는다).

증인 정덕화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변호인은 신문하십시오.

[변호인 김승소] 예, 재판장님.

증인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증 인] 서울 관악경찰서 봉천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은 2014년 2월 27일 오후 4시 30분경 신고를 받고 봉천동에 있는 '깨끗한 세탁소'에 출동한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같은 날 오후 4시 35분에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은 출동 후 어떤 조치를 취하였나요?

[증 인] 피해자 이하얀과 그 아들인 강질풍을 상대로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이하얀과 강질풍이 범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증 인] 두 사람 모두 범인이 목이 길고 마른 체형의 젊은 남자였으며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고, 아들인 강질풍은 자신이 목격했다는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은 그 날 이하얀과 강질풍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준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차량번호로 차량소유자를 조회한 후 차량소유자의 사진을 스마트폰으

로 전송받아 두었다가 그날 오후 6시 30분경 관악경찰서 봉천지구대에서 이하얀과 강질풍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이하얀과 강질풍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증　　인] 두 사람 모두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이 보여준 사진은 피고인의 정면 얼굴사진이었지요?

[증　　인] 예.

[변호인 김승소] 두 사람이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임을 바로 알아보던가요?

[증　　인] 두 사람이 조금 시간을 들여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은 그날 오후 7시 30분경 두 사람과 피고인을 대면시킨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제가 피고인에게 봉천지구대로 출석하라고 요청했더니, 피고인이 그날 오후 7시 30분경 봉천지구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하얀과 강질풍에게 피고인을 대면시켰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이하얀과 강질풍이 피고인을 만나더니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증　　인] 이하얀과 강질풍은 곧바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피고인은 뭐라고 하던가요?

[증　　인] 피고인은 이하얀과 강질풍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착각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피고인이 지구대에 왔을 당시 어떤 옷을 입고 있던가요?

[증　　인] 회색 면바지에 자주색 후드 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인 점퍼는 발견되었나요?

[증　　인] 피고인의 집과 범행현장 주변을 수색해 보았지만, 피해품인 점퍼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이상입니다.

[재 판 장] 검사는 반대 신문하십시오.

[검사 문공익] 증인은 통상 목격자에게 범인의 사진을 제시하거나 범인을 대면시킬 때 어떻게 하나요?

[증　　인] 통상의 경우에는, 먼저 목격자를 상대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한 후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제시하거나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 문공익] 증인이 이하얀과 강질풍에게 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하고, 피고인을 단독으로 대면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　　인]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때로부터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아서 목격자인 이하얀과 강질풍이 범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이하얀과 강질풍을 피고인과 신속히 대면하게 하는 것이 범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사 문공익]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변호인 김승소] 없습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정덕화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나의리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정덕화는 방청석에 가서 앉고, 증인 나의리는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안에 들어온 다음 증인석에 앉는다).

증인 나의리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변호인은 신문하십시오.

[변호인 김승소] 예, 재판장님.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사이인가요?

[증　　인] 저는 피고인과 중 · 고등학교 동창이고, 현재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도 대학원생인가요?

[증　　인] 아니요. 저는 작년에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변호인 김승소] 증인은 2014년 2월 27일 오후 3시에서 4시 40분까지 증인의 집에서 영화를 본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피고인이 저희 집에 놀러 왔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친구로부터 빌려 온 DVD를 함께 봤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피고인과 증인이 함께 본 DVD는 어떤 것인가요?

[증　　인] '타이거 병장 구하기'라는 제목의 전쟁영화였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피고인은 언제 증인의 집을 나갔나요?

[증　　인] 피고인이 영화를 보다가 별로 재미가 없다고 하면서 오후 4시 40분경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이상입니다.

[재 판 장] 검사는 반대 신문하십시오.

[검사 문공익] (범행현장 약도를 실물화상기에 투영한 후)
약도를 보시고 증인의 집이 있는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증　　인] (약도를 가리키며) 형제분식 건물 2층이 저희 집입니다.

[검사 문공익] 증인의 집과 대박마트는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증　　인]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리상으로는 한 3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검사 문공익] 피고인이 증인의 집에 자주 놀러 왔나요?

[증　　인] 예. 그때는 방학 중이라 피고인이 제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검사 문공익] 증인과 피고인이 증인의 집에서 DVD를 볼 때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증　　인] 아니요.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여 저희 둘만 있었습니다.

[검사 문공익] 피고인이 증인의 집에 승용차를 타고 왔나요?

[증　　인] 피고인이 대학원에 입학한 후 흰색 중고 승용차를 사서 타고 다니기는 했는데, 그날 승용차를 타고 왔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사 문공익] 피고인이 그날 어떤 옷을 입고 왔나요?

[증　　인] 글쎄요. 오래된 일이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사 문공익] 증인은 피고인과 그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증　　인] 글쎄요. 저와 피고인이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그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사 문공익] 증인은 2014년 2월 27일 증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났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피고인이 그날 증인의 집을 떠난 시각이 오후 4시 40분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나요?

[증　　인] (잠시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 피고인이 3월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자신이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리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더듬어 보니 2월 27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DVD를 봤던 사실이 기억이 났고, 피고인이 원하면 피고인이 그날 오후에 저희 집에 있었다고 말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무렵 매일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오후 3시경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이 제가 돌아온 직후 도착하였으니, 피고인이 저희 집에 온 시각은 오후 3시 무렵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저희 집에서 떠난 시각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날 영화를 보는 데 빠져 있어서 피고인이 언제 제 집에서 나갔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이 그날 제 집에서 오후 4시 40분경 나갔다고 하기에, 저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오후 4시 40분경 제 집을 나갔다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검사 문공익]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따라 답변해 주십시오. 피고인이 그날 증인의 집을 나간 시각이 언제인가요?

[증　　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167]

[검사 문공익]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변호인 김승소] 피고인이 그날 증인의 집을 나간 시각이 오후 4시 40분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증　　인] 물론입니다. 피고인이 3월에 저를 찾아왔을 때 자신이 그 날 제 집에서 오후 4시 40분경 나갔다고 분명히 말했고, 저는 지금도 피고인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변호인 김승소] 이상입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나의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167)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취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로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도1231 판결).

(증인 나의리는 방청석에 가서 앉는다)

증거조사 종결

[재 판 장]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검사 이예리] 증인 이하얀과 강질풍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은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변호인 박유능] 증인 이하얀과 강질풍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재 판 장] 양측은 더 신청하실 증거가 있나요?

[검사 이예리] 검사 측은 없습니다.

[변호인 박유능]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재 판 장] 이것으로 증거조사를 마치겠습니다.

3. 피고인신문 및 최종변론

피고인신문

[검사 이예리] 재판장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묻기 위하여 피고인신문을 신청합니다.

[재 판 장]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는다)

[재 판 장]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검사 이예리]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2014년 2월 27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화이트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이하얀 운영의 '깨끗한 세탁소' 처마 앞쪽에

설치한 철봉으로 만든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을 절취한 사실이 있나요?

[피 고 인]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저는 그날 그 시각에 세탁소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은 그날 그 시각에 어디 있었나요?

[피 고 인] 저는 나의리의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은 나의리의 집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나요?

[피 고 인] 저는 그날 오후 3시경 나의리의 집에 가서 영화를 보다가 오후 4시 40분경 나의리의 집을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당역 쪽에 있는 저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사 이예리] 차량번호 00노0000 승용차가 피고인이 그날 운전했던 승용차가 맞나요

[피 고 인] 예.

[검사 이예리] (범행현장 약도를 실물화상기에 투영한 후)

피고인은 그날 나의리의 집에서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고 형제분식 방면에서 대박마트를 지나 다나병원 앞 2차선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해서 진행했나요?

[피 고 인] 예.

[검사 이예리] 대박마트 앞에서 "도둑놈, 서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승용차를 뒤쫓아 오던 강질풍을 보고 속도를 올려 진행한 사실이 있나요?

[피 고 인] 아니요. 저는 승용차 창문을 닫고 음악을 듣고 있어서 강질풍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지 못했고, 강질풍이 승용차를 뒤쫓아 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속도를 올려 진행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은 그날 어떤 옷을 입었나요?

[피 고 인] 하의는 청바지를 입었고, 상의는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점퍼를 입었습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은 겨울에도 반소매 티셔츠를 입나요?

[피 고 인] 제가 워낙 건강하고 몸에 열이 많이 나는 편이어서 승용차 안이나 실내에서는 반소매 티셔츠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은 그날 오후 2시경 '깨끗한 세탁소' 건물 현관 앞에 앉아 있었나요?

[피 고 인] 아니요. 저는 그날 '깨끗한 세탁소' 근처에 간 사실조차 없습니다. 저는 그

날 오후 2시경 집에 있었습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이 그날 오후 2시경 집에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

[피 고 인] 저희 가족들이 그날 오전에 모두 외출하였기 때문에 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해 봤지만, 제가 그날 오후 2시경 집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검사 이예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나요?

[피 고 인] 저는 피해자와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사 이예리]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 신문하십시오.

[변호사 박유능]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지요?

[피 고 인] 예.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 박유능] 피고인은 지금 너무나 억울한 심정이지요?

[피 고 인] 예. 너무나 억울해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변호사 박유능] 이상입니다.

[재 판 장] 이것으로 피고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검사의 최종의견 진술

[재 판 장] 검사는 최종의견 진술하십시오.[168)]

[검사 문공익]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이하얀과 이 사건 범행 직후 범인을 추적한 강질풍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분명히 진술하였습니다. 이하얀과 강질풍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인은 목이 길고 마른 체형이었고, 추운 날씨에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보시다시피 피고인은 목

168) 형사소송법 제302조

이 길고 마른 체형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얀과 강질풍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하얀과 강질풍의 증언은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하얀과 강질풍의 증언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유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다)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재 판 장] 변호인은 최종의견 진술하십시오.[169)]

[변호사 김승소] (자리에서 일어서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이하얀과 강질풍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습니다.

이하얀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범인의 옆얼굴만 보았을 뿐이고, 강질풍 또한 이 사건 범행 후 범인을 쫓아가면서 범인의 뒷모습과 옆얼굴을 보았을 뿐입니다. 특히, 이하얀이 이 사건 당일 오후 2시경 세탁소 건물 현관 앞에서 보았다는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남자는 피고인이 아닙니다. 강질풍 또한 범인이 사라진 장소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던 피고인이 우연히 범인처럼 목이 길고 마른 체형에 검은색 반소매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단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목이 길고 마른 체형인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겨울에도 난방이 되는 차 안에서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9) 형사소송법 제303조

더욱이 경찰관 정덕화는 사진제시와 용의자 대면에 의한 범인 식별에 요구되는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이하얀과 강질풍에게 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하고 피고인을 단독으로 대면시켰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하얀과 강질풍은 이 사건의 진범과 피고인을 착각하여 잘못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증언은 믿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도 없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다)

피고인의 최종의견 진술

[재 판 장]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하십시오.[170]

[피 고 인] (자리에서 일어서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하늘에 맹세코 이 사건 점퍼를 훔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수를 목표로 대학원에서 성실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일은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도둑으로 몰려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심정입니다. 재판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다)

[재 판 장] 이상으로 ○○지방법원 2014고합1000 피고인 한건강에 대한 절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판장 최종 설명

[재 판 장] (배심원들을 향해) 배심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검사와 변호인이 제

170) 형사소송법 제303조

출한 증거의 조사에 참여하고, 검사의 의견과 변호인,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재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드리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원칙을 설명하겠습니다.[171]

(1) 먼저, 그동안의 재판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절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퍼를 훔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에 범행현장이 아닌 나의리의 집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정덕화가 작성한 범행현장 약도를 증거서류로 신청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이하얀과 이 사건 범행 직후 범인을 추적하였던 강질풍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172]

한편 피고인은 이하얀과 강질풍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기 위하여 경찰관 정덕화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에 나의리와 함께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의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결국, 배심원 여러분은 범행현장 약도의 내용과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점퍼를 절취하였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2) 다음으로 배심원 여러분이 평의 때 고려해야 할 증거법칙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찰 측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171)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172) 증언 내용이 단순하고, 재판장의 설명이 길어지는 경우 학생들이 지루하게 느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본 모의재판 시나리오에서는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다.

검찰 측에서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혹시 무죄일지도 모르겠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여전히 무죄로 추정되고, 이때 배심원 여러분은 피고인을 무죄로 평결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검사가 그러한 의심을 없어지게 할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을 유죄로 평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과정에서 여러분은 오로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만 입각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공소장이나 변호인의 진술,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질문, 최후변론 같은 것들은 모두 검사나 변호인의 의견이지 증거가 아닙니다. 오늘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서류의 내용, 증인의 증언과 피고인의 진술만이 유무죄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 증거로서, 배심원 여러분은 이러한 증거에만 기초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법정에서 보신 증거서류의 내용, 증인들의 증언, 피고인의 진술 중 어느 증거를 믿고 어느 증거를 믿지 않을 것인지는 오로지 배심원 여러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판단에는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을 이용하시되, 모든 증인에 대하여 같은 기준을 사용하여야 하고, 성별이나 나이, 직업, 종교와 같은 것들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3) 마지막으로 평의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73]

유무죄에 대한 평결은 배심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배심원은 유 · 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유 · 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합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평결을 하였을 때에는, 배심원 여러분은 피고인에게 부과할 형에 관하여 이 재판부와 함께 토론하고 그에 관한 의견

173) 지도관이 평의와 평결을 지도하므로 배심원대표 선정에 관한 설명은 생략한다.

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무죄의 평결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재판부에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재판부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상의 설명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배심원들] 예.

[재 판 장] 양측은 지금까지의 설명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것이 있습니까?

[검사 문공익] 검사 측은 없습니다.

[변호사 김승소]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재 판 장] 배심원 여러분, 이제 평의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평의를 하는 데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고 서로의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평의가 종결되고 재판부의 합의가 끝나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정 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판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한다)

(모의재판 지도관은 배심원들의 평의 · 평결을 지도한다)[174]

4. 판결선고

재판부의 재입정

(평의가 끝나고 배심원들로부터 평결결과를 전달받은 후 판사들이 합의한다. 판사들은 합의가 끝나면 검사, 변호인, 피고인, 배심원 입정한 상태에서 출입문에서 입장을 대기한다)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174) 지도관은 학생들에게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과 사실인정에 관한 법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하고 평결을 지도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도관이 의견을 제시한다. 평결이 유죄인 경우에는 지도관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한 후 양형에 관한 토의를 지도한다.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 입장하여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판결선고

[재 판 장] ○○지방법원 2014고합1000 피고인 한건강에 대한 절도 사건의 판결선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 판 장] 먼저 판결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2) 그러나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

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하얀은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하였고, 강질풍은 곧바로 범인을 뒤쫓다가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다시 그 골목길 부근에서 범인과 동일인으로 인식되는 운전자를 발견하였으나 다시 놓친 다음 그 운전자가 운행하던 승용차의 차량번호 등을 신고하였습니다. 경찰관 정덕화는 강질풍으로부터 들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확보한 후 이 사건 범행발생 시각으로부터 2시간 내에 이하얀과 강질풍에게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로부터 불과 1시간 내에 이하얀, 강질풍을 피고인과 대면시켰습니다.

이러한 정덕화의 행위는 직접적인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도 정확한 범인식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사행위라 할 것이어서 정상적인 수사과정의 하나로 보일 뿐, 그것이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부적절한 용의자 사진 제시라거나 용의자와의 일대일 대면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4) 더욱이, 강질풍은 범인을 추적하다가 놓친 때로부터 10분에서 15분이 지났을 무렵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의 얼굴과 옷을 보고 피고인이 범인임을 알아본 후 그 차량번호를 기억해 두었다는 것이므로, 강질풍은 경찰관 정덕화가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기 이전인 바로 이 단계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식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5) 또한, 이하얀과 강질풍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인이 목이 긴 마른 체형의 젊은 남자로서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목이 긴 마른 체형의 젊은 남자이고, 이 사건 당일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6) 이 사건 범행 당일은 겨울날이어서 위와 같이 반소매 티셔츠를 입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강질풍이 범인을 놓친 때로부터 약 10~15분 후 범인을 놓친 장소 인근에서 피고인이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흰색 승용차를 운전하고 왔습니다.

(7)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하얀과 강질풍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각에 친구인 나의리의 집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증인 나의리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습니다.

(9)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10) 배심원의 평결 결과도 재판부의 판단과 같습니다.[175]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배심원은 (　)명, 무죄라고 생각하는 배심원은 (　)명이었습니다.

(1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대학원생이고, 피해물품의 가액도 6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합니다.

(12)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176]

피고인은 오늘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원경위]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서고, 판사들은 법정 밖으로 나간다)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 판 장] 먼저 판결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175)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176)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이므로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은 생략하였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과 이에 영향을 받은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경찰관 정덕화는 목격자 강질풍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타고 간 흰색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였고, 스마트

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하얀과 강질풍으로 하여금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하였으며, 이에 이하얀과 강질풍은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인식별 절차는 목격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하얀과 강질풍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이하얀과 강질풍이 목격한 범인의 옷과 일치하는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은 겨울날이어서 위와 같이 반소매 티셔츠를 입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없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피해품인 점퍼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들도 엿보입니다.

(6) 그러므로 증인 이하얀, 강질풍의 증언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7)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8) 그러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증명되지 못하였습니다.

(9) 배심원의 평결 결과도 재판부의 판단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배심원은 (　)명, 무죄라고 생각하는 배심원은 (　)명이었습니다.

(10) 결국,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177]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원경위]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서고, 판사들은 법정 밖으로 나간다)

177)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의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제 2 장

모의재판 지도안 총설

제 1 절

모의재판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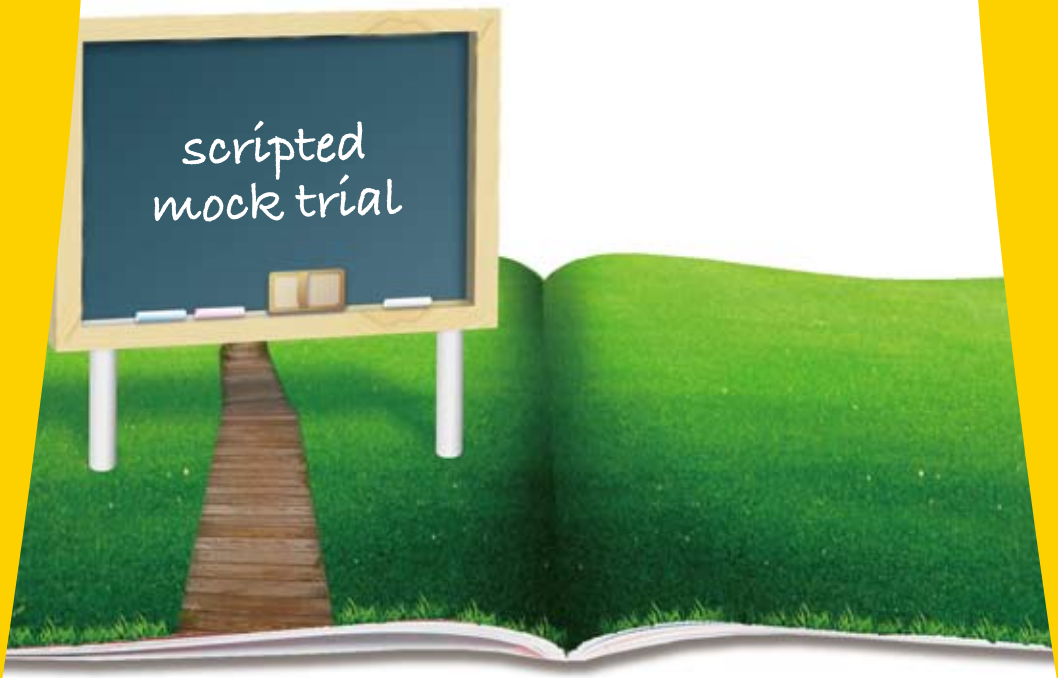

모의재판의 의의

모의재판은 실제 재판을 본떠서 하는 가상의 재판을 말한다.

모의재판은 재판절차에 따라 민사모의재판, 형사모의재판, 가사모의재판 등으로 구분되고, 쟁점이 사실관계인지 법리인지에 따라 사실인정 중심의 모의재판(mock trial)과 법리공방 중심의 모의재판(moot court)으로 구분된다. 특히 사실인정 중심의 모의재판은 진행방식에 따라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하는 '시나리오 방식 모의재판(scripted mock trial)'과 참가자들이 스스로 모의재판을 준비하여 모의재판을 수행하는 '비시나리오 방식 모의재판(non-scripted mock trial)'으로 구분된다. 이 중 시나리오 방식 모의재판은 주로 법률과 재판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스스로 모의재판을 준비하기 어려운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모의재판은 중 · 고등학생으로 하여금 평소 경험하지 못한 역할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교육 수단이 된다. 특히 모의재판의 소재가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나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한 것이라면 이러한 흥미와 참여의 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중 · 고등학생은 모의재판을 통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능력, 타인의 주장을 경청하는 능력 및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다.

특히, 시나리오 방식의 모의재판은 법률과 재판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중 · 고등학생에 대한 법교육 방법으로서 매우 유용하다. 시나리오 방식의 모의재판은 학생들로 하여금 미리 마련된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따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재판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그 과정에서 중 · 고등학생은 법 원리와 기본적인 실체법 지식과 재판절차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익힐 뿐만 아니라, 주어진 사건을 해결해 나가면서 법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고, 재판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법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시나리오 방식의 모의재판은 중 · 고등학생에 대한 통합적 법교육을 가능케 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가 사법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사법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제 2 절

실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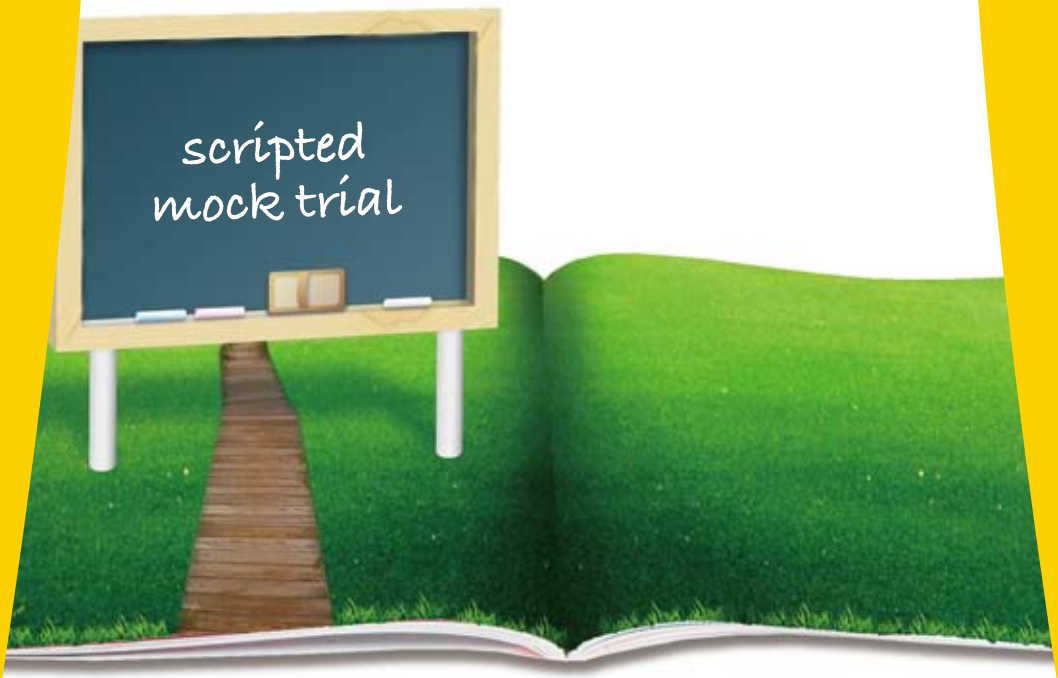

실시 절차

시나리오 방식 모의재판은 실시 전 단계, 실시 중 단계, 실시 후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실시 전 단계는 지도관인 법관(이하 '지도관'이라고 한다)이 모의재판의 실시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실시 전 단계에서는 ① 모의재판 시나리오 선정, ② 모의재판 시나리오 수정 · 보완 필요성 검토, ③ 모의재판에 배정된 시간 안배 검토, ④ 시설 및 소품 준비, ⑤ 실시 전 교육, ⑥ 배역 선정, ⑦ 모의재판 시나리오 등의 배부 및 소품의 교부가 이루어진다.

실시 중 단계는 지도관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실시 중 단계에는 학생들이 변론종결 후 예상되는 재판 결과에 관하여 토론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의 참여도와 흥미도를 높이고 실시 후 단계에서의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시 후 단계는 모의재판 실시 후 모의재판 절차와 재판 결과에 대한 요약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실시 후 단계는 지도관이 모의재판 절차와 재판 결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부분과 학생들이 모의재판 절차와 재판 결과에 관하여 토론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모의재판 실시 절차 및 실시 방법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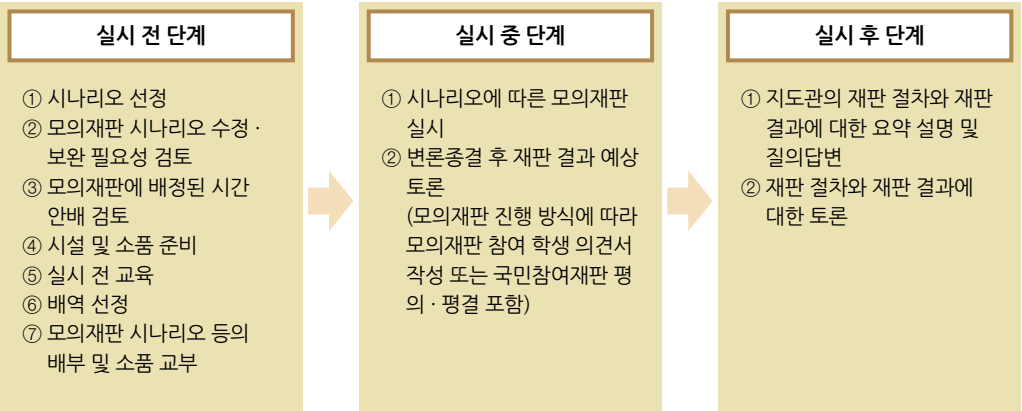

제 3 절

실시 방법

Ⅰ. 실시 전 단계
Ⅱ. 실시 중 단계
Ⅲ. 실시 후 단계

I. 실시 전 단계

1. 모의재판 시나리오 선정

지도관이 모의재판 실시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모의재판 참여 학생의 법교육 수준과 법원체험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일이다.

이 책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총 7편의 모의재판 시나리오가 수록되어 있다(제1장 제1절 Ⅱ 참조).

중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2]는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보다 난이도가 높다. 일반적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재판에는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을 활용하되, 참여 중학생들이 고학년이고, 모의재판을 체험한 경험이 있거나, 지도관이 모의재판 실시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2]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78]

고등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은 참여 학생들이 일부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고등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2]는 미리 정해진 결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1]과 [1-2]는 동일한 사안을 내용으로 하되,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1]은 참여 학생 결론 방식으로 구성하고,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2]는 고등학생들이 가상의 국민참여재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모의재판 실시에 소요되는 시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표 1】에는 모의재판 시나리오별로 해당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이 기재되어 있다(제1장 제1절 Ⅱ 참조). 해당 소요시간은 모의재판의 실시에 소요되는 전체 시간으로, 모의재판 시연 자체에만 소요되는 시간[179] 뿐만 아니라 실시 전 교육, 변론종결 후 토론, 실시 후 질의 답변 및 토론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178) 중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2]는 모의재판을 체험한 경험이 없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활용해도 무방하다.

179) 모의재판 시연 자체에만 소요되는 시간은 재판부의 개정선언부터 판결선고 시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경우의 예상 소요시간을 가리킨다. 모의재판 시연 자체에만 소요되는 시간은 민사 모의재판의 경우 약 25~30분, 형사 모의재판의 경우 약 30분~50분 정도이다.

지도관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해당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선정하도록 한다.

2. 모의재판 시나리오 수정 · 보완 필요성 검토

지도관은 자신이 선정한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수정 ·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 · 보완하여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준비한다.[180] 지도관은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기재된 법원명, 사건번호 및 각종 일자 등을 모의재판 실시 상황에 맞게 수정 ·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일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자와의 기간 간격 등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많으므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연도에 맞춰 해당 일자의 연도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책의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기재된 일자 중 변경 여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일자들은 아래와 같다.

【표 2】 변경 여부 검토 대상 일자

모의재판 시나리오	검토 대상 일자	
중학생용 민사	2014년 7월 1일	-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박을 구입한 일자 - 증인 나열심이 도매시장에서 수박을 구입한 일자 ※ 일자 변경 시 수박 출하 시기 고려 요함
	2014년 9월 말	- 증인 나열심이 피고의 가게를 그만 둔 일자
중학생용 형사 [1]	2014년 7월 1일	- 이 사건 범행일자 - 피고인이 증인 차배포와 저녁식사를 한 일자
	2014년 7월 초	- 피해자가 소아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일자
	2014년 8월 31일	- 피해자가 부모에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사실을 알린 일자
	2014년 9월 1일	- 피해자가 경찰관인 증인 강포청에게 처음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하고, 강포청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은 일자
	2014년 9월 2일	- 강포청이 피고인을 체포한 일자 - 피해자가 강포청으로부터 두 번째로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은 일자
	2010년, 2011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연도

180) 이를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은 각급 법원의 기획법관에게 본 연구를 통해 제공되는 모의재판 시나리오와 지도안의 '훈글 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의재판 시나리오	검토 대상 일자	
중학생용 형사 [2]	2014년 8월 7일	- 증인 임걱정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일자
	2014년 8월 8일	- 이 사건 범행일자
고등학생용 민사 [1]	2014년 8월 16일	- 이 사건 사고발생 일자
고등학생용 민사 [2]	2014년 1월 말	- 원고가 증인 진우정을 만나서 노래학원 추천을 부탁한 일자
	2014년 2월 1일	-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학원 수강 계약을 체결한 일자
	2014년 4월경	- 원고가 증인 진우정을 만나서 노래학원에 잘 다니고 있다고 말한 일자
	2014년 5월 1일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 수강 계약 취소의 뜻을 밝히고 학원비의 반환을 요구한 일자
고등학생용 형사 [1-1], [1-2]	2014년 2월 27일	- 이 사건 범행일자 ※ 일자 변경 시 겨울철로 변경해야 함

3. 모의재판에 배정된 시간 안배 검토

지도관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모의재판에 배정된 시간을 모의재판 실시단계에 따라 적절히 안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소요시간이 2시간인 모의재판의 경우 전체 시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첫 부분에서는 실시 전 교육, 배역 선정, 시나리오 배부 등 및 변론종결 단계까지의 모의재판만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10분 정도 휴식시간을 부여한 후 두 번째 부분에서 모의재판 변론종결 후 토론, 판결선고, 판결선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시설 및 소품 준비

이 책의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원칙적으로 각급 법원의 법관이 실제 법정에서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발되었고, 가급적 지도관이 법복 이외에는 별다른 소품을 준비할 필요가 없이 모의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히 소품 준비가 필요한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개별 시나리오에 대한 지도안에 필요한 소품을 적시해 두었다.

법관의 법복은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의 수에 맞추어 준비한다. 형사 모의재판을 실

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법복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인 선서서, 국민참여재판용 배심원 등 선서서는 본 지도안의 부록에 수록된 것을 활용해도 좋고 법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활용해도 좋다.

만일, 법관이 일선 중 ·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경우와 같이 실제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때에는 책상과 의자들을 실제 법정과 유사한 위치에 배치한 후 모의재판을 실시한다.

5. 실시 전 교육

시나리오 방식 모의재판은 참여자인 학생들이 재판절차와 시나리오에서 다룬 법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한 후 시행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지도관은 모의재판 실시 전에 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실시 전 교육은 민 · 형사 재판절차 일반에 관한 교육과 모의재판 시나리오에서 다룬 기초적 법리에 관한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지도관은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재판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지도할 필요가 있다.

(1) 민 · 형사 재판절차 일반에 관한 교육

중학생은 2학년 사회 과목에서 재판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정규 교과에서 재판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도관은 모의재판 시행 전에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판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재판절차 일반에 관한 교육은 적어도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절차 일반에 관한 교육 내용

재판의 의의와 종류

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의의 및 차이

② 합의부 재판과 단독판사 재판의 구분(사물관할)

③ 국민참여재판

참여자, 법정의 구조 및 재판 관련 용어

① 참여자 및 법정의 구조

재판장, 배석판사,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배심원, 증인 등

② 재판 관련 용어

소장, 기소, 공소장, 주장, 증인, 구형, 인용, 기각, 상소, 항소 등

☞ 참여자와 법정의 구조에 대한 설명은 지도관이 실제 법정에서 참여자가 재판시 위치할 곳을 가리키면서 함께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학생에 대해서는 각종 재판 관련 용어에 대하여 쉬운 말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181]

중학생에 대한 설명 예 [182]

- 판사 :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사람
- 재판 : 법원이 소송을 통해 판단을 내리는 것 또는 그 판단
- 민사재판 :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 형사재판 :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에게 죄가 인정되는지, 죄가 인정된다면 적정한 형벌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재판

181)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2014년 발행한 국민과의 소통 모범사례 매뉴얼 중 '쉬운 재판용어 가이드' 부분 참조

182) 조영달 외 20인, 교사용 지도서 중학교 사회, 미래엔(2014), 564. ; 김영순 외 18인, 교사용 지도서 중학교 사회, 두산동아(2014), 443. ; 사법발전재단,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이야기 ②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2009. 12.), 8-11, 21-32. 등 참조

- 재판장 :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 배석판사 : 재판장과 함께 합의부를 이루는 판사
  - ☞ 합의부는 보통 3인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법정에서 재판장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판사를 '우배석 판사'라고 하고, 왼쪽에 앉아 있는 판사를 '좌배석 판사'라고 한다고 설명함
- 원고 : 법원에 민사재판을 청구한 사람
- 피고 :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
- 소송대리인 : 민사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
- 소장 : 원고가 법원에 민사재판을 청구하면서 처음으로 내는 문서
  - ☞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원고가 청구하는 것(청구취지)과 그와 같이 청구하는 이유(청구원인)가 무엇인지 등이 적혀 있다고 설명함
- 검사 :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사람
- 기소 :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일
- 피고인 :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
- 피의자 :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사람
- 변호인 :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 ☞ 변호인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함
- 국민참여재판 :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 배심원 :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하고, 만일 유죄로 평결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절한 형량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는 사람으로서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됨
- 공소장 :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
  - ☞ 공소장에는 공소 제기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죄명 및 피고인에게 적용한 법률 조문(적용법조) 등이 적혀 있다고 설명함
- 증인 : 법정 등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는 사람
- 증언 : 증인이 한 진술
- 증인신문 :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묻는 행위
- 구형 : 검사가 형사재판에서 피고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

는 것(법원은 검사의 구형을 참고만 할 뿐 이에 구속되지 아니함)

- 법원사무관 : 재판에 참여하여 어떠한 소송절차가 행해졌는가를 기재한 문서(공판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법원공무원
- 법원실무관 : 재판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법원공무원
- 법원경위 : 법정에서 판사가 명령하는 사무를 집행하는 법원공무원
- 인용 :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일(특히 민사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일)
- 기각 :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일(특히 민사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일)
- 승소 : 재판에서 이기는 것
- 패소 : 재판에서 지는 것
- 상소 :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구하는 것
- 항소 : 상소의 일종으로, 제1심 법원의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구하는 것

재판 절차

① 민사재판

② 형사재판 / 국민참여재판

☞ 해당 모의재판과 관련된 재판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함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국민참여재판 안내자료[183] 또는 사법정책연구원이 2015년 상반기에 발간할 예정인 '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 중 국민참여재판 부분을 활용하되, 중학생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의의를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배심원의 자격과 역할, 배심원 선정절차 및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대해서도 적절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183)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안내(2014. 12. 29. 방문) 〈http://help.scourt.go.kr/nm/min_9/min_9_8/index.html〉

각급 법원이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원체험 프로그램에서는 대부분 참여 학생들에게 재판제도와 재판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모의재판은 이러한 교육 이후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모의재판 실시를 위한 민 · 형사 재판절차 일반에 관한 교육이 앞 단계에서 이루어진 교육 내용과 지나치게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교육의 내용과 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모의재판 실시 전 단계에서 재판제도와 재판절차에 대하여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 · 형사 재판절차 일반에 관한 교육을 생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사법정책연구원이 2015년 상반기에 발간하여 각급 법원에 제공할 예정인 '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는 앞서 본 내용들이 대부분 수록될 예정이므로, 모의재판 실시 전에 이루어지는 민 · 형사 재판절차 일반에 관한 교육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 기초적 법리 교육

이 책의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사실인정 중심의 모의재판(mock trial)을 위한 것이므로, 지도관은 모의재판 실시 전 학생들에게 민 ·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사실의 증명정도에 관한 법리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책의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중 · 고등학생이 모의재판을 통하여 민 · 형사 실체법에 관한 기초적인 법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지도관은 모의재판 실시 전 학생들에게 개별 모의재판 시나리오에서 사용된 민 · 형사 실체법에 관한 기초적인 법리에 관하여 교육할 필요도 있다.

이 책에서는 지도관이 모의재판 실시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할 기초적인 법리를 개별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대한 지도안에 수록해 두었다.

(3) 재판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지도

중 · 고등학생들은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재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판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법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관이 모의재판 실시 전 참여 학생들에게 재판의 중요성을 설명

하고 비록 실제 재판은 아니지만, 실제 재판에 임하는 법관, 당사자, 검사, 변호사 및 증인 등의 자세로 모의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6. 배역 선정

모의재판의 배역은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희망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학생이 특정 배역을 맡으려고 경합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협의하도록 하거나, 지도관이 인솔 교사의 조언을 들어 배역을 정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법관, 검사, 변호사의 역할을 선호하고, 피고인이나 원고 · 피고 및 증인의 역할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역할을 맡는 학생들에게는 격려와 함께 간단한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여 학생의 수가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정해진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사와 소송대리인의 수를 줄이거나, 법원사무관, 법원실무관, 법원경위를 제외할 수 있다. 법원경위와 법원사무관 및 법원실무관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지도관이나 법원직원이 이들의 역할을 담당한다.

7. 시나리오 등의 배부 및 소품 교부

지도관은 미리 준비해 둔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따라 배역을 담당한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이 책의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읽어두기, 등장인물, 증거목록 및 관련법규로 이루어진 모두(冒頭) 부분과 모의재판 시연에 필요한 시나리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도관은 모의재판에서 배역을 맡은 학생들에게 모의재판 시나리오의 모두 부분과 시나리오 부분을 배부한다. 공소장, 증인선서서, 증거서류, 증거물 등도 해당 학생에게 교부한다. 이때 지도관은 해당 학생에게 그 소품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예컨대, 지도관이 학생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증거조사 절차

에서 그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시하는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다. 모의재판에 사용되는 공소장, 증인선서서, 증거서류 등은 이 책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지도관은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배심원의 배역을 맡은 학생들 포함)에게는 모의재판 시나리오 중 모두 부분만 배부하고, 시나리오 부분은 배부하지 아니한다. 이는 위 학생들이 모의재판 자체보다 시나리오를 읽는데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고, 변론종결 후 진행되는 재판 결과 예상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지도관은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에게 변론종결 후 예상되는 재판 결과에 관하여 토론을 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참여 학생 결론 방식이나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의재판의 경우에는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이나 배심원의 의견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정해진다는 점을 설명한다.

지도관은 방청석에 있는 학생 등에게 앞서 본 모두 부분과 함께 이 책 부록에 수록된 소장 또는 공소장을 배부할 수도 있다.

II. 실시 중 단계

학생들이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지도관은 학생들이 자신이 맡은 배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보조하고, 모의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개입하여 모의재판 진행 상황을 통제한다.

변론이 종결되고 나면, 지도관은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에게 모의재판 실시 전에 교육한 기초적 법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한 후 예상되는 결론에 관하여 학생들 사이의 토론을 유도한다. 학생들 사이의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도관이 원고와 피고, 검사와 피고인의 역할을 담당한 학생들 사이의 토론을 유도한 후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을 위 토론에 참여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학생들 사이의 토론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이제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자”라고 말한 후 판결선고 절차를 진행한다.

만일, 모의재판이 참여 학생 결론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에

게 해당 모의재판 시나리오용으로 제작된 '모의재판 참여 학생 의견서'를,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배심원 역할을 담당한 학생들에게 '국민참여재판용 평결서'와 '국민참여재판용 양형의견서'를 교부한 후 지도관의 지도 아래 이를 작성하도록 한 후 그에 따라 판결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모의재판 참여 학생 의견서', '국민참여재판용 평결서' 및 '국민참여재판용 양형의견서'는 이 책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III. 실시 후 단계

판결선고를 끝으로 모의재판이 종료되면, 지도관은 학생들에게 모의재판 절차와 재판 결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그 후 지도관은 모의재판 절차와 재판 결과에 관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생들 사이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토론 사항은 가급적 학생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대한 지도안에는 지도관이 모의재판 실시 후 토론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토론 사항을 수록해 두었다.

제3장

모의재판 시나리오별 지도안

제 1 절

중학생용 모의재판 지도안

Ⅰ. 중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Ⅱ. 중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
Ⅲ. 중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2]

I. 중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 제목

수박

2. 사건 유형

민사, 매매대금반환 사건

3. 사건의 요지

가정주부인 원고(최알뜰)는 2014. 7. 1. 남편과 먹을 수박을 구입하기 위해서 피고(남상인)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에 갔다. 원고가 수박을 살까 말까 망설이자, 피고는 맛보기용 수박 중 일부를 칼로 잘라 원고에게 맛을 보게 하였다. 원고는 수박이 달고 맛이 있자 피고에게 "다른 수박도 이렇게 맛있어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는 "그럼요, 지금 우리 가게에서 파는 수박은 모두 달고 맛이 있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계속해서 수박을 살까 말까 망설이자, 피고는 원고에게 "제가 파는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에 비하여 맛이 많이 떨어지면 돈을 돌려드릴 테니 걱정 말고 한 통 사가세요"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구입하는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에 비하여 맛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수박대금을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피고로부터 수박 1통을 2만 원에 구입하였다.

원고는 그날 저녁 수박 중 일부를 잘라 남편과 나누어 먹었는데, 수박은 맛보기용 수박보다 맛이 없게 느껴졌고 남편인 강철수도 수박이 별로 맛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음날 아침 일찍 피고의 과일가게에 먹다 남은 수박을 들고 가서 피고에게 수박을 구입할 당시 약속한 바에 따라 수박 대금 2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에 비하여 맛이 많이 떨어지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던 것은 물건을 살까 말까 망설이는 손님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일 뿐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었고,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과 맛에 큰 차이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수박 대금 2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4. 등장인물

연번	역할	인원
1	재판장 판사 김정의, 판사 이자유, 판사 박평등	3
2	원고 최알뜰	1
3	피고 남상인	1
4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소, 이명석	2
5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유능, 최영민	2
6	증인 강철수(원고의 남편)	1
7	증인 나열심(피고의 전 종업원)	1
8	법원사무관	1
9	법원실무관	1
10	법원경위	1
총 인원		**14명**[184]

5. 증거목록

원고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인 강철수(원고의 남편)	이 사건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에 비하여 맛이 많이 없었음

184) 참여 학생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판사와 소송대리인의 수를 줄이거나, 법원사무관, 법원실무관, 법원경위를 제외할 수 있다. 법원경위나 법원실무관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지도관이나 법원 직원이 이들의 역할을 담당한다.

피고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인 나열심(피고의 전 종업원)	이 사건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과 맛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

6. 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령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판례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의 증명'의 정도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7. 지도방법

(1) 지도의 주안점

- 민사재판 절차 체험
- 민사재판 참여자의 역할 체험
- 민사재판의 사실인정 체험
- 민사상 계약에 관한 기초적인 법리 학습

(2) 준비물

법복, 소장, 증인 선서서

※ 소장과 증인 선서서는 이 책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음

(3) 실시 단계별 지도방법

(가) 실시 전 지도

① 재판절차 일반에 관한 교육

총론에서 본 바와 같이 실시한다(제2장 제3절 Ⅰ. 5. 항 참조).

②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관한 기초적 법리 교육

지도관은 모의재판 실시 전 학생들에게 민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사실의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교육한다.

또한 본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중학생들로 하여금 모의재판을 통하여 민사상 계약과 관련한 기초적인 법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지도관은 이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민사재판에서 사실의 증명 정도

■ 고도의 개연성 증명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지만,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쪽의 증거가 상대방의 증거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해서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일반인이 볼 때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함

■ 증명책임

당사자가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으로서, 증명책임이 있는 자가 증명에 실패하면 패소하게 된다고 설명함

■ 증명책임의 소재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는 중학생 법교육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일반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권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수박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정도만 설명함

민사상 계약에 관한 기초 법리

■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계약 : 두 사람 이상의 의사 합치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사람이 어떤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사표시가 1개이면 단독행위이고 2개 이상이면 계약이라고 풀어서 설명한 후 여러분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행위, 학원에 등록하고 수강하는 행위, 지하철을 이용하는 행위 등은 모두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 계약의 효력

–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마음대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은 신중하게 체결하고 일단 체결한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함

–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 내용을 문서(계약서)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함

– 한쪽 당사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계약도 효력이 있음이 원칙임(민법 제107조 본문)

☞ 민법 제107조 단서의 법리는 중학생의 법교육 수준을 벗어나므로 모의재판 시나리오에서는 다루지 아니하였음(→ 모의재판 시나리오에서 피고가 자신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는 점만 주장하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음)

☞ 학생들의 질문이 있으면, 한쪽 당사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계약이라도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지만,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정도로만 설명함

이 사건은 약정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인바,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는 중학생의 법교육 수준을 넘어서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하지 아니한다.

(나) 실시 중 지도

지도관은 변론종결 후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에게 재판 결과에 관하여 의견을 말해보도록 한 후 원고 승소를 주장하는 학생과 피고 승소를 주장하는 학생들 사이의 토론을 유도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지도관은 학생들에게 민사상 계약과 관련한 기초적인 법리와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 정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하도록 한다.

(다) 실시 후 지도

지도관은 모의재판 종료 후 모의재판 절차와 재판 결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한 다음 학생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한다.

토론 사항

⊙ (민사 조정에 대한 개념을 간략히 설명한 후) 이 사건은 실제 재판에서라면 판결보다는 민사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조정안을 제시하겠는가?

⊙ 법원은 원고의 남편인 증인 강철수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훨씬 맛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법원이 이와 같이 본 이유는 무엇일까?

답변

1. 증인 강철수는 맛보기용 수박을 먹어보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얼마나 맛이 없었는지 알 수 없다.
2. 증인 나열심은 원고의 수박과 맛보기용 수박이 맛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나열심은 원고의 수박과 맛보기용 수박을 모두 먹어보았고,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을 모두 증언하였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도 높다.
3. 강철수와 나열심 모두 이 사건 수박이 겉보기에 잘 익어 보였다고 증언했다.
4. 나열심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수박과 맛보기용 수박은 피고가 같은 날 도매시장에서 구입한 같은 종류의 수박이다.

II. 중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

1. 제목

빼앗긴 스마트폰

2. 사건유형

형사, 공갈 사건

3. 사건의 요지

중학생인 김소심(당시 만 13세, 이하 '피해자'라고 함)은 2014. 7. 1. 22:10경 서울 불광동에 있는 대박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슈퍼스타 A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학원건물 옆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그곳에 있던 20대 초반의 남자(이하 '범인'이라고 함)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너처럼 비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어린 애들을 보면 때려주고 싶다. 오늘은 형이 기분이 좋으니 스마트폰만 주면 곱게 돌려보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스마트폰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즉석에서 지니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슈퍼스타 A 스마트폰 1대를 범인에게 건네주었다. 범인은 스마트폰을 넘겨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주변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범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사실을 가족이나 학교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4. 8. 31.에 이르러서야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의 부모는 2014. 9. 1.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고인(최험악)을 공갈죄로 기소하였다.

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 22:10경 서울 불광동에 있는 대박학원 옆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중학생인 피해자 김소심(당시, 만 13세)을 불러 세운 다음 "너처럼 비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애들을 보면 때려주고 싶다. 오늘은 형이 기분이 좋으니 스마트폰만 주면 곱게 돌려보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스마트폰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슈퍼스타 A 스마트폰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등장인물

연번	역할	인원
1	재판장 판사 김정의, 판사 이자유, 판사 박평등	3
2	검사 문공익, 이예리	2
3	피고인 최험악	1
4	변호인 변호사 김승소, 박유능	2
5	증인 김소심(피해자)	1
6	증인 강포청(경찰관)	1
7	증인 차배포(피고인의 친구)	1
8	법원사무관	1
9	법원실무관	1
10	법원경위	1
총 인원		**14명**[185]

185) 참여 학생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판사와 검사 및 소송대리인의 수를 줄이거나, 법원사무관, 법원실무관 또는 법원경위를 제외할 수 있다. 법원경위나 법원실무관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지도관이나 법원 직원이 이들의 역할을 담당한다.

6. 증거목록

검사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인 김소심(피해자)	증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서 범인을 목격하였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임

피고인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인 강포청(경찰관)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상황
증인 차배포(피고인의 친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 무렵 술에 취해 있었음

7. 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령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판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및 그 적용 범위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동영상제시 · 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 · 가두식별 · 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8. 지도방법

(1) 지도의 주안점

- 형사재판 절차 체험
- 형사재판 참여자의 역할 체험
-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체험
- 공소사실의 증명책임 및 증명정도, 공갈죄,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기초적 법리 학습

(2) 준비물

법복, 공소장, 증인 선서서

※ 공소장과 증인 선서서는 이 책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음

(3) 실시 단계별 지도방법

(가) 실시 전 지도

① 재판절차 일반에 관한 교육

총론에서 본 바와 같이 실시한다(제2장 제3절 Ⅰ. 5. 항 참조).

②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관한 기초적 법리 교육

본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중학생들로 하여금 모의재판을 통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증명책임과 증명정도, 공갈죄,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기초적 법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도관은 모의재판 실시 전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교육한다.

공소사실의 증명책임 및 증명정도

-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함
  - ☞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함[186]

186)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재판장 설명 사례집, 법원행정처(2008), 25.

공갈죄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공갈 : 공갈죄의 수단이 되는 '협박'으로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함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과 올바른 범인식별 절차

-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만나게 하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보여주면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목격자에게 그 용의자나 그 사진 속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줄 수 있으므로, 그러한 방식의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진술은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
  - ☞ 수사기관은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을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에게 보여주거나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들의 사진을 동시에 목격자에게 보여주고 범인을 가리키도록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문서와 사진 등으로 남겨야 한다고 설명함

(나) 실시 중 지도

지도관은 변론종결 후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에게 판결을 예측해 보도록 한 후 유죄판결을 예측하는 학생들과 무죄판결을 예측하는 학생들 사이의 토론을 유도한다. 지도관은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생들에게 공갈죄,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

한 증명책임, 올바른 범인식별 절차에 관한 기초적 법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하도록 한다.

(다) 실시 후 지도

지도관은 모의재판 종료 후 모의재판 절차와 재판 결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한 다음 학생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한다.

토론 사항

⊙ 지도관은 학생들에게,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목격한 증인의 진술이 믿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경우에는 먼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따져보고, 이와 함께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는지 살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하는 데 합리적인 의심이 모두 해소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187] 설명한 후 아래와 같이 질문한다.

1. 일반적으로 목격자의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데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답변

① 목격자가 범인의 용모, 인상착의를 정확하고 충분히 관찰하였는지

☞ 범행현장의 밝기 정도, 범인과 대면한 시간, 얼굴의 특징을 관찰하였는지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

187) 법원행정처(주 186), 34.

② 목격자의 범인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피고인을 확인한 이후에야 이루어졌는지
③ 피고인의 옷차림이나 안경, 모자 등이 범행 당시 범인의 것과 같은지
④ 목격자가 범인을 지목한 방식이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인 방식인지
⑤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되게 된 경위
⑥ 목격자가 범인에 대해 예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⑦ 목격자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을 거치면서 번복되거나 더욱 구체적이고 뚜렷해지는지

2. 법원은 목격자인 증인 김소심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이 이와 같이 본 이유를 앞서 본 고려사항에 따라 설명하시오.

답변

지도관이 앞서 본 고려사항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학생들에게 증인 김소심의 증언이 앞서 본 고려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지를 질문하여 학생들의 답변을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예컨대, 지도관은 앞서 본 첫 번째 고려사항을 언급한 후 학생들에게 "증인 김소심이 범인의 용모, 인상착의를 정확하고 충분히 관찰하였을까요?"라고 질문하여 학생들의 답변을 유도한다.
한 학생이 "증인 김소심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느라 범인의 얼굴을 확실히 보지 못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보면, 증인 김소심이 범인의 용모, 인상착의를 정확하고 충분히 관찰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지도관은 이와 달리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지를 묻는다. 만일 이와 달리 생각하는 학생이 없다면 지도관은 답변을 한 학생을 칭찬하고 학생의 답변에 대하여 적절히 보충 설명을 한 후 다음 고려사항으로 넘어간다. 만일 이와 달리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지도관은 두 학생들 사이의 토론을 유도한다.

3. 일반적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답변

① 피고인의 직업, 전과,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동기가 있는지

② 피고인이 피해품을 숨기거나 처분하였는지
(특히, 범행 후 피해품을 숨기거나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피고인이 피해자가 목격한 것과 같은 모자, 옷, 안경 등을 착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지

④ 범행 당시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행적이 어떠한지

⑤ 피고인이 검거될 당시에 범행 도구를 휴대하거나 피고인의 집, 자동차 등에서 범행 도구가 발견되었는지

4.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답변

지도관이 앞서 본 객관적 정황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학생들에게 피고인에게 그러한 객관적 정황이 있는지를 질문하여 학생들의 답변을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범행 시각 무렵 범행 장소 인근에서 저녁식사를 했던 점 등이 거론될 수 있음

III. 중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2]

1. 제목

한밤의 침입자

2. 사건유형

형사, 살인 사건

3. 사건의 요지[188)]

타이거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피고인(서백호)은 황청용이 경영하는 드래곤 나이트클럽이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할관청에 드래곤 나이트클럽의 위법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드래곤 나이트클럽을 조사하여 2014. 7. 22.자로 영업소 폐쇄 처분[189)]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황청용(남, 50세)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피고인은 2014. 8. 7. 친구인 임걱정으로부터 황청용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사람을 시켜 피고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혼자 살고 있는 자신의 아파트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 거실 탁자에 놓아두었다.

황청용과 그의 친구인 왕의리는 2014. 8. 8. 22:00경 인천 서구 청마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무단 침입하여 피고인을 벽돌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거실 탁자 위에 놓아둔 식칼(칼날길이 22cm)을 집어 들고 황청용의 배를 1회 찔렀다.

188) 인천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01고합8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2노752 판결의 사안을 변형한 것이다.

189)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44조 제1항

왕의리는 현장에서 도망을 쳤고, 식칼에 찔린 황청용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23:00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수사한 후 피고인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

4. 공소사실

피해자 황청용(남, 50세)은 인천 서구에서 드래곤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던 자이고, 왕의리는 피해자의 친구로서 드래곤 나이트클럽에 술을 납품하던 자인바, 피해자와 왕의리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드래곤 나이트클럽의 위법사실을 신고하여 영업소 폐쇄처분이 내려지는 바람에 큰 손실을 입었다.

이에 피해자와 왕의리는 2014. 8. 8. 22:00경 인천 서구 청마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을 여는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어두운 방 안으로 밀어붙인 후 피고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들고 있던 벽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실로 뛰어나가 거실 탁자 위에 놓아둔 칼날 길이 22cm인 식칼을 집어 들어 뒤따라온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 인천 서구 검단로에 있는 황금십자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5. 등장인물

연번	역할	인원
1	재판장 판사 김정의, 판사 이자유, 판사 박평등	3
2	검사 문공익, 이예리	2
3	피고인 서백호	1
4	변호인 변호사 김승소, 박유능	2
5	증인 왕의리(목격자)	1

연번	역할	인원
6	증인 주면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1
7	증인 임걱정(피고인의 친구)	1
8	증인 조세심(의사)	1
9	법원사무관	1
10	법원실무관	1
11	법원경위	1
총 인원		**15명**[190]

6. 증거목록

검사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식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때 사용한 범행도구
증인 왕의리(목격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였음
증인 주면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피해자가 칼에 복부를 찔려 피를 많이 흘린 것이 사망의 원인임 피해자가 칼에 찔린 깊이는 20cm 정도였음

피고인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인 임걱정 (피고인의 친구)	증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전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사람을 시켜 피고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말하였음
증인 조세심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피고인은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고, 다리에도 심하게 멍이 들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머리 부분은 무언가에 심하게 맞아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고 있었음 증인이 피고인의 머리 부분에 대한 봉합수술을 시행하였음 증인이 피고인을 보았을 때 피고인은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음

7. 관련 법령 및 판례

190) 참여 학생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판사와 검사 및 소송대리인의 수를 줄이거나, 법원사무관, 법원실무관 또는 법원경위를 제외할 수 있다. 법원경위나 법원실무관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지도관이나 법원 직원이 이들의 역할을 담당한다.

(1) 법령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판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191]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

191) 정당방위는 중학생들에게도 비교적 익숙한 법률용어이다. 법무부가 발행한 청소년 법교육 교재인 '청소년의 법과 생활'에서도 정당방위의 개념과 간단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법무부, 청소년의 법과 생활, 법무부(2013), 176.].

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처벌되지 아니하는 과잉방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위 행위가 당시 야간에 술에 취한 피해자의 불의의 행패와 폭행으로 인한 불안스러운 상태에서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에 기인된 것이라면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은 무죄이다(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도2380 판결).

8. 지도방법

(1) 지도의 주안점

- 형사재판 절차 체험
- 형사재판 참여자의 역할 체험
-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체험
- 공소사실의 증명책임 및 증명정도, 살인죄, 정당방위, 과잉방위, 처벌되지 아니하는 과잉방위에 관한 기초적 법리 학습

(2) 준비물

법복, 공소장, 증인 선서서, 모형 칼[192)]

※ 공소장과 증인 선서서는 이 책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음

(3) 실시 단계별 지도방법

(가) 실시 전 지도

192) 모형 칼은 30cm 자 등으로 대신해도 무방함

① 재판절차 일반에 관한 교육

총론에서 본 바와 같이 실시한다(제2장 제3절 Ⅰ. 5. 항 참조).

②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관한 기초적 법리 교육

본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중학생들로 하여금 모의재판을 통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증명책임과 증명정도, 살인죄, 정당방위, 과잉방위, 처벌되지 아니하는 과잉방위에 관한 기초적 법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도관은 모의재판 실시 전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교육한다.

공소사실의 증명책임 및 증명정도

-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함
  - ☞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함[193]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와 야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와 야간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검사가 입증해야 함

살인죄

- 다른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193) 법원행정처(주 186), 25.

■ 피고인에게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사망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였을 때에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함

■ 법정형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정당방위

■ 개념[194)]

자기나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위법한 침해를 가해 온 상대방에게 부득이하게 반격하는 행위

■ 요건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법한 침해를 가할 것

②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를 당하는 동안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어행위를 할 것(현재성 요건)

☞ 상대방이 칼로 찌르려고 하자 각목으로 상대방을 때리고 칼을 빼앗았다면 이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의 칼을 빼앗고 상대방을 제압한 이후 상대방을 때리는 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설명

③ 방어행위가 상대방의 침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일 것(상당성 요건)

☞ 방어행위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상대방에게 적은 피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상대방의 침해가 중하다면 피고인도 상대방에게 중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이지만, 상대방의 침해가 약한데도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중한 피해를 입힌다면 상당한 정도의 방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

■ 효과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음 = 무죄

194) 법원행정처(주 186), 44.

과잉방위[195]

■ 개념

자기나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위법한 침해를 가해 온 상대방에게 부득이하게 반격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것

■ 요건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법한 침해를 가할 것

②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를 당하는 동안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어행위를 할 것(현재성 요건)

③ 방어행위가 상대방의 침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를 넘어설 것(상당성 요건 결여)

☞ 정당방위의 3가지 요건 중 ③번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함

■ 효과

과잉방위가 인정되면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됨 = 유죄

단,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처벌되지 아니하는 과잉방위[196]

■ 개념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는 해당하지만, 행위 당시 야간이었다든지 그에 버금갈 정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거나 소스라치게 놀랐거나 비정상적으로 흥분, 당황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불처벌 과잉방위'라고 함

■ 효과

불처벌 과잉방위에 해당하면 피고인을 벌하지 아니함 = 무죄

---

195) 법원행정처(주 186), 45.

196) 법원행정처(주 186), 46.

지도관의 설명만으로는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및 처벌되지 아니하는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학생들이 있더라도 "지금 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의재판을 지켜보면 설명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학생들을 격려한 후 일단 모의재판을 실시하고, 모의재판 종료 후 이러한 법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도록 한다.

(나) 실시 중 지도

지도관은 변론종결 후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에게 판결을 예측해 보도록 한 후 유죄판결을 예측하는 학생들과 무죄판결을 예측하는 학생들 사이의 토론을 유도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지도관은 학생들에게 살인죄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정당방위, 과잉방위, 처벌되지 아니하는 과잉방위에 관한 기초적 법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한다.

(다) 실시 후 지도

지도관은 모의재판 종료 후 모의재판 절차와 재판 결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한 다음 학생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한다.

학생들이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범죄에 대한 잘못된 자기방어적 논리를 펴는 경우, 지도관은 토론에 개입하여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함으로써 해당 학생으로 하여금 잘못된 논리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토론 사항

⊙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다.**

(지도관은 적절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아래 내용을 제시함)

> A씨는 새벽 3시에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B가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찾고 있었다.
>
> A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B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렸다. B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망을 하려 하자 A는 B의 뒤통수를 수 회 걷어차고, 집안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린 다음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
> B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1.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가?
2.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학생에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학생에게)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다음은 위 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결을 보도한 신문기사이다.**

(지도관은 적절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아래 내용을 제시함)

> **집에 든 도둑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실형**
>
> 자신의 집에 든 도둑을 빨래 건조대와 벨트 등으로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 ○○판사는 최근 자신의 집에 침입해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빨래 건조대와 벨트,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혐의로 기소된 A모씨(2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모씨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던 B모씨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는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했으며, 허리띠를 풀어 때렸다"며 "피해자를 사실상 식물인간[197]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써 한도를 넘어서 정당방위나 방위행위가 초과된 경우에 해당한 경우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범행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며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 형은 당시 피해자의 병원비 등에 책임을 느끼고 자살을 했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하 생략)

〈법률신문 2014년 10월 24일 자〉

1. 위 판결 후 우리 사회에서는 A모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지금보다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정당방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면 법질서가 흔들린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지금처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여러분은 어느 쪽 주장을 지지하는가?
2. (양측에 대하여) 그와 같이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97) 피해자는 2014. 12. 25. 사망하였다["도둑 뇌사 사건 끝내 숨져...과잉 방어인가 정당 방위인가", 세계일보 인터넷판(2014. 12. 27.자) (2014. 12. 28. 방문)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2/27/20141227000188.html?OutUrl=naver〉].

제 2 절

고등학생용 모의재판 지도안

Ⅰ. 고등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
Ⅱ. 고등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2]
Ⅲ. 고등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1], [1-2]

I. 고등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

1. 제목

내 사랑 보배

2. 사건유형

민사, 손해배상 사건

3. 사건의 요지[198)]

원고(정애견, 40세)는 2014. 8. 16. 17:30경 자신의 집 근처 공터에서 그 소유인 애완견 보배(시추, 3세)를 데리고 걷고 있었다. 피고(서경솔, 45세)는 위 공터에 주차시켜 둔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발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원고의 뒤쪽에서 뛰어다니고 있던 보배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보배의 오른쪽 앞다리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보배는 오른쪽 앞다리가 부러졌다. 원고는 집 근처 동물병원에서 보배의 다리를 치료받고 그 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보배가 다치는 바람에 위와 같이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치료비 300만 원과 위자료 700만 원을 합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98) 서울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10가단414531 판결의 사안을 변형한 것이다.

4. 등장인물

연번	역할	인원
1	재판장 판사 김정의, 판사 이자유, 판사 박평등	3
2	원고 정애견	1
3	피고 서경솔	1
4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소, 이명석	2
5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유능, 최영민	2
6	증인 강직한(사고 목격자)	1
7	증인 최양심(동물병원 의사)	1
8	법원사무관	1
9	법원실무관	1
10	법원경위	1
총 인원		**14명**[199]

5. 증거목록

원고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인 최양심 (동물병원 의사)	보배가 피고의 잘못 때문에 다쳤고, 원고가 보배의 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음

피고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인 강직한 (이 사건 사고 목격자)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임

6. 관련 법령 및 판례

199) 참여 학생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판사와 검사 및 소송대리인의 수를 줄이거나, 법원사무관, 법원실무관 또는 법원경위를 제외할 수 있다. 법원경위나 법원실무관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지도관이나 법원 직원이 이들의 역할을 담당한다.

(1)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2) 판례

사고로 훼손된 물건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의 증명'의 정도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7. 지도방법

(1) 지도의 주안점

- 민사재판 절차 체험
- 민사재판 참여자의 역할 체험
- 민사재판의 사실인정 체험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관한 기초적인 법리 학습

(2) 준비물

법복, 소장, 증인 선서서, 모의재판 참여 학생 의견서 양식

※ 소장, 증인 선서서 및 모의재판 참여 학생 의견서 양식은 이 책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음

(3) 실시 단계별 지도방법

(가) 실시 전 지도

① 재판절차 일반에 관한 교육

총론에서 본 바와 같이 실시한다(제2장 제3절 Ⅰ. 5. 항 참조).

②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관한 기초적 법리 교육

지도관은 모의재판 실시 전 학생들에게 민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사실의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교육한다.

또한, 본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모의재판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관한 기초적인 법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도관은 학생들에게 본 모의재판은 학생들이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도 교육한다.

민사재판에서 사실의 증명 정도

■ 고도의 개연성 증명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지만,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쪽의 증거가 상대방의 증거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해서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일반인이 볼 때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함

■ 증명책임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으로서,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증명에 실패하면 패소하게 된다는 정도로만 설명함

■ 증명책임의 소재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는 고등학생 법교육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일반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권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하여 증명해야 한다는 정도만 설명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기초적 법리

■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의 개념

–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한 행위

– 손해배상책임 :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실상계)

피해자의 잘못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야 함

☞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오늘 실시되는 모의재판을 지켜보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판단해야 한다고 알려줌

■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재산적 손해액

– 원칙 : 사고로 망가진 물건의 수리비가 물건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물건을 망가뜨린 사람은 물건의 시가만 지급하면 됨

– 예외 : 물건의 값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물건을 수리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의 위자료

– 원칙 :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음

– 예외 :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음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에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지만, 지도관의 설명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학생들이 있더라도 "지금 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의재판을 지켜보면 설명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학생들을 격려한 후 일단 모의재판을 실시하고, 모의재판 종료 후 이러한 법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도록 한다.

(나) 실시 중 지도

모의재판 지도관은 변론종결 후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 위자료의 액수 등에 대한 토론을 유도한 다음 별도로 마련된 양식에 따라 '모의재판 참여 학생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참여 학생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판결이 선고되도록 지도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지도관은 학생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기초적 법리와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 정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하도록 한다.

(다) 실시 후 지도

지도관은 모의재판 종료 후 모의재판 절차와 재판 결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한 다음 학생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한다.

토론 사항

⊙ (오늘 실시한 모의재판이 실제 사건을 토대로 한 것임을 설명함)
법원은 모의재판에서 다룬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하여 판결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1. 법원은 실제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얼마로 보았을까?
   ☞ 법원은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보았음

2. 여러분은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는가?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에 대해 각각 손을 들어보도록 함)

3.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에게)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4. 법원은 실제 사건에서 피고의 위자료를 얼마로 정했을까?
   ☞ 법원은 피고의 위자료를 20만 원으로 정했음

5. 여러분은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는가?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에 대해 각각 손을 들어보도록 함)

6.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에게)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이 생각하는 위자료의 액수는 얼마인가?

II. 고등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2]

1. 제목

내 꿈은 가수

2. 사건 유형

민사, 학원비반환 사건

3. 사건의 요지

원고(장고운, 만 18세)는 가수가 되기를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원고는 부모의 동의 없이 2014. 2. 1. 피고(김조련)가 운영하는 꾀꼬리 노래학원에서 매달 10만 원을 학원비로 지급하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노래수업을 받아 왔다.

원고의 아버지인 장엄한와 어머니인 박자애는 원고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별다른 이유 없이 늦게 들어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다가 2014. 4. 30. 저녁 원고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원고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피고의 노래학원에서 노래수업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원고의 부모는 원고에게 노래학원을 그만두고 이미 지급한 학원비를 환불받아 오도록 했다.

원고는 2014. 5. 1. 피고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2014. 2. 1.부터 2014. 4. 30.까지의 학원비 30만 원(=10만 원×3개월)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학원에 등록할 당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해서 이를 믿고 노래를 가르쳤던 것이므로 학원비를 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학원비 3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다.

4. 등장인물

연번	역할	인원
1	재판장 판사 김정의, 판사 이자유, 판사 박평등	3
2	원고 장고운 원고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박자애	2
3	피고 김조련	1
4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소, 이명석	2
5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유능, 최영민	2
6	증인 진우정(원고의 고등학교 선배, 현 대학생)	1
7	증인 나성실(피고의 직원)	1
8	법원사무관	1
9	법원실무관	1
10	법원경위	1
총 인원		**15명**[200]

5. 증거목록

원고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인 진우정 (원고의 고등학교 선배, 현 대학생)	원고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인 나성실(피고의 직원)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에게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였음

200) 참여 학생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판사와 검사 및 소송대리인의 수를 줄이거나, 법원사무관, 법원실무관 또는 법원경위를 제외할 수 있다. 법원경위나 법원실무관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지도관이나 법원 직원이 이들의 역할을 담당한다.

6. 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령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판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71666, 71673 판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 · 지능 · 직업 · 경력, 법정대리인과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 · 체결경위 · 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71666, 71673 판결).

민법 제17조의 속임수의 의미 및 증명책임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민법 제17조 소정의 미성년자가 사술을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자인 상대방 측에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의 증명'의 정도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증거공통의 원칙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인정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358 판결).

7. 지도방법

(1) 지도의 주안점

- 민사재판 절차 체험
- 민사재판 참여자의 역할 체험
- 민사재판의 사실인정 체험
-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에 관한 기초적인 법리 학습

(2) 준비물

법복, 소장, 증인 선서서

※ 소장과 증인 선서서는 이 책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음

(3) 실시 단계별 지도방법

(가) 실시 전 지도

① 재판절차 일반에 관한 교육

총론에서 본 바와 같이 실시한다(제2장 제3절 Ⅰ. 5. 항 참조).

②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관한 기초적 법리 교육

지도관은 모의재판 실시 전 학생들에게 민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사실의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교육한다.

또한, 본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모의재판을 통하여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에 관한 기초적인 법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지도관은 이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에서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하지만 지도관의 설명만으로는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학생들이

있더라도 “지금 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의재판을 지켜보면 설명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학생들을 격려한 후 일단 모의재판을 실시하고, 모의재판 종료 후 이러한 법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도록 한다.

민사재판에서 사실의 증명 정도

■ 고도의 개연성 증명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지만,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쪽의 증거가 상대방의 증거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해서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일반인이 볼 때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함

■ 증명책임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으로서, 증명책임이 있는 자가 증명에 실패하면 패소하게 된다는 정도로만 설명함

■ 증명책임의 소재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는 고등학생 법교육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일반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권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학원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학원비를 지급하였으며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정도만 설명함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

■ 미성년자의 개념

– 민법상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됨

– 미성년자는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임

– 단, 미성년자라도 법률상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봄

■ 법률행위와 행위능력의 개념

–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사람이 어떤 법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사표시가 1개이면 단독행위이고 2개 이상이면 계약이라고 풀어서 설명한 다음, 유언을 하는 행위, 채무를 면제하는 행위 등은 단독행위이고,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행위, 학원에 등록하고 수강하는 행위, 지하철을 이용하는 행위 등이 계약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 행위능력 : 혼자서도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묵시적 동의도 가능함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하면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됨

– 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이러한 행위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

①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민법 제5조)

☞ 아무런 부담 없이 증여를 받는 경우를 예로 설명함

② 부모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민법 제6조)

☞ 미성년자가 부모에게서 받은 용돈으로 간식을 사 먹는 행위

☞ 묵시적 처분 허락도 가능하다는 점을 간략히 설명함

■ 취소권의 행사

– 취소권자 :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취소의 효력 : 법률행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됨

미성년자와 상대방은 서로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함

– 반환의 범위 : 상대방은 받은 것을 전부 반환해야 하지만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범위(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됨

(나) 실시 중 지도

지도관은 변론종결 후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에게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해보도록 한 후 원고 승소를 주장하는 학생과 피고 승소를 주장하는 학생들 사이의 토론을 유도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지도관은 학생들에게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기초적인 법리와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 정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하도록 한다.

(다) 실시 후 지도

지도관은 모의재판 종료 후 모의재판 절차와 재판 결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한 다음 학생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한다.

토론 사항

⊙ 민법은 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을까?

답변

사회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제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답변

거래의 안전이 희생됨

☞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미성년자나 그 부모가 그 효과를 원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됨 또한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상대방은 미성년자로부터 받았던 것은 모두 반환해야 하

지만, 미성년자에게 준 것은 모두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게 됨

⊙ 이러한 제도는 미성년자 본인에게 항상 유리한가?

답변

미성년자의 사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사회 경험과 판단 능력이 성인보다 훨씬 뛰어나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성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불안한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거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 미성년자라도 사전에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함

III. 고등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1], [1-2]

1. 제목

도둑맞은 점퍼

2. 사건유형

형사, 절도 사건

3. 사건의 요지[201)]

이하얀은 2014. 2. 27. 16: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화이트 빌딩 1층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깨끗한 세탁소' 전면 유리창 옆에 앉아 다림질을 하고 있던 중 유리창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밖을 쳐다보았다. 이하얀은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세탁소 처마 앞쪽에 설치한 철봉으로 만든 옷걸이에 걸려 있던 점퍼 1벌을 손으로 낚아채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고 "야, 옷 가져간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하얀과 함께 세탁소 안에서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던 강질풍은 어머니인 이하얀의 외침을 듣자마자 곧바로 세탁소 밖으로 뛰쳐나가 위 세탁소부터 200m가량을 범인을 쫓아가다가 '대박마트' 근처에서 범인을 놓쳤다.

강질풍은 '대박마트' 주변에서 범인을 찾아다니다가, 범인을 놓친 때로부터 약 10~15분이 지났을 무렵 흰색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박마트 앞 도로를 지나가는 피고인(한건강)의 얼굴과 상의를 보고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판단하였다. 강질풍은 "도둑놈, 거기 서라"라고 소리 지르며 승용차를 뒤쫓았으나 잡지 못하고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기억해 두었

201) 대전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7고정160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6. 12. 선고 2008노570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582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8노3069 판결의 사안을 다소 변형한 것이다.

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정덕화에게 차량번호를 알려주었다.

정덕화는 경찰청으로부터 그 차량번호의 승용차 소유자인 피고인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8:30경 관악경찰서 봉천지구대 사무실에서 이하얀과 강질풍에게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은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하얀과 강질풍은 정덕화에게 "사진 속의 인물이 범인인 것 같다"라고 대답하였고, 같은 날 19:30경 봉천지구대로 온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고 나서 "이 사람이 범인이 틀림없다"라고 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고인을 절도죄로 기소하였다.

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16: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화이트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이하얀이 운영하는 '깨끗한 세탁소' 앞에서 세탁소 처마 앞쪽에 설치한 철봉으로 만든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을 손으로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다.

5. 등장인물

(1) 시나리오 [1-1]

연번	역할	인원
1	재판장 판사 김정의, 판사 이자유, 판사 박평등	3
2	검사 문공익, 이예리	2
3	피고인 한건강[202]	1
4	변호인 변호사 김승소, 박유능	2
5	증인 이하얀(피해자)	1
6	증인 강질풍(목격자)	1

202) 피고인의 역할은 목이 길고 마른 체형의 학생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번	역할	인원
7	증인 정덕화(경찰관)	1
8	증인 나의리(피고인의 친구)	1
9	법원사무관	1
10	법원실무관	1
11	법원경위	1
총 인원		**15명**[203]

(2) 시나리오 [1-2]

연번	역할	인원
1	재판장 판사 김정의, 판사 이자유, 판사 박평등	3
2	검사 문공익, 이예리	2
3	피고인 한건강[204]	1
4	변호인 변호사 김승소, 박유능	2
5	증인 이하얀(피해자)	1
6	증인 강질풍(목격자)	1
7	증인 정덕화(경찰관)	1
8	증인 나의리(피고인의 친구)	1
9	법원사무관	1
10	법원실무관	1
11	법원경위	1
12	배심원[205]	9[206]
총 인원		**24명**

203) 참여 학생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판사와 검사 및 소송대리인의 수를 줄이거나, 법원사무관, 법원실무관 또는 법원경위를 제외할 수 있다. 법원경위나 법원실무관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지도관이나 법원 직원이 이들의 역할을 담당한다.

204) 피고인의 역할은 목이 길고 마른 체형의 학생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5) 절도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고등학생들이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음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206) 법정형이 사형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이므로, 지도관은 참여 학생 수와 실시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심원의 수를 적절히 정할 수 있고,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 전부를 배심원으로 해도 무방하다.

6. 증거목록

검사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범행현장 약도	이 사건 범행현장 주변의 도로와 주요 건물들의 위치
증인 이하얀(피해자)	피고인이 이 사건 점퍼를 절취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
증인 강질풍(목격자)	증인은 이 사건 직후 도망가는 범인을 추적하였고, 그 범인이 피고인임

피고인 측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인 정덕화(경찰관)	이하얀과 강질풍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증인 나의리(피고인의 친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에 증인과 함께 있었음

7. 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판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및 그 적용 범위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동영상제시 · 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 · 가두식별 · 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되는 경우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8. 지도방법

(1) 지도의 주안점

▶시나리오 [1-1]
- 형사재판 절차 체험
- 형사재판 참여자의 역할 체험
-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체험
- 공소사실의 증명책임 및 증명정도, 절도죄,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기초적 법리 학습

▶시나리오 [1-2]
- 시나리오 [1-1]의 지도의 주안점과 동일함
- 국민참여재판 절차 및 배심원의 역할 체험

(2) 준비물

▶시나리오 [1-1]

법복, 공소장, 증인 선서서, 범행현장 약도

※ 공소장과 증인 선서서 및 범행현장 약도는 이 책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음

▶시나리오 [1-2]

시나리오 [1-1]의 준비물 및 배심원 선서서, 평결서, 양형의견서

※ 공소장, 증인 선서서, 범행현장 약도, 배심원 선서서, 평결서 및 양형의견서는 이 책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음

(3) 실시 단계별 지도방법

(가) 실시 전 지도

① 재판절차 일반에 관한 교육

총론에서 본 바와 같이 실시한다(제2장 제3절 Ⅰ. 5. 항 참조).

시나리오 [1-2]를 실시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하여 더욱 상세히 교육한다.

②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관한 기초적 법리 교육

본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모의재판을 통하여 공소사실의 증명책임 및 증명정도, 절도죄,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기초적 법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도관은 모의재판 실시 전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교육한다.

공소사실의 증명책임 및 증명정도

-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함
  - ☞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함[207]

절도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타인의 재물 :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
- 절취 :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
- 법정형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7) 법원행정처(주 186), 25.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과 올바른 범인식별 절차

-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만나게 하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보여주면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목격자에게 그 용의자나 그 사진 속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줄 수 있으므로, 그러한 방식의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진술은 믿기 어려움
  - ☞ 수사기관은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을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에게 보여주거나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들의 사진을 동시에 목격자에게 보여주고 범인을 가리키도록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문서와 사진 등으로 남겨야 한다고 설명함
- 다만 예외적으로,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됨
  - ☞ 어떤 사건에서 이러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아니하다고 설명함

(나) 실시 중 지도

▶시나리오 [1-1]

모의재판 지도관은 변론종결 후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 중 유죄판결을 예측하는 학생들과 무죄판결을 예측하는 학생들 사이의 토론을 유도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별도로 마련된 양식에 따라 '모의재판 참여 학생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유 · 무죄에 관한 참여 학생 다수의 의견에 따라 판결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

도관은 학생들에게 절도죄,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기초적 법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한다.

▶시나리오 [1-2]

모의재판 지도관은 배심원 역할을 담당한 학생들에게 평의 및 평결의 절차를 설명한 후 평의 및 평결을 지도한다. 재판부가 의견을 진술해야 하는 경우 지도관이 재판부에 갈음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그 후 지도관은 학생들로 하여금 별도로 마련된 양식에 따라 '평결서' 및 '양형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그에 따라 판결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지도관은 학생들에게 절도죄,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기초적 법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한다.

(다) 실시 후 지도

지도관은 모의재판 종료 후 모의재판 절차와 재판 결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한 다음 학생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한다.

토론 사항

⊙ **지도관은 학생들에게,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믿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경우에는 먼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따져보고, 이와 함께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는지 살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하는 데 합리적인 의심이 모두 해소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208] 설명한 후 아래와 같이 질문한다.**

208) 법원행정처(주 186), 34.

1. 일반적으로 목격자의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데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답변

① 목격자가 범인의 용모, 인상착의를 정확하고 충분히 관찰하였는지

☞ 범행현장의 밝기 정도, 범인과 대면한 시간, 얼굴의 특징을 관찰하였는지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

② 목격자의 범인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피고인을 확인한 이후에야 이루어졌는지

③ 피고인의 옷차림이나 안경, 모자 등이 범행 당시 범인의 것과 같은지

④ 목격자가 범인을 지목한 방식이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인 방식인지

⑤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되게 된 경위

⑥ 목격자가 범인에 대해 예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⑦ 목격자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을 거치면서 번복되거나 더욱 구체적이고 뚜렷해지는지

2. 이 사건에서 증인 이하얀과 증인 강질풍의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답변

앞서 본 고려사항들을 중심으로 질의 응답 및 토론을 진행함

☞ 진행방식은 제3장 제1절 Ⅱ항 토론사항 참조

3. 일반적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답변

① 피고인의 직업, 전과,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동기가 있는지

② 피고인이 피해품을 숨기거나 처분하였는지

(특히, 범행 후 피해품을 숨기거나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피고인이 피해자가 목격한 것과 같은 모자, 옷, 안경 등을 착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지

④ 범행 당시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행적이 어떠한지

⑤ 피고인이 검거될 당시에 범행 도구를 휴대하거나 피고인의 집, 자동차 등에서 범행 도구가 발견되었는지

4.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답변

앞서 본 객관적인 정황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함

☞ 진행방식은 제3장 제1절 Ⅱ항 토론사항 참조

퀴즈 및 토론 사항 – 시나리오 [1–2]

⊙ **지도관은 학생들에게 아래 문항들이 배심원의 자격과 권리 ·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서 맞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정답을 맞힌 학생들과 다른 학생들에게 그에 대한 이유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함**

1. 다음 사람은 배심원이 될 수 있을까?

① 만 19세가 된 대학생

② 대통령

③ 국회의원

④ 판사, 검사

⑤ 변호사, 법무사

⑥ 군인, 경찰

⑦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답변 모두 배심원이 될 수 없다.

☞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배심원이 되는 데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지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제18조는 배심원 결결사유와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배심원은 법정에서 증인과 피고인에게 직접 신문을 할 수 있을까?

답변 할 수 없음(같은 법률 제41조 제1항 제1호)

이는 배심원이 갑자기 직접 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임[209]

그 대신 배심원은 증인과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3. 배심원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도 평의에 활용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필기를 할 수 있을까?

답변 할 수 없음(같은 법률 제41조 제1항 제2호)

이는 배심원이 필기하는 데 지나치게 몰두하여 재판의 진행이나 증인의 증언에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210]

4. 배심원은 배심원으로 선정된 후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다른 배심원에게 자신의 견해를 밝혀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배심원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아니하고 다른 배심원과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의논을 할 수는 있을까?

답변 할 수 없음(같은 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

배심원이 잘못된 예단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여 평결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211]

209)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2007. 12.), 95.
210) 법원행정처(주 209), 97.
211) 법원행정처(주 209), 97.

부록

모의재판 지도용 자료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중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실시용

소 장

원 고 최알뜰[212)]
서울 ○○구 ○○로[213)]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소, 이명석
서울 ○○구 ○○로
전화 : 02-000-0000, e-mail : kss@mtrial.co.kr

피 고 남상인
서울 ○○구 ○○로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만 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가정주부인 원고는 2014년 7월 1일 과일가게를 경영하는 피고로부터 수박 1통을 2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맛이 많이 떨어지면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수박은 맛보기용 수박에 비하여 훨씬 맛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한 약속에 따라 원고에게 수박 값 2만 원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첨부서류

(생략)

2014. .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소 ㊞
변호사 이명석 ㊞

○○지방법원 귀중

212) 교육용 소장이므로 주민등록번호 등은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13) 교육용 소장이므로 구체적인 주소는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소 장

원 고 정애견[214)]
부산 ○○구 ○○로[215)]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소, 이명석
부산 ○○구 ○○로
전화 : 051-000-0000, e-mail : kss@mtrial.co.kr

피 고 서경솔
부산 ○○구 ○○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피고는 2014년 8월 16일 오후 5시 30분경 집 근처 공터에 주차시켜 둔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발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원고의 애완견 보배의 오른쪽 앞다리를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보배는 오른쪽 앞다리가 부러졌고, 원고는 동물병원에서 보배를 치료하느라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가족과 다름없는 보배가 다쳐서 고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배의 치료비 300만 원과 위자료 700만 원을 합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첨부서류

(생략)

2014. .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소 ㊞
변호사 이명석 ㊞

○○지방법원 귀중

214) 교육용 소장이므로 주민등록번호 등은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15) 교육용 소장이므로 구체적인 주소는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소 장

원 고 장고운[216)]
서울 ○○구 ○○로[217)]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장엄한, 모 박자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소, 이명석
서울 ○○구 ○○로
전화 : 02-000-0000, e-mail : kss@mtrial.co.kr

피 고 김조련
서울 ○○구 ○○로

학원비반환 청구의 소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원고는 2014년 2월 1일 꾀꼬리 노래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에게 매달 10만 원을 학원비로 지급하고 일주일에 2회 노래수업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14년 4월 30일까지 3개월 간 노래수업을 받으면서 학원비로 총 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14년 2월 1일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218)] 학원 수강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이유로 위 학원 수강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학원비 3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첨부서류

(생략)

2014. .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소 ㊞
변호사 이명석 ㊞

○○지방법원 귀중

216) 교육용 소장이므로 주민등록번호 등은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17) 교육용 소장이므로 구체적인 주소는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18)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은 피고가 주장해야 하지만, 교육용 모의재판 시나리오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도 이를 주장하는 것으로 하였다.

중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1] 실시용

○○지 방 검 찰 청

2014.　　.　　.

사건번호　2014년 형제 2000호
수 신 자　○○지방법원
제　　목　**공소장**
　　검사 정의감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최험악(920909 – * * * * * * *), 22세
　　직업　대학생
　　주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219)]
　　등록기준지　서울 은평구 불광로
죄　　명　공갈
적용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구속여부　불구속
변 호 인　변호사 김승소, 박유능

II.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 22:10경 서울 불광동에 있는 대박학원 옆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중학생인 피해자 김소심(당시, 만 13세)을 불러 세운 다음 "너처럼 비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애들을 보면 때려주고 싶다. 오늘은 형이 기분이 좋으니 스마트폰만 주면 곱게 돌려보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스마트폰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슈퍼스타 A 스마트폰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III. 첨부서류

(생략)

검사 정 의 감 ㊞

219) 교육용 공소장이므로 구체적인 주소는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검찰청

2014.　　.　　.

사건번호　2014년 형제 2000호
수 신 자　○○지방법원
제　　목　**공소장**
　　검사 정의감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서백호(720309-＊＊＊＊＊＊＊), 42세
　　직업　나이트클럽 운영
　　주거　인천 서구 청마로[220]
　　등록기준지　부산 금정구 중앙로
죄　　명　살인
적용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구속여부　불구속
변 호 인　변호사 김승소, 박유능

II. 공소사실

피해자 황청용(남, 50세)은 인천 서구에서 드래곤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던 자이고, 왕의리는 피해자의 친구로서 드래곤 나이트클럽에 술을 납품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드래곤 나이트클럽의 불법영업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관청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관할관청은 조사 후 드래곤 나이트클럽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 때문에 피해자와 왕의리는 큰 손실을 입었다.

이에 피해자와 왕의리는 2014. 8. 8. 22:00경 인천 서구 청마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을 여는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어두운 방안으로 밀어 붙인 후 피고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들고 있던 벽돌로

220) 교육용 공소장이므로 구체적인 주소는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실로 뛰어나가 거실 탁자 위에 놓아둔 칼날 길이 22cm인 식칼을 집어 들어 뒤따라온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 인천 서구 검단로에 있는 황금십자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III. 첨부서류

(생략)

검사 정 의 감 ㊞

○○지 방 검 찰 청

2014.　　.　　.

사건번호　2014년 형제 2000호
수 신 자　○○지방법원
제　　목　**공소장**
　　검사 정의감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한건강(880201-＊＊＊＊＊＊＊), 26세
　　직업　대학원생
　　주거　서울 동작구 사당로[221)]
　　등록기준지　대전 서구 삼천로
죄　　명　절도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 호 인　변호사 김승소, 박유능

II.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16: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화이트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이하얀이 운영하는 '깨끗한 세탁소' 앞에서 세탁소 처마 앞쪽에 설치한 철봉으로 만든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을 손으로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다.

III. 첨부서류

(생략)

검사　정 의 감 ㊞

221) 교육용 공소장이므로 구체적인 주소는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3 민사재판용 증인 선서서 양식[222)]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 (또는 서명)

222) 전산양식 A1670

4 형사재판용 증인 선서서 양식[223)]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

223) 전산양식 B2507

| 고등학생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 실시용 |

모의재판 참여 학생 의견서

사건번호 2014가합1000호
원　　고 정애견
피　　고 서경솔

모의재판 참여 학생 (　　)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 음

피고는 공터에 주차해 둔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발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보배의 오른쪽 앞다리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도 보배를 데리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주차장을 거닐 때 보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1. 당신이 판사라면 전체 책임비율을 100%로 볼 때 원고와 피고가 부담해야 할 책임비율을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예 : 20% : 80%)

   □ 원고의 책임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 = (　　:　　)

2. 당신이 판사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란의 □에 ∨표시를 하십시오)

   □ 책임이 있다.　　□ 책임이 없다.

3. (2.항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에 대하여)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경위, 보배가 입은 부상의 정도, 보배가 완전히 치료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당신이 판사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얼마로 결정하겠습니까?

   □ 금 (　　)만 원

모의재판 참여 학생 의견서

사건번호 2014고합1000호
피 고 인 한건강

모의재판 참여 학생 (　　)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 음

☐ 공소사실 요지, 죄명 및 적용법조
- 피고인은 2014. 2. 27. 16: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화이트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이하얀이 운영하는 '깨끗한 세탁소' 앞에서 세탁소 처마 앞쪽에 설치한 철봉으로 만든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을 손으로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다.
- 절도죄
- 형법 제329조(절도)

☐ 결론 (해당란의 ☐에 V 표시를 하십시오)

☐ 유죄
☐ 무죄

☐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아래 빈칸에 간략히 기재하십시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선 서 서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하게 평결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배심원

224) 전산양식 A1670

| 고등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1-2] 실시용 |

평결서

사건번호 2014고합1000호
피 고 인 한건강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다음과 같이 평결합니다.

다 음

□ 공소사실 요지, 죄명 및 적용법조
- 피고인은 2014. 2. 27. 16: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화이트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이하얀이 운영하는 '깨끗한 세탁소' 앞에서 세탁소 처마 앞쪽에 설치한 철봉으로 만든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을 손으로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다.
- 절도죄
- 형법 제329조(절도)

□ 평결
※ 유 · 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만장일치로 평결합니다.
유 · 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다수결로 유 무죄의 평결을 하여야 합니다.

- 유죄 : _____명
- 무죄 : _____명

2014. . .

배심원 대표 _____ 번 _____(서명 또는 날인)

배심원 _____ 번 _____ (서명 또는 날인)

배심원 _____ 번 _____ (서명 또는 날인)

배심원 _____ 번 _____ (서명 또는 날인)

배심원 _____ 번 _____ (서명 또는 날인)

배심원 _____ 번 _____ (서명 또는 날인)

배심원 _____ 번 _____ (서명 또는 날인)

배심원 _____ 번 _____ (서명 또는 날인)

배심원 _____ 번 _____ (서명 또는 날인)

| 고등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1-2] 실시용 |

양형의견서

사건번호 2014고합1000호
피 고 인 한건강

□ 공소사실 요지, 죄명 및 적용법조
- 피고인은 2014. 2. 27. 16: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화이트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이하얀이 운영하는 '깨끗한 세탁소' 앞에서 세탁소 처마 앞쪽에 설치한 철봉으로 만든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을 손으로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다.
- 절도죄
- 형법 제329조(절도)

□ 양형 의견
- 유기징역 : _____
_____
- 벌 금 : _____
_____
- 기타(집행유예 등) : _____
_____

이 사건의 배심원들이 위와 같은 양형의견을 개진하였음을 확인함

2014. . .

재판장 판사 (인)

| 고등학생용 형사 모의재판 [1-1], [1-2] 실시용 |

범행현장 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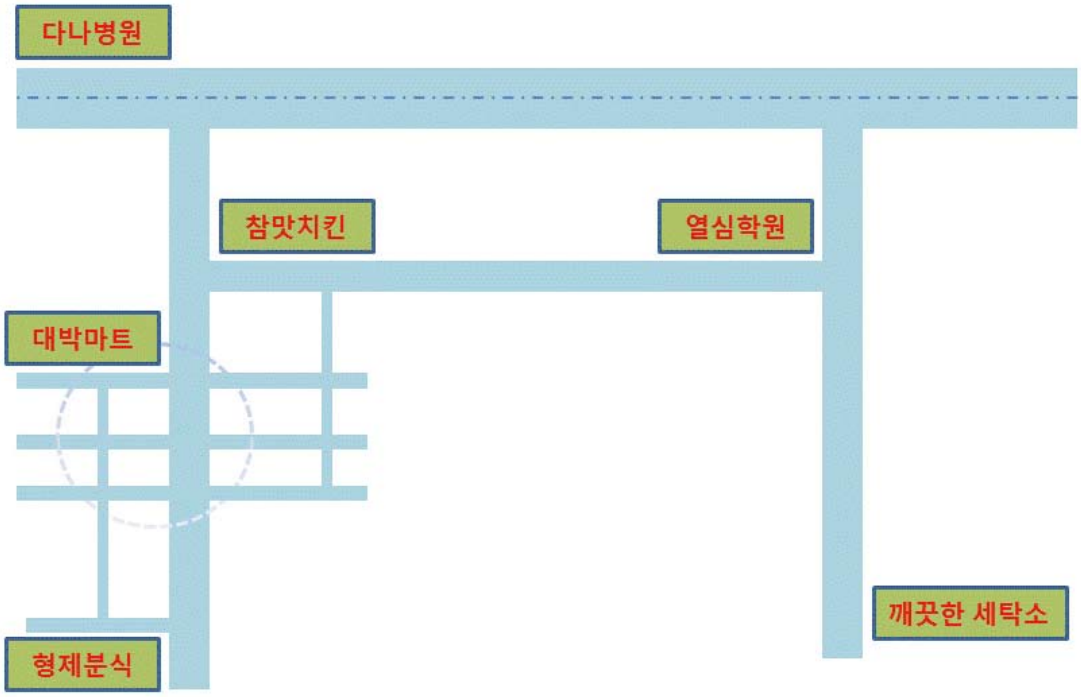

작성자 : 관악경찰서 경위 정덕화

각급 법원의 중 · 고등학생 법원체험 프로그램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

2015년 2월 23일 인 쇄
2015년 2월 27일 발 행

발행처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TEL 031-920-3550

인쇄처 (주)홍디자인
TEL 02-464-5167

〈비매품〉

1.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전문(全文)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jpri.scourt.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BN 979-11-86491-08-9 (95360) (PDF)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410-77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본관동 9층, 10층
대표전화 : 031) 920-3550 E-mail : jpriga100@scourt.go.kr